

2021

정책연구 2021-2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오병록 · 배진아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2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오병록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공동 연구 배진아 | 전문연구원 | 제2장(2절, 3절), 3장

자문위원 전영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 연구위원
유일한 | 대한주택정책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장명균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사무처장
이태호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사무처장

연구관리 코드 : 21JU0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의 내용	6
나. 연구의 방법	7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1
1. 이론 고찰	11
가. 지역건설산업 특성	11
나.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24
2. 정책 동향	52
가. 건설산업 정책의 변화	52
나. 주요 정책	54
3. 선행연구 고찰	59
가. 선행연구	59
나. 시사점	66
제3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69
1. 전북 건설산업 현황	69
가.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69
나. 건설산업 현황	82
2. 전북 건설업체 현황	102
가. 건설업체 종합 현황	102
나. 종합건설업체	105
다. 전문건설업체	111

3. 전북 역내 공사 현황	116
가. 원도급(1억 원 이상) 공사현황	116
나. 하도급 공사	123
다. 역내 의존도	129
제4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35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135
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135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138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별 정책방안	140
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전략	140
나. 공공행정 지원 강화 전략	148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55
제5장 결 론	163
1. 연구 종합	163
가. 지역건설산업의 특징	163
나.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164
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65
2. 정책 제언	167
참고문헌	171

■ 표목차 | Contents

〈표 2-1〉 건설업 업종	12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건설업 부분)	12
〈표 2-3〉 건설산업의 유발효과	15
〈표 2-4〉 경제활동별 GDP 비중	18
〈표 2-5〉 산업별 취업자수(2019)	19
〈표 2-6〉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	24
〈표 2-7〉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25
〈표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6
〈표 2-9〉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주요 내용	27
〈표 2-10〉 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주요 내용	28
〈표 2-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내용	28
〈표 2-12〉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비교	30
〈표 2-13〉 공동도급계약 유형에 따른 비교	32
〈표 2-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타 광역지자체 행정조직	38
〈표 2-15〉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주요 내용	39
〈표 2-16〉 타 광역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현황	40
〈표 2-17〉 광역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주요 내용 비교	41
〈표 2-18〉 광역시 지역건설활성화 추진 정책 비교	50
〈표 2-19〉 건설산업 정책 변화	54
〈표 2-20〉 제5차 기본계획 체계	55
〈표 2-2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57
〈표 2-22〉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59
〈표 2-23〉 향후 국내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3가지 특징 요약	62
〈표 3-1〉 건설산업의 실질 성장률 비교	69
〈표 3-2〉 건설업 생산·투자 비중 추이	71
〈표 3-3〉 발주자별 계약액 및 비중 추이	72

〈표 3-4〉 공종별 계약액 및 비중 추이	73
〈표 3-5〉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과 산업별 비중(2017년)	73
〈표 3-6〉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75
〈표 3-7〉 전라북도 건설투자 및 건설생산 규모	78
〈표 3-8〉 전라북도 건설산업 취업자 비중 추이	81
〈표 3-9〉 건설공사액	82
〈표 3-10〉 본사 소재지별 건설공사액	83
〈표 3-11〉 건설계약금	84
〈표 3-12〉 전라북도 건설수주액	85
〈표 3-13〉 전북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	86
〈표 3-14〉 전북지역 발주기관별 건설수주액	87
〈표 3-15〉 건축허가면적 추이	88
〈표 3-16〉 본사소재지별 기성실적 건수 및 계약 금액	89
〈표 3-17〉 본사소재지별 세분공사종류별 기성실적 건수 및 비중	91
〈표 3-18〉 본사소재지별 세분공사종류별 기성실적 계약금액 및 비중	92
〈표 3-19〉 전문건설 원도급 기성실적(2019)	96
〈표 3-20〉 전문건설업종별 원도급 기성실적(2019)	97
〈표 3-21〉 전문건설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2019)	98
〈표 3-22〉 입찰형태별 기성실적(2019)	99
〈표 3-23〉 공사규모별 기성실적(2019)	101
〈표 3-24〉 건설산업체 수 및 비중 현황(2021년 3월 기준)	102
〈표 3-25〉 건설업체 운영형태별 사업체 수 및 비중	103
〈표 3-26〉 건설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현황	104
〈표 3-27〉 종합건설 업체 및 업종 현황	105
〈표 3-28〉 공종별 종합건설업체 수	106
〈표 3-29〉 시군별 종합건설업종 분포(2021)	107
〈표 3-30〉 전문건설 업체 및 업종 현황	111

〈표 3-31〉	공종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112
〈표 3-32〉	업종수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113
〈표 3-33〉	시군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114
〈표 3-34〉	시군별 업종별 업체수 비율(%)	115
〈표 3-35〉	1억원 이상 원도급 발주자별 현황	117
〈표 3-36〉	시군별 원도급 공사건수 현황	118
〈표 3-37〉	시군 별 원도급 공사금액 현황	118
〈표 3-38〉	본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건수 현황	119
〈표 3-39〉	본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금액 현황	120
〈표 3-40〉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건수 현황	121
〈표 3-41〉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건수 비중 현황	121
〈표 3-42〉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금액 현황	122
〈표 3-43〉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금액 비중 현황	122
〈표 3-44〉	하도급 공사 현황	123
〈표 3-45〉	발주자별 하도급 공사 현황	124
〈표 3-46〉	공종별 하도급 공사 현황	125
〈표 3-47〉	시군별 하도급 공사건수 현황	126
〈표 3-48〉	시군별 하도급 공사금액 현황	126
〈표 3-49〉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건수 현황	127
〈표 3-50〉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건수 비중 현황	127
〈표 3-51〉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금액 현황	128
〈표 3-52〉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금액 비중 현황	128
〈표 3-53〉	역내발주 공사의 역내업체 수주 비율(%)	129
〈표 3-54〉	지역별 역내업체 건설공사 중 지역내 공사 비율(%)	131
〈표 4-1〉	전라북도 도로시설물 노후 현황	141
〈표 4-2〉	주택종류별 경과연수별 주택	143
〈표 4-3〉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찬반 의견 비교	156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의 흐름	8
〈그림 2-1〉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상호관계	15
〈그림 2-2〉 건설 전방산업	16
〈그림 2-3〉 지역경제에서 지역건설산업의 역할	17
〈그림 2-4〉 산업별 취업자	20
〈그림 2-5〉 전라북도 건설국 조직	37
〈그림 3-1〉 건설산업의 실질 성장률 추이	70
〈그림 3-2〉 건설업 생산·투자 비중 추이	71
〈그림 3-3〉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과 산업별 비중 현황	74
〈그림 3-4〉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내 건설투자 비중(%)	76
〈그림 3-5〉 지역별 1인당 건설투자액(2019년)	77
〈그림 3-6〉 지역총생산 대비 건설산업 생산 금액 및 비중 추이	77
〈그림 3-7〉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 변화	79
〈그림 3-8〉 전라북도 총부가가치액 대비 건설투자 비중 변화	80
〈그림 3-9〉 전라북도 건설산업 취업자 비중 추이	81
〈그림 3-10〉 공사지역과 본사소재지가 전북인 공사 계약액의 전국 대비 비중	84
〈그림 3-11〉 건설수주액 전년대비 변화율 및 전국대비 전북 수주액 비중	85
〈그림 3-12〉 전북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 비율	86
〈그림 3-13〉 전북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비율	87
〈그림 3-14〉 전라북도 건축허가면적 변화율 추이	88
〈그림 3-15〉 전라북도 본사소재지별 기성실적 건수 및 계약 금액 비중 추이	90
〈그림 3-16〉 본사소재지 지역별 및 순위별 기성실적 건수 비율	93
〈그림 3-17〉 본사소재지 지역별 및 순위별 기성실적 금액 비율	94
〈그림 3-18〉 본사소재지별 계약방법별 발주기관별 기성실적(2019, 금액)	95

〈그림 3-19〉 입찰형태별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계약 건수	99
〈그림 3-20〉 입찰형태별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계약 금액	100
〈그림 3-21〉 전북 건설업 종사자 비중 추이	104
〈그림 3-22〉 전북 건설업 매출액 비중 추이	105
〈그림 3-23〉 시군별 종합건설업종 분포	108
〈그림 3-24〉 종합건설업 공종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9
〈그림 3-25〉 시도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분포	110
〈그림 3-26〉 전문건설업종 비율	113
〈그림 3-27〉 시군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114
〈그림 3-28〉 1억 원 이상 원도급 공사 도내 업체 수주 현황	116
〈그림 3-29〉 1억 원 이상 원도급 발주자별 현황	117
〈그림 3-30〉 공사 하도급 현황	123
〈그림 3-31〉 발주자별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 비중	124
〈그림 3-32〉 공종별 하도급 공사 현황	125
〈그림 3-33〉 지역별 역내발주 공사 역내업체 수주 비율(%)	130
〈그림 3-34〉 지역별 역내업체 건설공사 중 지역내 공사 비율(%)	131
〈그림 4-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135
〈그림 4-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종합	139
〈그림 4-3〉 전라북도 단독주택 경과년수별 주택	143
〈그림 4-4〉 전라북도 공동주택 경과년수별 주택	143
〈그림 4-5〉 전라북도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예시	159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고, 정부정책도 첨단산업 및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건설산업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공투자는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간투자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재개발 및 재건축의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780호)
- 그러나,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활동의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건설산업에 따른 생산과 고용으로 인한 지역내총생산에 큰 기여를 하는 중추산업임
 - 2019년 기준 전국적인 건설생산은 전체 GRDP 대비 4.9%를 차지하고, 건설투자는 14.5%를 차지하고 있음
 - 전북은 GRDP 대비 건설생산은 6.4%, 건설투자는 18.5%를 차지하고 있음
 - 전북의 건설산업은 전국과 비교하여 지역의 기반산업으로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건설물량의 정체로 인해 건설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건설생산액은 2018년 92.0조 원에서 2019년 90.4조 원으로 감소하였고, 건설투자액 역시 270.9조 원에서 268.6조 원으로 감소함
- 전북의 건설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음
 - 도내의 건설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므로 규모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전국적인 업체와 비교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에 한계를 가짐
 - 도급순위 도내 1위인 건설업체가 전국순위에서 109위에 그치고 있고, 6천억 원 이

상의 1등급 업체는 전무한 상황임

- 전북의 건설공사액(기성액)은 2019년 우리나라 전체 대비 3.1%에 그침
 - 2017~2018년과 2018~2019년 기간 동안 건설공사액 증감률이 전국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전북은 오히려 감소하여 악화되고 있음
 - 전국 건설공사에서 전북 내 건설공사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북 건설업체는 도내 건설공사에 55.7%를 참여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의 당해 지역 건설공사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의 전국 평균인 42.5%보다 높아서 도내 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큼
- 최근에는 새만금지역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인해 전북 지역건설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2020년 본사 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액에서, 전국적으로는 2019년 160.8조 원에서 2020년 178조 원으로 11% 증가한 반면, 전북은 3.9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38% 증가함
 - 전국의 건설공사액(기성액)이 2018년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2.2% 증가에 그쳤으나, 전북은 2018년에는 9.6%, 2019년에는 5.5%가 각각 증가하여 전국보다 증가율 폭이 큼
 - 2019년 전북의 건설계약금은 국내 전체 증가에 비해 14.0%p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최근의 전북 지역건설산업 실적 개선은 새만금 공사 수주 증가 외에도 도내 지역업체가 타지역 민간건설공사에서 수주가 증가하였고,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건설공사 참여가 확대에 기인하기도 함
- 전북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모색을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반적인 자료구축 및 검토가 필요함
-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된 현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전북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건설 실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과거의 추이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이 가능함
- 전북의 건설산업의 취약한 산업여건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북 건설업체는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도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공사에서 수주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또한,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낮아서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의 등록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공공분야의 SOC 예산의 증액으로 공공기관의 발주량이 증가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따른 도내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 전북 경제에 큰 비중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전북건설업체의 새만금지역 등 도내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업체와 관련한 자료(데이터)를 확보하여 현황을 분석함
 - 현황조사 및 관련 전문가와 건설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건설산업의 개선방안 제안
 - 전국 및 타 광역도와 비교하여 전북 지역건설산업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함
- 전북 지역건설산업 여건을 토대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전북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기반 강화 방안을 제안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1)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 건설산업 관련 법령 및 정책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 혁신방안,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타 지자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 건설산업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 입찰과 관련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분리발주 제도 등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등 하도급과 관련 제도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한 건설관리 제도

2) 건설산업 특성 검토

- 건설산업 기본 정의 및 산업적 특징
 - 건설산업의 유형 및 국가경제 기간산업 등 산업으로서의 특징
- 건설산업과 지역경제의 관계와 영향 효과
 -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와의 관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분석

- 국내 건설산업 현황 및 건설산업에 영향이 전망되는 사회적·기술적 여건변화
- 전북 지역건설산업 현황
 - 지역건설업체 현황(유형별(종합공사, 전문공사) 지역건설업체의 규모, 도급순위 등)
 - 지역건설산업의 건설공사, 건설수주액, 하도급 실태 등 건설실적 관련한 전국 대비 실태

4)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

- 건설산업의 특징과 전북 지역건설산업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도출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별 정책방안

나. 연구의 방법

1) 연구방법

가)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조사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 정책 조사
 - 건설산업 특징 및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조사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기존 연구보고서 조사
- 자료조사
 - 통계청 및 국토부 공식 통계자료와 건설관련 협회를 통한 자료조사
- 면담조사
 - 전북건설협회 및 전북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기관 면담

나) 전문가 자문방법

-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경험 전문가 자문

연구 흐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이론 고찰	건설산업 개념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문헌연구
자료조사	전라북도 건설산업 경기 동향 전라북도 건설업체 현황	통계청 및 국토부 통계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실태조사	지역건설산업 과제 및 개선 사항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결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방안 제안

〈그림 1-1〉 연구의 흐름

2

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Jeonbuk Institute

-
1. 이론 고찰
 2. 정책 동향
 3.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 고찰

가. 지역건설산업 특성

1) 건설산업 정의 및 종류

- 건설산업은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건설업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의 종류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있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에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29개 업종이 있음(건설기본법 시행령 별표1)

〈표 2-1〉 건설업 업종

구분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석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설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건설업’ 대분류 아래에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공사업’으로 중분류 되어 있음
 - 종합건설업에는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건물건설업’과 지반 조성 또는 토목시설물을 건설하는 ‘토목건설업’으로 소분류됨
 - 전문직별공사업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해체하거나 기반조성 또는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를 포함하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전기 또는 통신 관련하여 공사하는 ‘전기 및 통신 공사업’, 도장·도배·내장 또는 유리·창호나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그리고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분류됨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건설업 부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환경설비 건설업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조경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조적 및 석공사업		
				포장 공사업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수중 공사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전문 직별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전기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자료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

2)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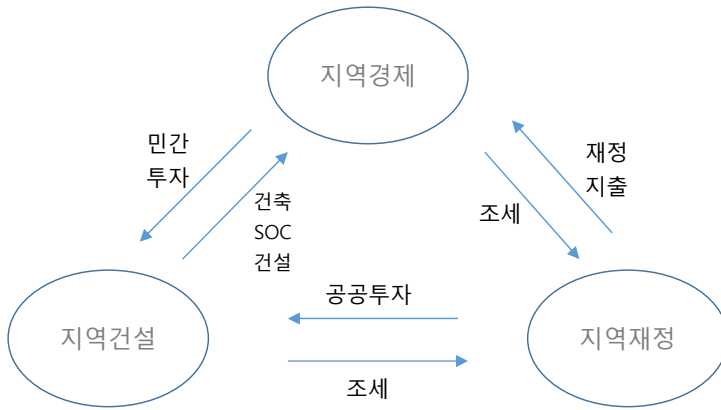
가) 지역건설산업

- 지역건설산업은 국가 전체의 건설산업과 구분하여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각 공간 범위 내에서의 건설산업을 말함
 - 건설산업의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규모를 고려할 때, 행정구역은 광역시 및 광역도 단위를 대상으로 함
 - 수도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방'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수도권 건설산업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전라북도를 공간범위로 하는 지역의 건설산업을 의미함
- 지역경제 역시 지역건설산업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전라북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나)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의 관계¹⁾

- 산업의 하나로서 지역건설은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짐
 - 지역건설은 건설부문에서 지역경제의 민간투자와 지방재정의 공공투자로 발생하는 건설수요를 통하여 산업활동이 영위됨
 - 또한, 지역건설은 지역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건축물 및 SOC를 건설하고, 건설활동으로 파생되는 것이면서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 및 부담금을 제공하게 됨

1) 김명수·이환성·김민철(2001), 10~13쪽 참고



〈그림 2-1〉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상호관계

출처 : 김명수·이환성·김민철(2001),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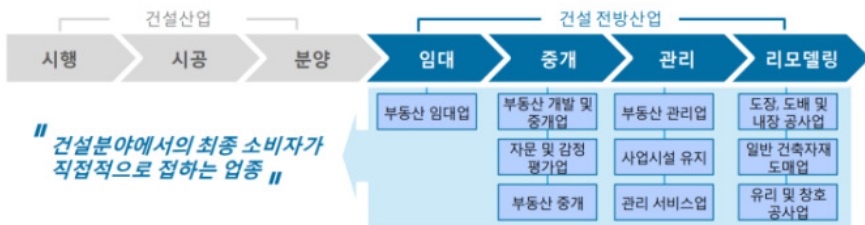
- 지역건설은 지역경기 부양, 기반시설 공급, 성장기반 제공의 역할을 수행함
 - 건설활동은 다른 산업활동보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음
 - 건설업은 고용과 부가가치의 유발효과가 서비스업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의 생산과 제조업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에서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건설산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높고 1보다 크므로 건설산업은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의 경기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종 목적물인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을 만들어내므로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2-3〉 건설산업의 유발효과

구분	건설업	제조업(공산품)	서비스업	전산업
생산유발계수	1.997	1.952	1.673	1.813
고용유발계수	9.2	5.8	10.8	8.0
부가가치유발계수	0.804	0.642	0.875	0.774
영향력계수	1.035	1.012	0.867	1.000
감응도계수	0.541	2.040	2.015	1.000

자료 : 한국은행(2019)

-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건설산업의 전·후방산업이 매우 많기 때문임
 - 후방산업은 건설공사의 재료나 구조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철근, 시멘트, 창호, 단열재, 페인트, 내·외장재 등의 건축자재와 엘리베이터, 가구 등이 있음
 - 건설 후방산업의 경기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에 후행해서 나타나는데, 건설공사 초기의 토목공사에서는 시멘트, 철강, 콘크리트이고 말기에서는 내·외장재, 엘리베이터, 가구, 가전 등임
 - 건설산업의 전방산업은 “건설사가 시행과 시공을 걸쳐 분양까지 마무리된 다음 단계인 임대, 공급, 관리, 리모델링으로 정의”될 수 있고 “건설 전방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명확하게 속하는 대분류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박도휘 외 2017) 등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2〉 건설 전방산업

출처 : 박도휘 외, 2017

〈그림 2-3〉 지역경제에서 지역건설산업의 역할

<p>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p>	<p>- 건설산업을 매개로 한 건설투자는 타 산업활동보다 높은 지역 내 산업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승시키며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p>
<p>지역 내 기반시설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p>	<p>-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역할로서 중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남 - 지역건설산업은 당해 지역 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발전소 등 지역 내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주택·사무실·상·복합·복지·시설 등 지역 주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역시 공급하는 역할 -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공공 또는 민간 발주자 등으로부터 투자수요가 위축될 경우 건설 산업의 지역 내 SOC기반 시설물 등을 구축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게 됨</p>
<p>지역내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p>	<p>- 지역건설사업은 타 지역 또는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아 시공을 함으로써 지역 내에 새로운 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 혹은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타 지역으로의 진출과 기반산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 지역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p>

출처 : 김승희(2009), 13쪽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은 전국평균에 비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2019년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서 전국 평균 1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세종, 제주, 강원, 전남 다음으로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표 2-4〉 경제활동별 GDP 비중

(단위 : %)

구분	2018			2019		
	전국	광역시도	전북	전국	광역시도	전북
계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9	5.2	7.7	1.8	4.9	7.0
광업	0.1	0.3	0.3	0.1	0.3	0.2
제조업	29.1	39.3	24.3	27.6	37.8	23.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4	2.3	1.8	1.4	2.3	1.8
건설업	5.9	6.8	7.5	6.0	6.9	7.9
도매 및 소매업	7.9	4.1	5.4	7.7	4.0	5.2
운수 및 창고업	3.2	2.7	2.7	3.3	2.9	2.9
숙박 및 음식점업	2.5	2.4	2.6	2.6	2.4	2.6
정보통신업	4.7	1.5	1.6	4.8	1.5	1.6
금융 및 보험업	6.0	3.5	5.2	6.0	3.5	5.2
부동산업	7.9	4.9	6.2	8.1	5.0	6.2
사업서비스업	9.7	4.9	5.0	10.1	5.2	5.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6	9.7	11.6	7.0	10.3	12.3
교육 서비스업	5.2	5.4	7.9	5.3	5.6	8.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7	4.2	6.9	5.1	4.5	7.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1	2.9	3.6	3.1	3.0	3.6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시도별_경제활동별_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하반기

○ 건설업은 21개 산업 중 6번째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함

-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방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제조업, 농업 등 1차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6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북은 지방광역시도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하고 5번째 순위에 해당함

- 건설업은 전체 취업자의 약 8%를 차지함
 - 전국적으로 전체 취업자 1,574천 명 중에서 건설업 취업자가 796천 명으로서 전체 취업자의 7.7%를 차지함
 - 전북에서는 전체 취업자 187천 명 중 건설업 취업자는 42천 명으로서 8.1%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광역도와 비교해도 전북의 건설업은 고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외에 건설용역업에 해당하는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면 건설업의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은 더욱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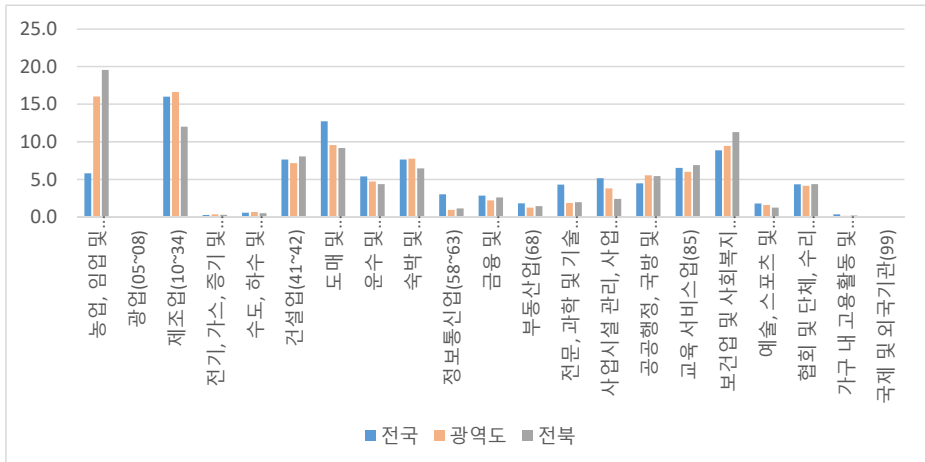
〈표 2-5〉 산업별 취업자수(2019)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수			비율		
	전국	지방광역도	전북	전국	지방광역도	전북
계	1,574	1,350	187	100	100	100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1	9	1	5.8	16.0	19.6
광업(05~08)	4,336	1,399	115	0.0	0.1	0.1
제조업(10~34)	75	31	3	16.0	16.6	1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156	57	5	0.3	0.4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2,075	605	77	0.6	0.7	0.5
건설업(41~42)	796	265	42	7.7	7.2	8.1
종합 건설업	1,279	343	35	2.9	3.1	4.4
전문직별 공사업	3,445	805	88	4.7	4.1	3.7
도매 및 소매업(45~47)	1,468	400	42	12.7	9.6	9.2
운수 및 창고업(49~52)	2,075	654	62	5.4	4.7	4.4
숙박 및 음식점업(55~56)	826	80	11	7.7	7.8	6.5
정보통신업(58~63)	777	188	25	3.0	0.9	1.2
금융 및 보험업(64~66)	504	106	14	2.9	2.2	2.6
부동산업(68)	1,173	157	19	1.9	1.3	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325	68	8	4.3	1.9	2.0

구분	취업자수			비율		
	전국	지방광역도	전북	전국	지방광역도	전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402	321	23	1.2	0.8	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220	467	52	5.2	3.8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772	507	66	4.5	5.5	5.4
교육 서비스업(85)	2,405	798	108	6.5	6.0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491	134	12	8.9	9.5	1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182	349	42	1.8	1.6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05	15	2	4.4	4.1	4.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16	1	0	0.4	0.2	0.2
국제 및 외국기관(99)	0.1	0.0	0.0	0.1	0.0	0.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산업별 취업자



〈그림 2-4〉 산업별 취업자

3) 산업적 특성²⁾

가) 국가 기간산업

- “건설산업은 여타 산업분야의 시설투자를 위한 건설공사를 대행하는 산업으로, 타 분야의 투자수요와 정부의 투자정책에 좌우되는 경기 후행적(後行的) 특성을 가졌으며, 정부 정책에 민감하고 대부분이 정부와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김광남 2003, 30)
- 건설산업의 투자는 2018년 기준 269.8조 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14.9%를 차지함

나) 수주산업

- 건설산업은 정형의 다수 제품을 만드는 공산품 제조업과 달리 발주자의 주문과 요청에 따라 거의 유일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 및 보수, 해체하는 특징을 가짐
 - “건설업은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주문을 하여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구조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반 상품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을 보고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건설시장은 선박, 항공기 산업처럼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선택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가 주요 발주자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게임의 법칙도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메커니즘 이외에 담합, 특수 관계, 정책 등 다른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김성식 2002)
 - 제조업과 같은 시장생산과 예정생산이 불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체계와 제도에 민감하고, 수요량이 적고 제품가격이 높으며 재고품이 허용되지 않음(김광남 2003, 31)

2) 김광남(2003), 30~34쪽 참조

다) 네트워크 산업

- 건설업은 건설공사 발주에서부터 설계, 공사,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공급, 건설자
금 공급 등까지 다수의 많은 관련 주체가 함께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산업임
 - “건설 생산물은 주택, 빌딩 같은 건축물과 도로, 하수, 터널 같은 토목구조물, 발전
소, 공장 같은 플랜트 등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물이 완공되기
까지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종합건설업체, 다단계
의 전문건설업체, 자재업체, 기계리스업체, 금융기관 등 수많은 기업이 복잡한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 종합건설업체(Genecon : General
Contractor), 즉 제네콘은 이들 모두를 네트워크로 묶어 종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김성식 2002)

라) 노동집약형 종합산업

- 건설공사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수행되는 작업들로 구성됨
 - “철강이나 화학 등 장치산업과 달리 고장자산에 투입되는 설비 투자의 비중이 낮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김광남 2003, 32)
- 건설공사의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전문 하도급업체, 제조업자, 인력공급업자에 의
존하게 됨
 - “건설업자는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을 상시 갖출 수가 없어 전문기술
이나 기능, 장비, 가설자재, 노동력을 외부의 연관업체나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고 있
다. 건설업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철강재나 시멘트 등의 자재는 제조업자로부터 조
달하고, 조적, 미장, 철근, 설비 등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며 노무자는 인력
공급업자로부터 알선 받아 고용한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건설에 필요한 요소들을 유
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산업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을 종합 관리함
으로써 발주자와 설계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산업이다”(김광남
2003, 32)

마) 난해한 원가표준 설정

- 건설공사의 입지, 규모 등 특성이 공사마다 다르므로 원가표준을 설정이 어려움
 - “생산제품이 용도별, 규모별, 구조별로 다종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용도, 규모, 구조

의 건설물이라 할지라도 건설하는 입지조건, 건설기간, 계절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고, 또 발주자의 요구와 관리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건설공사란 있을 수가 없다. 생산대상 자체가 특수성과 개별성이 강하고 공사를 수주하면 현장에서 시공하고 여러 장소에 생산 단위인 공사현장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분산적이다. 생산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성과 정착성이 없고 이동성이 강하여 가설 자재, 기계기구, 노동력 등을 생산하는 입지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가설작업에 비용이 들어가서 간접비용의 비율이 높고 균일하지 않아, 원가표준 설정이 어렵고 단위공사별로 개별 원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김광남 2003, 32)

바) 사업의 대형화, 복합화, 장기화

- “건설사업이 대형화하고 복합화 됨에 따라 건설공사도 대형화하여 건설공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김광남 2003, 33)임
 - 건설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공사가 증가하고 지역간 연계를 위한 기반 시설 공사로 인해 건설공사가 대형화하게 됨
 - 건설 목적물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해 내부에 많은 설비를 구축하게 되고 시설물의 대형화에 따라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공간과 설비가 복합화하게 되었고, 또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시설관리 시스템의 적용으로 더욱 복합적으로 건설되고 있음

사) 정보화의 어려움

- 건설산업의 특성과 유연성 등으로 인해 정보의 표준화와 연계화가 어려움
 - “건설산업은 개별 공사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체계와 다수 현장에 따른 이동성과 지역성, 옥외 생산의 불안정성 등으로 관련정보의 표준화와 연계화가 제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각각 다른 주문에 의한 생산으로 기존 정보를 활용하는 빈도가 낮고 현장 가설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재활용하는 기회가 적어 지속적인 수요개발과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장기간의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건설산업의 특성과 유연성으로 인하여 정보 시스템의 구성이 복잡하다”(김광남 2003, 34)

나.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1) 건설산업 관련 법령 및 조례

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건설산업기본법 제1조)하기 위한 국가 상위법으로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법률 제498호)'에 근간을 둬
 - 건설업의 종류와 업무 범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원칙, 수급인 자격 제한, 하도급 관리 및 하도급 참여제한,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6〉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외국 건설사업자 기준,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건설업 등록	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 시공자격 및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도급계약 원칙,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하도급 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대금지급 등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기업사업자 지원	경영합리화,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상생협력, 건설근로자의 고용평가,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협회의 설립 및 인가 절차 및 운영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공제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설립인가에 절차 등 운영위원회, 공제조합의 사업, 지분취득, 신용보증 등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조정거부 및 처리기간, 조정의 절차 및 합의 권고
제9장 시정명령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제10장 보칙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임금압류 및 직무누설 금지
제11장 벌칙	징역 또는 벌금 처분에 관한 사항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나)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며 안전을 확보(건설기술진흥법 제1조)하기 위한 상위법으로 1987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3934호)'에 근간을 두고 있음
- 건설기술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지원, 건설기술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관리, 건설사업의 관리, 건설공사의 표준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등 건설공사의 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7〉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기술평가기관의 운영, 신기술개발 및 사용협약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건설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건설기술인의 신고 및 업무수행, 업무정지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부당간섭 및 공사 중지,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면책 총괄관리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표준화 시공의 사후평가,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현장의 점검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제6장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사업단체 설립 및 인가 공제조합의 설립 및 가능한 사업 공제조합의 조사 및 검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7장 보칙	수수료 발생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누설금지 청문,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징역 및 벌금형에 관한 사항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하기 위한 법으로 1990년 최초 제정됨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금지하고 있고 물품, 장비, 역무 등의 구매강제를 금지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을 정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이나 공급원가 등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 부당한 특약 및 대금지급 방지, 구매강제 금지 선급금, 부당반품 금지, 감액금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대금직접 지불 및 조정, 대물변제 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경영간섭금지,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 신고, 거래의 제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시정조치, 상습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라)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이하 전라북도 조례)

- 전라북도의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에 제정됨
- 조례에 의해 보호받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정의와 활성계획과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자랑스러운 전북 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을 포상할 수 있고,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에 대한 검토·시행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와 관리감독, 공동 도급 입찰의 권장사항을 담고 있으며, 전북도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함

〈표 2-9〉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정의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 평가)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변화과 예측,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
제5조의3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제6조 (분할발주)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7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 위원회운영
제8조(전북도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공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인 경우 공동도급 49%이상, 60%이상 권장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제10조 ~ 제19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제책기파회피에 관한 사항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마) 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 전라북도 내 3개 시, 6개 군에 제정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체의 책무, 건설산업체의 참여확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실태조사 및 이행사항의 점검을 통해 지역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표 2-10〉 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주시	시의 책무, 실태조사,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입찰참가 자격 완화 지역건설산업보호, 포상, 우선고용 및 생산자재장비 우선사용, 위원회
군산시	시의 책무, 실태조사, 분할발주, 입찰참가자격 완화, 공동도급활성화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우선고용 및 생산자재장비 우선사용, 위원회
김제시	시의 책무, 실태조사, 건설의 분할발주, 포상, 협의회 운영
완주군	군의 책무, 이행사항의 점검, 포상, 위원회
진안군	군의 책무, 건설산업체의 참여확대, 포상, 위원회 운영
고창군	군의 책무, 건설산업체의 참여확대, 포상, 위원회 운영
무주군	군의 책무, 포상, 위원회 운영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 위원회 운영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 위원회 운영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익산시와 정읍시는 조례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사항과 함께 하도급의 심사 대금, 공동수급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중소기업의 하도급과 관련한 보호조치를 마련함
- 정읍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2-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익산시	시의 책무, 실태조사, 건설의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하도급 심사 · 대금지불 · 대금지급확인 · 직접지급, 공동수급 권장, 위원회
정읍시	적용범위, 실태조사, 건설의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하도급 심사 · 대금지불 · 대금지급확인 · 직접지급, 우선사용, 포상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2)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가) 입·낙찰 및 계약 관련 제도³⁾

① 종합심사낙찰제도, 종합평가낙찰제도

- 최저낙찰제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의 가격만으로 입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발주처는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하기 때문에 입찰 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건설업체와 계약하기도 함
 -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채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종합심사낙찰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김영덕 외 2018, 63)
-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중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데, 대상 공사의 규모는 동일하지만 평가항목 등 일부는 상이함
- 2019년에는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공사비 적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를 기존의 300억 원 이상에서 100~300억 원의 구간을 추가하고, 이 구간의 공사 중 고난도공사와 실적 제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함
-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체 중 해당 공사 지역에 소재를 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가점을 주고 있음

3) 전영준 외(2020), 123~139쪽

〈표 2-12〉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비교

구분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발주주체	정부, 국가기관, 공기업	지사체, 지방공사	
관련법령·부처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도입취지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폐해 방지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 기술위주형 낙찰제도 도입		
평가단계	입찰참가자격심사(PQ) → 종합심사	적격성심사 → 종합평가	
평가기준	입찰가격(50점) 공사수행능력(50점) 계약신뢰도(감점)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가격(35~50점) 기술이행 능력(50~65점) 계약 신뢰도(감점) 합산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평가 항목	가격평가	입찰금액, 단가 심사, 하도급계획, 물량 심사, 시공계획 심사	입찰금액, 하도급 적정성 심사
	수행 능력	시공실적, 전문성비중, 배치기술자, 시공평가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동일실적경과, 기술능력, 시공평가 점수, 하도급적정성
	신인도 (가점)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기여도	건설인력고용, 상호협력, 재해율, 지역업체참여도

출처 : 전영준 외(2020), 123쪽

②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 국가계획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81억 원 미만(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당해 광역지자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건설업체 1곳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함
-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은 30%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규정함
- 위에서 언급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포함 되어 있음
- 지방계약법에도 공동계약의 경우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전라북도 조례에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거나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

③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는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존에는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도 내의 지역건설업체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19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사현장이 겹쳐 있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의 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까지 확대함
- 지방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상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특정 영사용 기자재 설치공사 등은 각 공사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5억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④ PQ심사 기준 상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우대 제도

- PQ심사는 건설공사의 시공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계약이행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 공공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의 대상 공사,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공사,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고난도공사는 의무적으로 PQ심사를 적용해야 함
- PQ심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분의 심사항목에 '지역업체참여도'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우대하고 있음

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 명부제도

- 조달청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된 7개 등급에 맞춰 건설업체를 등록하게 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등급별로 공공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 공공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건설업체를 배정하는데,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로서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지분을 합은 80% 이상이어야 함
- 이 제도는 대형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의 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건설생산체계 관련 제도⁴⁾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동계약방식의 하나임

〈표 2-13〉 공동도급계약 유형에 따른 비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구성 방식	- 출자비율로 구성 - 공동수급체 모두 종합건설업	-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 공동수급체 모두 종합건설업	- 주계약자(종합건설업)는 종합 조정·관리 및 분담시공 -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대표자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하자 책임	- 구성원 연대 책임	- 구성원 각자 책임	-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 다만,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 구성원 연대책임
하도급	- 구성원 전원 동의 시 하도급 가능	-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하도급 가능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의무 부여
실적 인정	- 금액 : 출자비율로 산정 - 규모 : 실제 시공 부분	- 구성원별 분담시공 부분	- 주계약자 : 전체실적 인정 - 부계약자 : 분담시공 부분

출처 : 전영준 외(2020), 140쪽 재인용

4) 전영준 외(2020), 140~153쪽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일부 있음
 - 건설공사 시공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 시설물 안전 및 품질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하자 책임이나 공기 지연에 대한 소재 불명의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큼
 - 주계약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 업무 지시 등 공중 간 간섭 및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부계약자가 적절한 간접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리 업무가 미숙하기도 하고 책임의식이 높지 않은 등 역량이 부족한 경우 주계약자의 추가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계약자의 리스크 관리비용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의 대가 기준이 없는 등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미흡한 실정임

② 분리·분할발주 제도

- 건설산업은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는 건설업종 간 명확한 업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예산 절감,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통합발주를 기본으로 하고 분리발주를 금지함
-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리발주 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됨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마찬가지로 분리·분할발주 제도 역시 제도 적용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다) 하도급 관련 제도⁵⁾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하도급대금지불제)

-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입된 자금이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같은 기존 제도 활용 외에도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회계예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자의 시공분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그 시공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직접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미이행 시 관계기관의 행정처분과 하도급자의 법정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임
 - 다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파산 등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사전에 합의한 경우는 발주자가 관련 공사대금(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하도급자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므로 발주자가 관련 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등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 또는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관리·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김영덕 외 2018)임
-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5) 전영준 외(2020), 156~160쪽

마련을 통해 공공공사에 한해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 시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중임

- 2018년 말 공공공사 대금지급 '온라인 의무화'를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표(시행 2019년 6월)되어 현재에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됨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전자조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뜻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등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중임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하도급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지급과 더불어 계약과 관련된 각종 업무까지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이해 가능함

○ 현재 「전자조달법」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특별시의 '대금e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블e제로', 경기도의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강원도의 '강원대금알림e' 등이 존재함

○ 전북은 전자대금시스템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북개발공사는 관련 규정으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2019.6월 시행되면서 전자대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건설산업 내 원·하도급 간 상호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임

-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건설공사 원·하도급 간의 상호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 중임
-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심사 항목 내 신인도 평가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가점(최대 2점)을 부

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공공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광역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공공발주 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음

라) 건설관리제도

①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준공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 사용자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함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이거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3항)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2014)’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개선함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시행 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청에 의한 총체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1항, 김영덕 외 2018)

- 발주청, 인·허가기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시공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제62조 제9항, 김영덕 외 2018)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62조 제10항 및 제12항, 김영덕 외 2018)

3)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타 광역자치단체 제도 현황

가) 건설산업 관련 조직현황

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

- 2021년 7월 기준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는 지역정책과가 맡고 있으며 하도급지원팀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음
 - 건설지원팀은 1명의 인력이 건설업 등록과 행정처분, 민원처리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1명의 인력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복개방공사 운영지도·감독, 현장행정시스템 관리, 건설분야 동향 및 R&D를 관리하고 있음
 - 지역발전팀은 1명의 인력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건설기술용역자 사업수행 능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1명의 인력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 건설기술용역업 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 하도급지원팀은 2019년에 최초 신설된 팀으로 총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대책 수립과 하도급계약심사, 지역건설활성화·하도급계약심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의 주무팀임

지역정책과		도로교통과	공항하천과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지역 정책	건설업등록, 행정처분 건설현장관리, 건설동향	대중교통 도로교통 도로계획 도로시설	공항철도 물류 하천계획 하천관리	건축정책 주거복지 생태건축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공간주소
지역 발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지원	종합대책수립,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하도급위원회 운영, 민간건설참여 활성화				

출처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그림 2-5〉 전라북도 건설국 조직

② 타 광역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⁶⁾

○ 충북과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임

- 부서는 주로 건설교통국 소속의 건설관리팀, 건설행정팀, 건설지원팀, 하도급관리팀 등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건설산업발전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하도급 지원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담당자는 주로 1명 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2-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타 광역지자체 행정조직

구분	내용	전담인력	
서울	안전총괄실 건설정책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1명
부산	도시균형발전실 건설행정팀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1명
인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관리팀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 추진위원회 운영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만남의날), 조례 관리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발주기관 순회교육, 합동세일즈공단) -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허가 심의위원회 관리	2명
대구	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운영	2명
광주	교통건설국 건설행정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1명
대전	건설교통국 건설행정팀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업무 추진	1명
울산	교통건설국 기술관리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1명
세종	건설교통국 건설행정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1명
강원	건설교통국 하도급관리팀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1명
충북	행정조직 업무분장 상 전담 행정부서 없음		
충남	건설교통국 건설기술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건설자재박람회 개최 등)	1명
전북	건설교통국 하도급지원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 - 건설업 활성화 수주단(TF팀) 및 자문단 운영	2명
전남	행정조직 업무분장 상 전담 행정부서 없음		
경북	건설도시국 건설행정팀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지역건설인 기살리기 등 행사관련	2명
경남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관합동세일즈 추진	1명

출처 : 전영준 외(2020) 182~185쪽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2021년 7월 기준)

6) 전영준 외(2020), 182쪽 재구성

나) 건설산업 관련 조례현황

-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외 전라북도 교육청이 시설공사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지역의무공동도급권장비율은 모두 49%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률은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는 60%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표 2-15〉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주요 내용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수립	전라북도	수립	전라북도교육청
제2조	(정의) “지역건설산업”,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역건설노동자”의 정의	제1조	(목적)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5조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사”, “지역건설산업”, “지역건설산업체”, “발주청”의 정의
	(활성화계획 수립 평가)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변화와 예측, 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작성	제3조	(적용범위)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
제6조	(분할발주)공구분할 및 분리발주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신기술, 도내생산 자재구매 및 사용,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
제7조	(하도급계약) 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 위원회운영	제5조	(공사의 분할발주) 분할발주 할 수 있는 공사의 유형과 대상의 지정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인 경우 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공사 60%이상 권장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검사)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무
제10조 ~ 제19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제척기파·회피에 관한 사항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49%이상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 50%이상

출처 : 자치법규

① 타 지자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비교

- 2006년 부산광역시의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⁷⁾
- 제주도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별도로 제정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표 2-16〉 타 광역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자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08.06.13.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0.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07.12.31.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10.02.25.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08.05.08.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06.11.17.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07.07.30.
강원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07.12.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07.03.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20.01.08.

출처 : 자치법규

- 건설산업의 범위를 전북의 조례에서는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강원도의 조례에서는 추가적으로 건설자재의 제조와 유통을 포함하고 있음
- 지역건설산업체의 적용대상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원과 경기에서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도내에 등록된 날로부터 90일(강원) 또는 120일

7) 전영준 외(2020), 185쪽

(경기)을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수립 시점을 연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건설활성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도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데, 강원, 충북, 충남, 전남에서는 정기회의를 연2회 개최하고 있고, 전북, 제주에서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규정하고 있음
-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북 및 대부분의 광역도가 매년 1회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충북은 매년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권장비율은 49%로 모든 광역도에서 동일함
-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비율은 충북, 전남, 경남이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광역도에서는 60%를 권장하고 있음
 - 강원도는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비율이 50%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급금액 10억 원 공사에 대해서는 70%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2-17〉 광역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 수립 시점	매년 (임의)	매년 (의무)	X	매년 (임의)	X	X	X	매년 (의무)
활성화위원회/협의회 (정기회/임시회)	연1회/필요시	연2회/필요시	연2회/필요시	연2회/필요시	연2회/필요시	-	필요시	연1회/필요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1회 이상/연	실시 가능	2회 이상/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연
공구분할/분리발주 검토·시행	○	○	○	○	○	○	X	검토
지역의무공동도급 권장비율	49% 이상	49% 이상	49% 이상	49% 이상	49% 이상	49% 이상	49% 이상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권장비율 ^{주1)}	60% 이상	50/70% ^{주2)}	70% 이상	60% 이상	70% 이상	60% 이상	70% 이상	60% 이상
민간사업 지역업체	공동참여/	공동참여/	공동참여/	공동참여/	X	공동참여/	공동참여/	X

구분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 확대 정책	직접시공 비율 확대	직접시공 비율 확대	직접시공 비율 확대	직접시공 비율 확대		직접시공 비율 확대	직접시공 비율 확대	
분할·분리발주 가능 공사 통합발주 또는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주3)}	X	△ ^{주3)}	X	X	X	X	X
지역건설업 활성화 관련 인센티브 규정	0	별도 조례 ^{주4)}	0	0	X	0	0	X
주계약자공도도급 발주 가능 명시	X	X	X	X	X	△ ^{주5)}	X	X
입찰참가자격 완화기준 유·무	X	X	X	X	X	X	X	X
복수업체 공동입찰 허용 명시(복합공종)	X	X	X	X	X	X	X	X
표준시장단가 완화 적용	가능	가능	가능	가능	X	가능	X	X
지역민·지역생산 자재·지역건설장비 우선 고용 및 활용	0	0	0	0	0	△ (자재, 장비)	△ (자재, 장비)	0
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X	0	X	X	X	X	X	X
지역중소건설기업 지원	X	행사보조 금지원	X	X	X	X	X	육성자금 및신용보 증특례지 원등

주1) 광역지자체 및 소관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주2) 도급금액 10억 원 기준

주3) 분할 또는 분리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적극 권장

주4)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17조

주5) 조례 내 별도 기준 미제시

출처 : 전영준 외(2020), 충남 지역건설산업정보화 계획수립 연구, p.189~190를 토대로 하고, 보완함

다) 광역자체단체 추진 정책⁸⁾

① 전라북도

-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조금 늦은 2019년도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정책의 대부분이 타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유사한 수준이나, 지역 내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건설기업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19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기초지자체 각종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이상을 명기토록 공고함
 - 지역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계획(설계)단계부터 국제입찰대상 및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지역업체 수주 참여 확대 및 지역생산 자재 구매, 인력 및 장비활용 확대 협조 요청 등을 시행함
 - 이 외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유관기관 및 대형사업장을 방문하여 도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인력과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하여 줄 것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를 당부하는 노력을 기울임
 - 또한, 지난 2019년도 초에는 대형건설사 호남지사장단, 건설단체연합회를 비롯하여 14개 기초지자체 건설활성화 담당 과장까지 확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 및 기초지자체의 협조 확대 또한 계속하여 시행 중임
 - 유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에는 신규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요청'과 더불어 시공능력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 입찰 시 전북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함
- 2020년에는 현장행정을 통한 지역 건설사 홍보를 중점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건설협회와 함께 유관기관·시군·대형사업장·건설사 본사를 방문하여 지역 건설업체 홍보를 세일즈 함
 - 공공분야는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분할발주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민간분야는 공사현장 및 건설사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와 지역의 자재·장비·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함

8) 전영준 외(2020), 충남 지역건설산업정보화 계획수립 연구, p.226

- 2020년 시군 방문 39회, 유관기관 방문 30회, 대형사업장 방문 144회, 건설사 본사 방문 13회 등 총 226회 현장활동을 실시함
- 전라북도 지역정책과가 수립한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는 '수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제고'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① 지역기업 우대제도 확대적용, ② 맞춤형 수주 지원 활동, ③ 경쟁력 강화 지원, ④ 민·관 상생협약이 있음
 - (지역기업 우대제도 확대 적용)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운용 확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 (맞춤형 수주 지원 활동)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민관합동세일즈 추진, 공공기관 지역기업 발주 실적 조사, 대기업 본사 방문 세일즈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군 참여 독려(시군평가)
 -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홍보, 유망 전문건설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 (민·관 상생협력) 공공기관 발주계획 지역업체 공유, 지역건설활성화 위원회 운영
- 2021년 공공기관 지역업체 수주목표는 공사수주 5.0% 상승, 하도급 참여 6.0% 상승, 지역자재 사용 12.0%로 두고 있음⁹⁾
- 2021년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지사업단 77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438억 원, 전북개발공사 906억 원 등 대규모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역업체의 수주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2020년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실적은 2조 7,518억 원 중 1조 7,191억 원(62.5%)을 기록했으며 2021년은 작년 대비 5%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 경상북도

- 경상북도의 경우 그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종합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건설 신기술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음

9)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내부자료 발췌

- 이는 그간 개별사업의 건설 신기술 및 특허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공법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불필요한 오해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경상북도의 건설 신기술 관련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20.4.13.)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추진 근거를 마련함
 -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그간 사업부서에서 필요시마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해왔던 공법선정위원회를 도 감사관실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법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둘째,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과 지역의 우수한 기술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에 ‘우수기술’로 지정·등록하여 지역 우수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유도함
 - 셋째, 특정공법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지정·등록된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③ 경상남도

- 광역도 중에서 경상남도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음
 - 가장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도 역시 타 광역 지자체와 같이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
- 경남도가 가장 최근 수립된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제도운용 확대, ②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 ③ 경쟁력 강화 지원,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4개 분야 10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함
 - (제도운용 확대 분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용 확대와 더불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그간 논란이 지속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 민관합동세일즈,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 대기업 본사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을 통해 현장이나 본사 관계자를 통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지원 확대를 꾀하겠다고 발표함

-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건설대기업, 발주기관, 지역건설 관련 협회 등과 주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건설업혁신 토론회’를 통해 건전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함
- 이중 경상남도만의 특징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 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유망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1: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거쳐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음(2019년도 15개사, 2020년도 10개사 지원)
- (신청자격) : 1군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남 소재 전문·기계설비 건설업체로 ‘전년도 실적신고 금액 20억 원 이상’,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 ‘건설업 영위기간 5년 이상’ 등 통상적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요구 기준을 충족함을 제시함
- 또한, 경남도의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점도 특이사항인데, 지역건설업의 도급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 상 지역제한 입찰범위 확대(종합공사 100억 원 → 300억 원),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준수 조항 신설,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배점 추가 등을 건의함
- 경남도의 경우 이러한 정책 내용 대부분이 전문건설·기계설비 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외시하였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 측면에서 타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정책 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벤치마킹이 가능함

④ 강원도

-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개최 이후 급감한 지역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지난 2018년 광역도 차원에서는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그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 중임

- 강원도의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도의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타 광역지자체와 유사하게 ①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 ② 건설산업의 효율적 생산관리, ③ 지역 맞춤형 건설산업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 지역제한 입찰제도 적극 시행, 지역 생산제품 및 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 또한, 지역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부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지역건설 자재 구매촉진을 위한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 마지막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 강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건설공사 부실방지 점검 등을 발표함
- 이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역시 별도 마련하여 추진함
 -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15일 →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반영, 분할발주로 지역 제한 입찰 확대 등 대부분 공공 발주 공무원(감독관 및 계약관)의 추가적인 품이 반영되는 사항임에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임
 - 또한,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국가계약 공사의 지역건설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 MOU를 활발하게 추진함과 마찬가지로 대형공공공사 시 지역우수업체 참여, 지역 자재·장비 사용, 지역인력 고용 등에 대해 도내 건설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MOU)을 체결함
- 강원도 내 건설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체결에서 강원도는 가장 많은 건설 관계기관과 상생협력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벤치마킹 대상임
 -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상생협력 대상 기관 : 도개발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건설단체연합회

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최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제주도의 경우 최근 외지 투자 위축에 따라 지역건설경기가 급랭한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으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9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2차례의 간담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①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②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③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④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로 4개 분야 21개 과제를 확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점은 거버넌스 운영 구조 효율화 측면에 있어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항임
 - (1차 간담회 참석대상)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건설 관련 단체
 - (2차 간담회 참석대상) 기초지자체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 등
- 또한, 연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추진점검 회의를 별도 개최하는 것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항임
- 제주도의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중 제주도만의 특성을 갖춘
 - 첫째,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 마련을 통해 기존 42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던 인·허가절차를 30일 내외로 단축함
 - 둘째,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사업 규모에 비해 일부 사업에 산이 부족한 사례 방지 및 시설물 유형별·규모별 적정 사업비 확보를 추진함
 - 셋째, 지역 내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 운영(건축도장사공 등 6개 과정 398명 참여)'과 더불어 2020년 '생활밀착 다기능인력 양성교육' 과정 신설을 추진함
- 이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 2020년도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국도 및 지방도 등 도로 기반시설 건설 중점 추진)를 꾀하는 점 또한 안정적 건설물량 제공 측면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함

- 또한,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중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항으로는 특히 2019년도에 이어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사, 도와 시의 건축담당과장 및 팀장이 참석하는 ‘건축 행정발전월례회’를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20% 이상 단축하는 방안 마련(처리기간 : '18년 43일 → '19년 30일 → '20년 25일 목표)
 - 도시건설분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절차 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절차 개선

⑥ 광역시 지역건설활성화 추진 정책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는 관내 지역건설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초기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대전은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율 30% 이상 지역하도급 65% 이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를 강요하거나 특별점검 등 행정지위 남용으로 어겨질 수 있는 예민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구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통합승인,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
- 인천은 시장이 직접 대형건설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과 원도급자가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권고, 지역자재·장비의 사용, 지역인력 채용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함
- 세종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그간 외지업체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
 -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시행, 지역업체 참여가 유리하도록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배점한도를 상향함
 - 지역제품 우선구매 기준을 정비해 지역제품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부득이 관외업체 제품을 요청할 경우 지역제품 기준으로 제품비교검토서를 의무화 함

〈표 2-18〉 광역시 지역건설활성화 추진 정책 비교

구분	내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 수주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이 많음 -2020년 목표 : 건설산업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조성 -주요과제 : ① 관급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민간투자 활성화, ② 민·관 상생협력 강화, ③ 건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④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⑤ 지역건설업 활성화 계약제도 지속 추진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정책 및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유도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관련 협·단체와의 의견 교환만이 하는 제한적 정책만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다소 파격적인 정책 추진 -(공공공사) 예정가격 100억 원 이상 모든 대형 공공공사에 대하여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후, 설계·공사 단계에서의 지역반영 의무 규정 마련 -(민영주택사업) 토지확보단계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검토,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교통·건축·경관심의를 통합 인·허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주민추진위원회 및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홍보 추진,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민영주택사업과 정비사업의 사업승인단계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경영진 면담, 사업 시행 단계에서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직접 대형 민간건설공사를 수행 중인 대형건설사를 초청하여 간담회 추진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을 마련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과 원도급자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약 체결,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권고, 지역 자재·장비·인력 권고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목표 : 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대책 지속 추진, ②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 보호, ③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과 민·관 협력 -타 광역자치체와 큰 차별점을 가진 정책은 아니나 지역건설근로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 교육 정책은 의의가 있음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목표 :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율 30% 이상 및 지역하도급률 65% 이상 확대 -주요과제 : ①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지원 확대, ② 지역하도급 강화 관리, ③ 지역협회와 상생협력, ④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원 내실화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를 목적으로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를 강요하는 정책이거나, 신규 착수현장 방문 확대, 특별점검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지역업체 참여가 특히 저조하였던 민간건설공사 맞춤형 정책 마련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목표 : 지역업체 하도급율 및 지역 자재·장비 사용률 1% 상승 -주요과제 : ①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② 지역민간공사 참여확대 지원, ③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④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의 4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

구분	내용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기업의 공공 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 - 주요 과제 : 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② 지역건설산업생태계 건전화, ③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 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 관외업체 제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 지역 제품을 기준으로 제품비교검토서 제출 의무화 - 지역 의회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

출처 : 전영준 외(2020), 210쪽 재정리

2. 정책 동향

가. 건설산업 정책의 변화¹⁰⁾

- 건설산업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동산정책이나 국가산업개발정책과 같은 국가 정책을 포함해야 함
- 노태우 정부는 건설산업이 크게 활성화된 시기로 공급의 확대와 동시에 규제강화를 병행한 시기로 볼 수 있음
 - 이 시기는 3저현상(유가, 국제금리, 달러화)과 서울올림픽(1988년)의 특수으로 인해 건설산업 부흥과 동시에 규제정책도 시행함
 - 신도시(분당, 일산 등) 2백만 호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 신국제공항이 착공되었음
 - 이와 더불어 7.20 부동산긴급종합대책과 8.10 부동산투기 및 물가안정종합대책이 1988년에 시행되는 등 규제도 강화됨
 - 건설산업에 관한 정책으로는 토지공개념법안 시행과 부실시공방지대책수립(1992), 1차 건설업면허 개방이 시행됨
 -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 결과로서 땅값과 집값의 폭등을 만들게 되었음
-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른 규제완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2백만 호 주택건설 등의 효과로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함
 - 금융실명제의 시행(1993년)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압박이 생기면서 부도 업체들이 증가함
 - 이후 부동산실명제 시행(1992년), 준농림지역 내 아파트건설법안 완화로 난개발문제가 발생하게 됨
 -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1994년)”을 제정함
 - 건설산업 정책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 도입(1995년)과 2차 건설업면허 개방(1994년)을 하였으며, 1997년에 건설업 면허 발급 수시제로 전환하게 됨

10) 울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울산발전연구원. 2015. pp.34 ~ pp.36

-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IMF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됨
 -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 허용, 소형평형 의무 건설 폐지, 채권입찰제 폐지 등을 시행하게 됨
 - 2001년에는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재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집값 상승이 나타나게 됨
-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전방위적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됨
 -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2003년), 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2005년), 8.31 후속대책(2006년) 등을 시행함
 - 강북뉴타운, 광명·아산역세권 개발(2003년), 광고신도시 공영개발, 송파거여지구 공유지 200만 평 개발(2005년)과 같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도 함
 - 건설산업 정책으로는 2006년에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짐
- 이명박 정부의 경우 기존 정부의 규제강화정책을 규제완화정책으로 바꾸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게 됨
 - 규제완화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2013년),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2009년),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2009년),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배제 2년 연장(2010년), 취득세 2011년까지 50% 감면(2011년),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2012년)가 있음
 - 이러한 규제완화정책 이후 전반적인 집값 하락이 나타나게 됨

〈표 2-19〉 건설산업 정책 변화

구분	주요 정책	비고
노태우 정부 (’88.2 ~ 93.2)	-유가, 국제금기, 달러화 등 3저현상 및 ’88년 올림픽 특수로 인해 규 제정책 시행 -토지공개념법안 시행, 부실시공방지대책 수립 -경부고속철도착공, 영종도 신국제공항 착공 -1차건설업면허 개방(면허동결에서 3년 주기발급)	공급확대, 규제강화병행 *땅값, 집값 폭등
김영삼 정부 (’93.3 ~ 98.2)	-부동산규제완화정책 시행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자금조달압박으로 부동산업체증가 -UR협정 및 정부조달협정타결로 건설시장 개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2차 건설업면허개방	규제완화 *집값 안정
김대중 정부 (’98.3 ~ 03.2)	-IMF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면적 완화정책 시행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감면, 분양가자율화 및 분양권전매허용, 소형평형 의무건설폐지, 채권입찰제폐지 -최저가낙찰제제도입*100억 원 이상	규제완화 *집값 상승
노무현 정부 (’03.3 ~ 08.2)	-국민의정부 부동산경기부양책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전방위적 규 제정책 시행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8.31부동산 개혁방안 시행 -종합부동산세조기도입, 투기지역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강북뉴타운, 광 명·아산역세권 개발 -실거래가신고의무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광고신도시 공영개발, 송파거 여지구 국공유지 200만 평 개발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 원 이상)	규제강화 *집값폭등
이명박 정부 (’08.3 ~ 13.2)	-종합 부동산세 제도 개편 등 규제완화, 민간 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임대주택의무 비율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배제 2년 연장, 취득세 2011년까지 50% 감면, 강남3구주택투기지역해제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100억 원 이상 확대 유예	규제완화 *집값하락

출처 : 이은규(2015), 36쪽, 재인용

나. 주요 정책

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¹¹⁾

- 국내 건설경기는 호조세이나 향후 둔화가 예상되고, 해외건설은 수주는 감소 후 정체기가 예상되며 글로벌 건설시장의 확대 지속, 스마트 건설기술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11) 국토교통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참고

- 선진국대비 건설기술의 기술력은 80%, 생산성은 50% 수준이며 직접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고 투명성이 낮은 산업체, 열악한 일자리 등 문제가 있음
-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80%, 생산성은 50%로 낮고 생산구조는 직접시공을 기피하면서 외주화를 선호하며 부실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 투명성이 낮은 산업시장 질서 속에서 일자리의 질은 낮고 일자리 확충 기반은 낮은 문제점을 노정함
- 공정경제에 기초한 건설산업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을 비전으로 삼고 공정한 성장 기반 조성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를 주요한 목표로 삼음

〈표 2-20〉 제5차 기본계획 체계

목표	중점과제	추진방안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1. 생산구조 규제 혁신	-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2. 건설기업 혁신 성장지원	- 기술력중심 발주제도 개선 - 중소건설기업 성장경로 지원
	3. 부실·불법 업체 퇴출	-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 -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마련	4.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 건설 근로환경 개선 - 숙련 기술자 및 기능인력 육성
	5.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조성	-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우수협력업체에 인센티브 강화
	6. 산업 전반의 갑질 관행 근절	-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 -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7. 해외시장 진출 역량확보	-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 지원체계 고도화로 진출시장 다변화
	8.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 촉진	- 핵심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민간 기술개발 및 품질 확보 촉진
	9. 안전 확보 및 신시장 진출	- 스마트 인프라 발주 및 노후 인프라 개선 - 친환경 건설 활성화 및 건설안전 확보

출처 : 국토교통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¹²⁾

-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18.7.25)¹³⁾에 따라 업역 및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22년까지 혁신하는 청사진을 그림
 - 첫째, 질 낮은 업체 운영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종합전문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함
 - 둘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접종을 중심으로 1차 개편 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업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셋째, 시공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자본금은 하양조정하고 기술자 인력 비율은 상향 조정하여 인력 중심의 경영체제로 개편하기로 함
 - 넷째, 나아가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자의 선택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량업체를 선별하여 관리하기로 함

다)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¹⁴⁾

- 시공위주 건설산업을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건설산업을 융합·통합하고 기술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엄격한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여 건설 엔지니어링을 융합·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하고 시공형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새로운 사업 방식 도입
 -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발주 체계 개편, 기술인 평가능력 평가, 교육시장 평가제, 스마트 턴키 등의 확대
 -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발굴지원, 네트워킹 지원, 해외건설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확대

12) 국토교통부(2018.11.7.),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참고

13) '18년 7월, 국토교통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4개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데 합의함

14) 관계부처 합동(2020.9.3.),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참고

라) 건설산업혁신방안 시행

-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개편됨
 - 2021년부터 공공공사(민간공사는 2022년)의 업역이 폐지됨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가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함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운영함
 -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물업을 별도 유지할 필요가 소멸됨

〈표 2-2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대업종 명칭
토공사, 포장공사, 보랑·그라우팅·파일공사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9. 철도궤도공사업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10.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공사, 준설공사	11.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석도설치공사	12. 승강기·석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2종), 가스시설공사(3종), 난방공사(1종~3종)	14. 가스·난방공사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12.20., “국토부, '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함
 - 유지보수 공사실적은 22년부터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사 실적 상시신고, 기성실적증명의 간편화, 실적기업 정보의 투명화, 하도급 공사의 모니터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후속조치로 ① 공사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간 경쟁 확대, ③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22년 시행될 예정

3. 선행연구 고찰

가. 선행연구

1) 건설산업 특성

가) 2030 건설산업의 미래(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 건설산업 투자 이론과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산업 투자 비중을 종합하였을 때 202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2.5~13.5%, 2030년에는 11.5~1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1기 신도시 등 1990년대에 지어진 대규모 건축물들이 30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점이 도래하여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설사업이 남아있어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 모두가 건설투자시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
 - 공공영역 보다는 민간영역에서의 유지보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재건축의 가능성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구도심의 노후 주택 정비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
- 과거 건설경기의 대순환 주기가 약 10년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2020년대 초 중반 이후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든 건설경기는 2020년대 중후반에 고점을 향할 가능성이 클 것임
- 유지보수시장과 달리 신축시장의 규모는 총량적으로 정체가 예상되며 신기술과 마케팅 등 핵심역량을 구축하여 신축시장의 질적 성장이 필요함

〈표 2-22〉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구분	2025년	2030년
GDP대비 건설투자비중	12.5~13.5%	11.5~13.0%
건설투자 금액(2015년 실질기준)	265조 ~ 287조원	274조 ~ 309조원
구분	2020~2025년	2025~2030년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	1.0~2.5%	0.6~1.5%

자료 : 2030 건설산업의 미래. 건설산업연구원. P.39

나)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 최근 10년간 국내 건설수주의 침체는 민간부분 주택건설공사 수주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며 2009년 공공 토목투자 증가로 일시 상승세를 보였다가 하락세로, 건설부도업체 비율은 2010년 중반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됨
- 발주 및 계약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최저낙찰제: 저가낙찰로 인해 적자시공과 부실시공이 기업의 손실과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를 가져왔으며 2012년부터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 시행 기준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
 -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 설계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계약이행 능력과 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턴키설계 심의의 전문화가 필요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공사현장의 시공체계와 도급계약체계가 불일치하여 현장지배권의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상생협업체'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직할시공제: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계약업무의 조정 등 세부 조정이 필요함
 - 물량내역 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향상과 기술경쟁 촉진의 장점이 있으나, 물량내역서 작성 및 책임소재 보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실적공사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선진화를 이루었으나 발주기관별 관리체계 구축, 보정계수의 현실화, 표준품셈 위상 재정립 등이 필요함
 -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행이 강화된 제도이나 발주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범위의 축소가 필요함
- 국내 공공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비 중단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자의 불이익 최소화,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 관리체계 개편, 계약자보다는 발주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산업기반 제도·SOC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의 세밀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중재 및 허용사항 마련,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시효제도 도입, 공동주택감리제도의 통합감리제도화, 건설보험의 의무화 및 보험료 재추정이 필요함

- 주택·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편, 주택하자분쟁의 개선이 필요함
- 녹색 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 재평가를 통한 건설산업과의 파급력 재조명,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무비 삭감'의 재검토, 청년층 진업을 위한 현장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함
- 해외건설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 관리체계 마련, 공공-민간 협력을 해외진출 활성화 제도의 마련,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가 필요함

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국토연구원, 2019)

- 건설산업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을 건설업종과 시장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함
 - 건설업종들 간의 겸업비율에 따른 분석, 건설업종들의 업무 특징과 등록기준에 따른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함
- 분석결과,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전문공사 시장진출이 많고,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종합공사 시장진출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전문건설사업자들 모두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상호 시장의 진출 규모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향후 등록기준 변화에 대한 고려는 배제한 결과임
- 본 연구를 통해 등록기준, 공사실적, 공동도급, 중소건설업자의 보호, 고용안정화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안함
 - 상호시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종 등록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며 상호 시장 진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공사실적의 평가기준이 필요함
 -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도급형 공공공사의 발주 증가가 필요하며 개편된 생산체계의 적응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직접시공과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고용한 기술 및 기능 인력들의 지속적인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함

라) 향후 국내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징(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 2020년 유지보수시장이 증가하고 신축시장이 축소되는 등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음 3가지의 특징이 예상됨

〈표 2-23〉 향후 국내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3가지 특징 요약

특징	내용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 수요 급증	- 2020년 유지보수 수요 급증, 2030년 이후 노후 시설의 대규모 재개축 수요 증가 - 공공시설은 예산제약으로 소규모 유지보수 위주로 대응 - 민간시설은 아파트, 상업용 빌딩에 대규모 유지보수 진행, 2020년대 이후 저비용 리모델링 시장 형성
신축시장 축소 및 질적 변화	- 대규모 신규프로젝트 축소로 건설시장 점진적 축소 - 노후 시설 예산 급증으로 인한 공공 시장 신축 규모 축소 - 신기술 기반, 마케팅 분석 기반, 사회 트렌드 기반으로 신축시장의 질성장 기대
운영시장의 성장 및 시공과의 시너지 확대	- 신축 시장에서 유지보수 시장에 진입하는 건설기업의 진입과 운영능력 상승 - 건축물 운영에 있어 저금리 고착화에 따라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의 영역 확장 - 사회기반시설 운영은 급성장하지 않고 민자사업, 공공시설 위탁관리 등 민영화에 따른 점진적 성장 예상

자료 : 향후 국내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 포커스, P31.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가)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을 첫째, 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 둘째, 지역내 SOC 등 기반시설 공급의 역할, 셋째, 지역 내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 건설산업이 처한 문제점은 IMF 이후 경제 침체 현상의 심화, 비수도권 지방의 건설수요 부진 심각, 비수도권 지방의 건설영향력 하락이 있음
- 지방 건설은 아파트 부문에서의 큰 물량 감소와 민간 건축부문 수요 부진이 지방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재평가, 중앙정부의 SOC 투자 예산 확대 차원의 방책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능력 보강, 민자사업에서의 정부 역할 제고, 지방 특성에 맞는 신도시 개발, 지방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지방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요구됨

나) 지역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01)

-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 ⇔ 지방재정 ⇔ 지방건설의 3자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경기 부양, 지역 내 기반시설의 공급자로서의 역할, 지역 내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함
- 지역건설 침체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지역고용에 있어 전국평균 8.7% (1992년, 통계청), 비수도권 평균 8.2%의 영향을 끼침
-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기로 접어든 건설산업의 질적 회복과 더불어 자본력·기술력의 개선, 지역건설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SOC 사업의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지원, 민간 주택건설 수요 유인, 금융기관 공고화를 통한 건설수요 창출이 필요함
 - 사전적 입찰 참여 방식과 같은 직접 규제 방식에서 낙찰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PQ시 과중한 경영상태의 비중에서 벗어나 건설업체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 재구성하는 개선안이 필요함
 - 급증하는 건설업체수로 인한 경쟁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 및 운영 기준의 강화, 부실업체 퇴출 및 면허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며 무자격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지역밀착경영의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 지역업체 간 협력체계 강화, 대형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로 지방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지역건설산업 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건설정보센터'의 운영이 필요함

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경북연구원, 2019)

- 경상북도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지역내 특성을 정의한 뒤, 국가상위법 및 정책과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5가지로 도출함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의 문제는 첫째 건설산업의 낮은 자생력, 둘째, 영세화 심화, 셋째, 지역업체 간 과다경쟁 심화, 넷째 하도급 위주의 공사가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5개 영역에서의 2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정지표 점수를 마련하여 중점실행과제 15개를 체계적으로 선정함
 -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5개 영역은 지역 내 자생기반구축,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지자체 행정지원 강화, 지역사회 상생기반 구축, 신사업영역 발굴 및 참여 확대이고 전략별 5가지 추진전략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중점실행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진 시급성, 추진 타당성, 실행 리스크, 지역파급효과, 지역 내 수요 5가지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라)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연구(대전연구원, 2019)

- 대전지역의 SOC 활성화 방안, 지역보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과 대전 건설산업의 현황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지역건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7만 건의 계약 정보를 대상으로 역내 수주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특징을 도출함
 - 대전 경제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비중이 높음
 - 건설업체의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기존 시설 유지관리에 집중하는 SOC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제한 및 지역외무공동도급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민간발주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수도권 대형건설사의 지역수주 참여 확장에 대응하여 확대
 - 대전시 철도공사에 지역업체가 의무공동도급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2020)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실현’을 목표로 삼음
 -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주요한 3대 정책 과제로 추진함
 - 불공정한 하도급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개편,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확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용, 철저한 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시행함
 - 하도급 정보공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자료 홈페이지 공개, 하도급 모니터링 강화, 하도급계약심사 기능강화, 정책 홍보를 시행함
- 2020년에는 지역건설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향상, 하도급 보호정책 추진, 지역내 건설인력 및 건설자재·장비 사용 촉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약 등을 주요한 시행과제로 제안함

바) 201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경기도, 2017)

-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대한건설산업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 시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함
- 중복 적용,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조정, 과다 산정 제비율 심사 기능 수행하는 삭감 위주의 계약심사에서 벗어나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적공사비 제도’, ‘표준품셈 하향조정’ 등으로 공사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의 협회 위탁의 근거 마련
 - 국토부가 건설업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고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정례화 및 「건설업 관리규정」별지7 실태조사규정(안)을 제정함
 -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중 자본금 심사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통해 진행 중이나 관련 법령이 없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회계의 전문성이 요구됨
 -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한건설협회가 위탁할 수 있도록 건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지역범위, 추정 분담금 시스템,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도 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미지정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협조
- 건설 노무비 보전, 대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지역상생협약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상주 대상 규모의 확대 시행

나. 시사점

- 지역건설산업의 자생력이 낮고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업체 간 과다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도급 위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음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자생기반 구축,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지자체 행정지원 강화, 지역사회 상생기반 구축, 신사업영역 발굴 및 참여 확대 등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함
-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고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을 제안함

3 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
1. 전북 건설산업 현황
 2. 전북 건설업체 현황
 3. 전북 역내 공사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1. 전북 건설산업 현황

가.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1) 국내 건설산업 현황

가) 건설산업 성장률

- 건설산업의 실질 성장률은 201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GDP는 2016년부터 매년 성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은 성장률이 타 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 2020년의 성장률을 보면, 타 산업은 2분기부터 감소하다가 4분기에는 성장세로 전환되거나 마이너스 성장률이 축소되지만, 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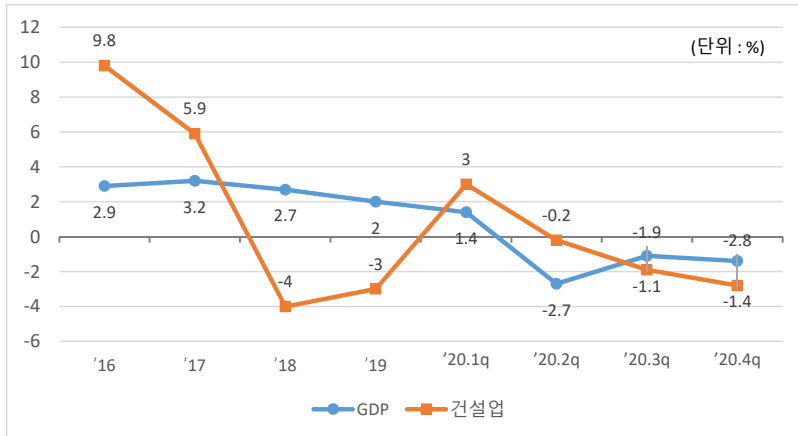
〈표 3-1〉 건설산업의 실질 성장률 비교

단위 : %

년 도	'16	'17	'18	'19	'20.1q	'20.2q	'20.3q	'20.4q
GDP	2.9	3.2	2.7	2.0	1.4	-2.7	-1.1	-1.4
건설업	9.8	5.9	-4.0	-3.0	3.0	-0.2	-1.9	-2.8
제조업	2.3	3.7	3.4	1.4	3.5	-6.6	-0.7	0.1
농림·어업	-5.6	2.3	1.5	2.4	-0.4	-4.9	-7.0	-0.9
서비스업	2.9	2.6	3.2	2.7	0.2	-1.5	-1.3	-2.1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주요건설통계 보고서

- GDP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성장률 감소양상을 보이는 양상 속에서 건설업은 성장률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 건설산업의 실질 성장률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주요건설통계 보고서

나) 건설산업 생산·투자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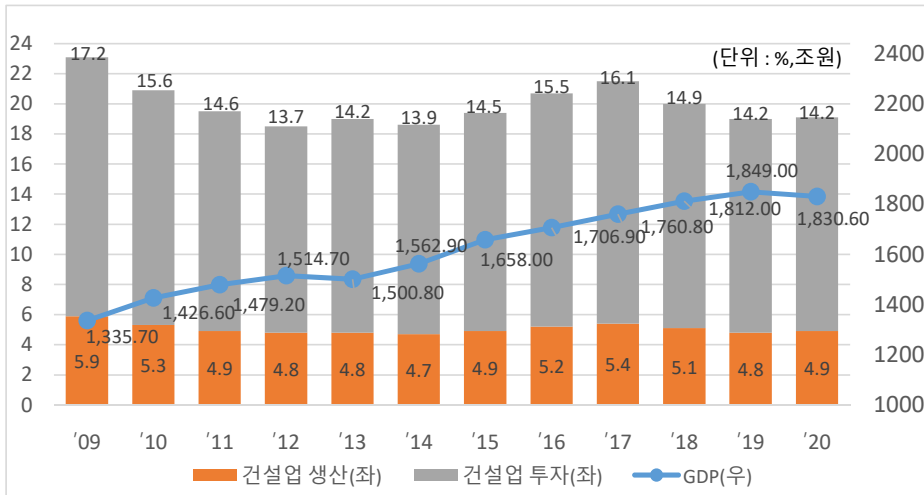
- GDP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의 생산 및 투자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 GDP는 2009년 1,335.7조 원에서 2020년 1,830.6조 원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음
 - 건설산업 생산액은 2009년 79.3조 원에서 2020년 88.8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에서 4.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투자액은 2009년 230.3조 원에서 2020년 262.6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서 14.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13.9%에서 2017년 16.1%까지 해마다 상승하던 건설산업 투자 비중은 2018년 14.9%로 크게 하락함

〈표 3-2〉 건설업 생산·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조, %)

년도	GDP	건설산업 생산		건설산업 투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9	1,335.7	79.3	5.9	230.3	17.2
2010	1,426.6	76.1	5.3	221.9	15.6
2011	1,479.2	72.5	4.9	215.7	14.6
2012	1,514.7	72.2	4.8	208.1	13.7
2013	1,500.8	75.3	4.8	221.2	14.2
2014	1,562.9	76.4	4.7	224.3	13.9
2015	1,658.0	81.2	4.9	239.8	14.5
2016	1,706.9	89.1	5.2	263.7	15.5
2017	1,760.8	94.4	5.4	282.9	16.1
2018	1,812.0	91.7	5.1	269.8	14.9
2019	1,849.0	89.5	4.8	262.9	14.2
2020	1,830.6	88.8	4.9	262.6	14.2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주요건설통계, 13~14쪽



〈그림 3-2〉 건설업 생산·투자 비중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주요건설통계, 13~14쪽

다) 발주자별 계약액 추이

- 공공과 민간이 발주한 계약금액의 비중은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공공이 발주한 계약금액은 전체 계약액의 25% 수준이며 2019년에는 588,196억 원, 25.9%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2019년 이후 공공분야의 수주 상승은 2018년 정부가 진행하였던 강력한 민간주택 규제가 해제되면서 끼친 영향이라 판단됨¹⁵⁾
 - 민간이 발주한 금액은 2016년 1,682,385억 원, 78.5%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 반면 2019년 1,681,302억 원, 74.1%로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표 3-3〉 발주자별 계약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전체	2,072,212	2,143,140	2,099,276	2,190,240	2,269,499	2,613,826
	공공	470,469	460,755	496,585	493,411	588,196	656,164
	민간	1,601,743	1,682,385	1,602,691	1,696,829	1,681,302	1,957,663
비중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22.7	21.5	23.7	22.5	25.9	25.1
	민간	77.3	78.5	76.3	77.5	74.1	74.9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건설공사계약통계-발주자별 공종별건설공사액 추이

- 공종별 계약액은 토목공종이 전체의 30% 이내, 건축공종이 70% 내외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종별 계약액 비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임
 - 2019년 토목공종의 계약액은 641,340억 원, 28.3%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2020년 577,464억 원, 22.1%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2019년 건축공종의 계약액은 2,036,363억 원, 71.7%로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2020년 2,036,363억 원, 7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15) 전영준 외(2020), 충청남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수립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3-4〉 공종별 계약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전체	2,072,212	2,143,140	2,099,276	2,190,240	2,269,499	2,613,826
	토목	564,771	519,040	488,233	585,543	641,340	577,464
	건축	1,507,441	1,624,100	1,611,043	1,604,697	1,628,159	2,036,363
비중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목	27.3	24.2	23.3	26.7	28.3	22.1
	건축	72.7	75.8	76.7	73.3	71.7	77.9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건설공사계약통계-발주자별 공종별건설공사액 추이

2) 전북 건설산업과 경제

가) 전라북도 지역총생산과 건설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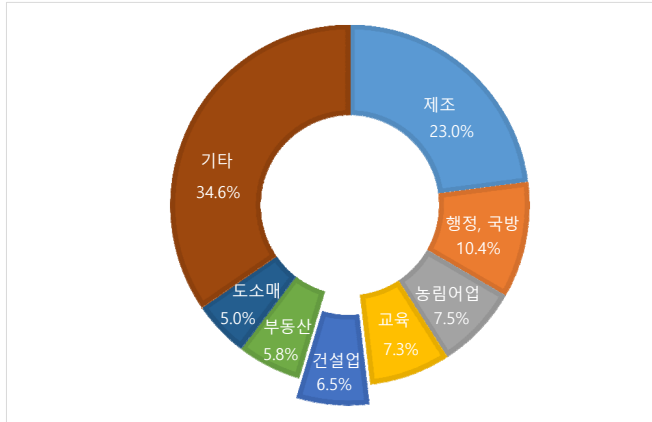
- 2017년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21개 항목 중 5번째로 높음
 - 2017년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액은 49,348,477백만 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11,327,046백만 원, 23.0%를 나타냄
 - 건설산업은 총 생산액 3,19,903백만 원, 6.5%비율로 5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3-5〉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과 산업별 비중(2017년)

(단위 : 백만 원, %)

구분	총 생산액	비중
총액	49,348,477	100.0
제조업	11,327,046	2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5,129,345	10.4
농림어업	3,723,674	7.5
교육서비스업	3,580,176	7.3
건설업	3,195,903	6.5
부동산 임대업	2,851,839	5.8
도매 및 소매업	2,478,919	5.0
기타	17,061,575	34.6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전라북도-소득 및 지출-경제활동별 도내 총생산(당해년 가격)



〈그림 3-3〉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과 산업별 비중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전라북도-소득 및 지출-경제활동별 도내 총생산(당해년가격)

나) 시도별 건설생산 및 투자 규모 현황

○ 전라북도 건설생산 및 투자 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2019년 전라북도 건설생산 금액은 3.2조 원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6.4%, 건설투자 금액은 9.1조 원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의 전국 비중인 4.9%와 14.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2019년 전라북도 건설생산 비중 6.4%는 세종 12.0%, 제주 8.2%, 강원 7.7%, 전남 6.8%에 이어 5번째 순위를 나타냄
- 2019년 전라북도 건설투자 비중 18.5%는 세종 37.1%, 제주 24.0%, 강원 22.6%, 전남 19.4%에 이어 5번째 순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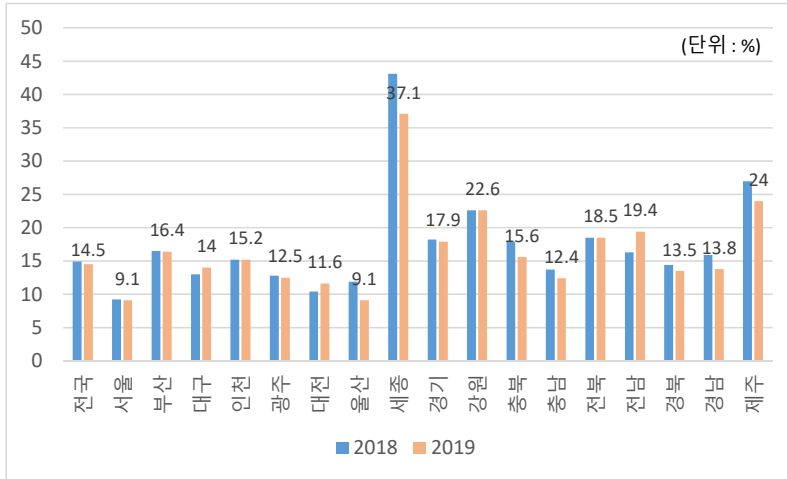
〈표 3-6〉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19				2018			
	건설생산		건설투자		건설생산		건설투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국	90.4	4.9	268.6	14.5	92.0	5.1	270.9	14.9
서울	12.0	2.9	37.6	9.1	12.1	3.0	37.1	9.2
부산	4.9	5.5	14.5	16.4	4.9	5.6	14.3	16.5
대구	2.5	4.7	7.6	14.0	2.4	4.4	7.0	13.0
인천	4.5	5.1	13.3	15.2	4.4	5.1	13.1	15.2
광주	1.6	4.2	4.9	12.5	1.7	4.4	4.9	12.8
대전	1.6	4.0	4.7	11.6	1.4	3.7	4.1	10.4
울산	2.3	3.2	6.6	9.1	3.0	4.2	8.5	11.9
세종	1.3	12.0	4.1	37.1	1.5	14.0	4.5	43.1
경기	27.6	6.0	82.8	17.9	27.5	6.1	82.3	18.2
강원	3.5	7.7	10.4	22.6	3.4	7.7	10.1	22.6
충북	3.6	5.4	10.5	15.6	4.1	6.3	11.8	17.9
충남	5.0	4.4	14.1	12.4	5.3	4.8	15.1	13.7
전북	3.2	6.4	9.1	18.5	3.5	6.5	9.0	18.0
전남	5.1	6.8	14.5	19.4	4.3	5.9	11.9	16.3
경북	4.9	4.7	14.1	13.5	5.2	5.0	14.9	14.4
경남	5.1	4.7	15.1	13.8	5.9	5.5	17.1	15.9
제주	1.6	8.2	4.6	24.0	1.8	9.2	5.1	27.0

지역내총생산(GRDP) 내 차지비중, 실질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21년 1분기 주요 건설통계자료

-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 비중은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보다 광역도에서 지역내총생산 내 건설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 내 건설투자의 비중은 18.5%로서 광역도 중에서 제주 24.0%, 강원 22.6%, 전남 19.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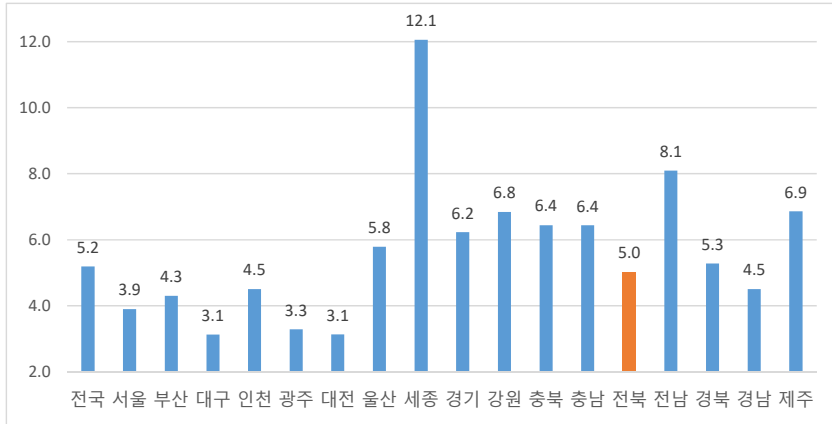


〈그림 3-4〉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내 건설투자 비중(%)

자료 : 대한건설협회(2021), 15쪽

다) 시도별 1인당 건설투자 규모

- 전라북도 1인당 건설투자액(2019)은 5.0백만 원으로 전북평균 5.2백만 원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전국 건설투자 금액은 268.6조 원, 인구는 52백만 명으로 1인당 건설투자액은 5.2백만 원을 나타냄
 - 전라북도의 건설투자 금액은 9.1조원, 인구는 18백만 명으로 1인당 건설투자액은 5.0백만 원을 나타냄
 - 전라북도 1인당 건설투자액은 세종 12.1백만 원, 전남 8.1백만 원, 제주 6.9백만 원, 강원 6.8백만 원, 충북과 충남 각 6.4백만 원, 경기 6.2백만 원에 이어 광역자치체 중 8번째 순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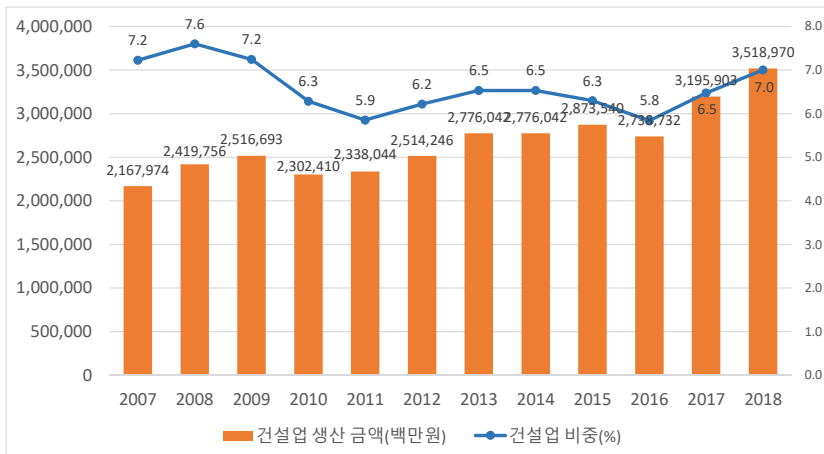


〈그림 3-5〉 지역별 1인당 건설투자액(2019년)

자료 : 대한건설협회(2021) 15쪽 건설투자액,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2019년 인구

라) 전라북도 건설산업 생산비중 변화

- 2007년 이후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 생산비중은 하락추세에 있음
 - 건설산업 생산금액은 2007년 2,167,974백만 원에서 2018년 3,518,970백만 원으로 상승함
 - 그러나 지역내총생산 내 건설산업의 비중은 2008년 7.6%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016년 5.8%로 최저치를 기록함



〈그림 3-6〉 지역총생산 대비 건설산업 생산 금액 및 비중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전라북도-소득 및 지출-경제활동별 도내 총생산(당해년가격)

마) 전라북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규모

- 전라북도의 건설투자 금액은 2018년 기준 8,952,137백만 원으로 지역내총생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전체의 24.7%로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수치를 나타냈던 건설투자 비중은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 14.9%까지 하락함
 - 2007년 전체의 7.2%를 차지했던 건설생산 비중은 해마다 상이한 증감율을 보이다가 2016년 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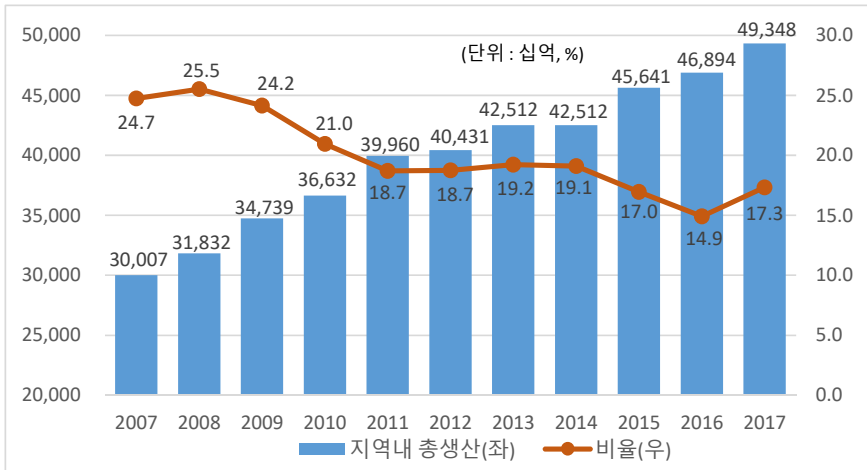
〈표 3-7〉 전라북도 건설투자 및 건설생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지역내총생산	건설생산		건설투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7	30,007,052	2,167,974	7.2	7,425,187	24.7
2008	31,832,279	2,419,756	7.6	8,127,608	25.5
2009	34,739,138	2,516,693	7.2	8,392,457	24.2
2010	36,632,462	2,302,410	6.3	7,675,060	21.0
2011	39,960,114	2,338,044	5.9	7,475,753	18.7
2012	40,431,844	2,514,246	6.2	7,578,753	18.7
2013	42,512,689	2,776,042	6.5	8,177,345	19.2
2014	42,512,689	2,776,042	6.5	8,122,863	19.1
2015	45,641,149	2,873,540	6.3	7,738,728	17.0
2016	46,894,601	2,738,732	5.8	6,989,592	14.9
2017	49,348,477	3,195,903	6.5	8,547,189	17.3
2018	50,595,318	3,518,970	7.0	8,952,137	17.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전라북도-소득 및 지출-경제활동별 도내 총생산(당해년가격)

바) 지역내총생산 대비 전라북도 건설투자 비중 변화

- 최근 10년간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은 2007년 30,007십억 원이었고, 해마다 상승하여 2017년 49,348십억 원을 기록함
 - 지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2007년 24.7%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14.9%까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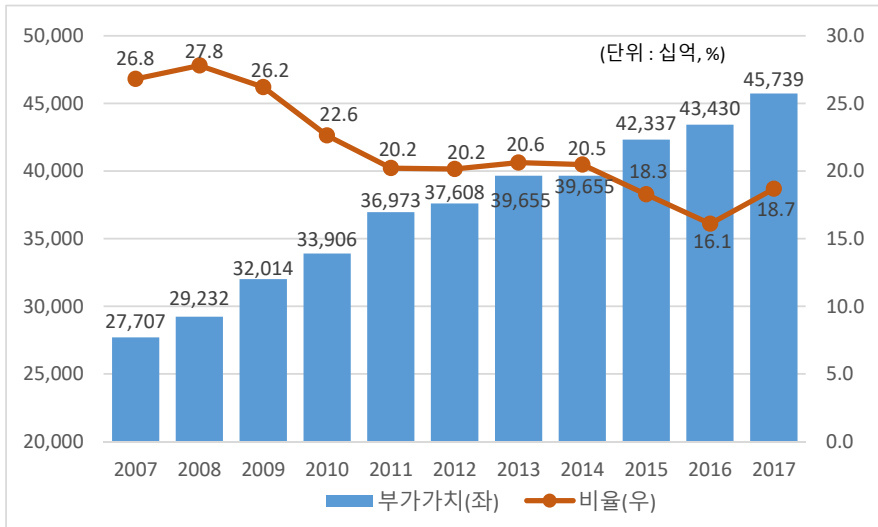


〈그림 3-7〉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도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인구총조사

사) 총부가가치액 대비 전라북도 건설투자 비중 변화

- 최근 10년간 총부가가치액 대비 전라북도 건설투자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총부가가치액은 2007년 27,707십억 원에서 해마다 상승하여 2017년에는 45,739 십억 원을 기록함
 - 총부가가치액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07년 26.8%를 시작으로 감소추세 속에서 2016년에는 최저치인 16.1%를 나타냄



〈그림 3-8〉 전라북도 총부가가치액 대비 건설투자 비중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도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인구총조사

아) 건설산업과 고용

- 전북의 건설산업은 고용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20년 전반기에서 전국의 전체 산업 대비 건설업 고용 비중은 7.3%이지만 전북은 8.2%로서 전국보다 0.9%p 높음
 - 이는 최근의 상황으로서, 전북 건설업 고용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았으나 2018년 후반기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전국 비중을 상회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새만금지역 건설공사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면서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공구와 2공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6-1공구와 6-2공구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30~40%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이 공사를 수주함
- 건설업분야에서 고용 상황은 전북 건설경기의 취약한 기반을 나타냄
 - 전북의 건설업은 건설경기에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여 경기가 양호할 때에는 취업자 수가 많이 나타나지만 건설경기가 위축될 때에는 취업자수가 적어지고 있음
 -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전국적으로는 건설산업 취업자 비중이 7.1%와 7.6% 사이의 0.5%p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방광역도는 역시 6.6% ~ 7.1%로서 최대 0.5%p 차이로 변하고 있지만 전북은 최저 6.9%에서 최고 9.1%로 2.2%p의 큰

차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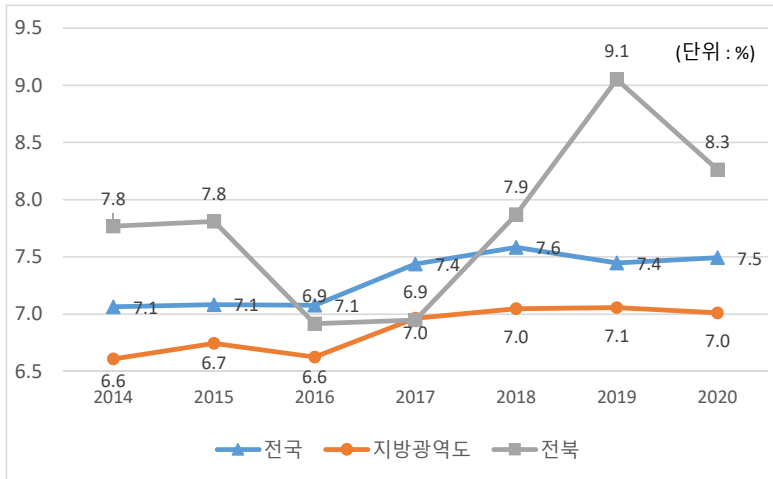
- 전라북도 건설산업 취업자 비율은 2016년과 2017년에 6.9%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9.1%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 건설경기에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고용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된 건설업기반이 필요해 보임

〈표 3-8〉 전라북도 건설산업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총 취업자	25,897	26,178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건설업	1,829	1,854	1,869	1,988	2,034	2,020	2,016
	비율	7.1	7.1	7.1	7.4	7.6	7.4	7.5
지방 광역시도	총 취업자	7,976	8,126	8,226	8,213	8,265	8,350	8,292
	건설업	527	548	545	573	584	591	584
	비율	6.6	6.7	6.6	7.0	7.1	7.1	7.0
전북	총 취업자	901	922	940	921	915	928	932
	건설업	70	72	65	64	72	84	77
	비율	7.8	7.8	6.9	6.9	7.9	9.1	8.3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노동-경제활동인구조사-산업별 취업자



〈그림 3-9〉 전라북도 건설산업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산업별 취업자

나. 건설산업 현황

1) 건설공사액

- 전라북도 건설공사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공사액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음
 - 전북의 건설공사액은 2017년 7조 9,420억 원, 2018년 8조 7,030억 원, 2019년 9조 1,860억 원으로 3년간 매년 증가함
 - 그러나, 증가율을 보면 2017~2018년에는 9.6% 증가한 반면, 2018~2019년에는 5.5% 증가하여 4.1%p 증가율 감소를 보임
 - 3년간 건설공사액 증가율은 국내 건설공사액의 증가율보다는 높게 나타남

〈표 3-9〉 건설공사액

(단위 : 10억원, %)

구분	건설공사액					증 감		증감률	
	'17년	'18년	구성비	'19년	구성비	'18~ '17	'19~ '18	'18 /'17	'19 /'18
전체	291,224	292,560	100.0	293,676	100.0	1,336	1,116	0.5	0.4
국내	259,047	258,853	88.5	264,665	90.1	-194	5,812	-0.1	2.2
전북	7,942	8,703	3.0	9,186	3.1	761	483	9.6	5.5
해외	32,177	33,706	11.5	29,011	9.9	1,529	-4,695	4.8	-13.9

자료 : 통계청(<http://kostat.go.kr>),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

- 전북 지역건설업체의 건설실적은 도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
 -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의 공사에서 당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비율을 보면 2018년에는 41.3%이고, 2019년에는 42.5%임
 - 전북 내 공사에서 본사를 전북지역에 두고 있는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은 2018년 53.2%, 2019년 55.7%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11.9%p, 1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

- 전북 도내 건설업체는 전북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3-10〉 본사 소재지별 건설공사액

(단위 : 10억원, %, %p)

지역	'18년			'19년			비율증감 ('19~ '18)
	국내 공사액(A)	본사 소재지 공사액(B)	비율 (B/A)	국내 공사액(A')	본사 소재지 공사액(B')	비율 (B' / A')	
전국	258,853	107,017	41.3	264,665	112,359	42.5	1.2
전북	8,702	4,626	53.2	9,186	5,114	55.7	2.5

자료 : 통계청(<http://kostat.go.kr>),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

2) 건설계약액

- 최근의 전라북도 건설계약 실적은 비교적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2019년 8조 9,160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건설 계약금액의 3.5%를 차지함
 - 2017~2019년간 우리나라 전체 건설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 3.0%, 3.5%로서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건설계약금액 증가율이 0.4%에 그친 반면 전라북도는 17.9%로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나, 2017~2018년 기간에는 8.6%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건설계약액 감소율보다 약 2배 많은 감소를 보임

〈표 3-11〉 건설계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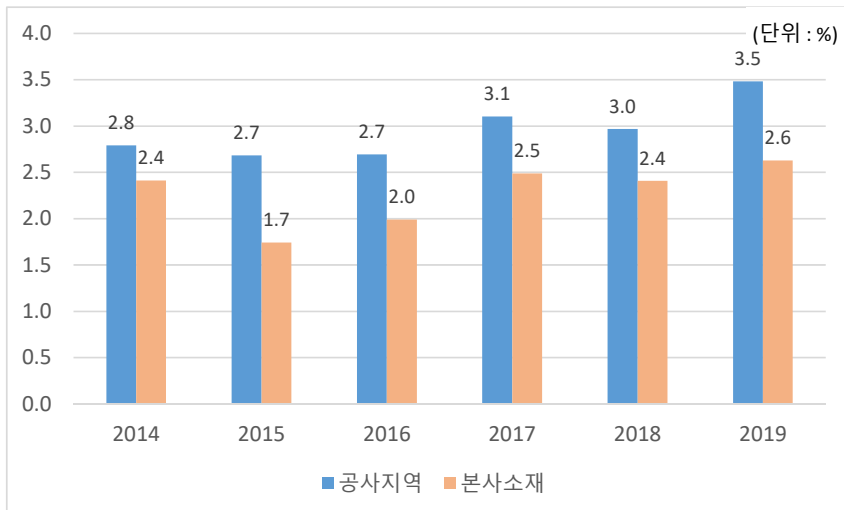
(단위 : 10억원, %)

구분	건설계약액				증 감		증감률	
	'17년	'18년	'19년	구성비	'18~ '17	'19~ '18	'18 /'17	'19 /'18
전체	266,844	254,941	255,942	100.0	-11,903	1,001	-4.5	0.4
국내	240,747	230,068	239,082	93.4	-10,679	9,014	-4.4	3.9
전북	8,279	7,563	8,916	3.5	-716	1,353	-8.6	17.9
해외	26,098	24,873	16,860	6.6	-1,225	-8,013	-4.7	-32.2

자료 : 통계청(<http://kostat.go.kr>),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

○ 전북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2019년 기준, 전북지역 내의 건설공사는 전국의 3.5%이지만 전북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전체 건설공사는 2.6%로 나타남
- 2014년~2019년 동안 전국 대비 전북 지역건설업체(전북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액 비중은 전북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비중보다도 최저 0.4%에서 최대 1.0%까지 낮은 건설공사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0〉 공사지역과 본사소재지가 전북인 공사 계약액의 전국 대비 비중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 공사지역/등록업종별 계약액(원도급), 본사소재 : 본사소재지별 건설공사계약 금액

3)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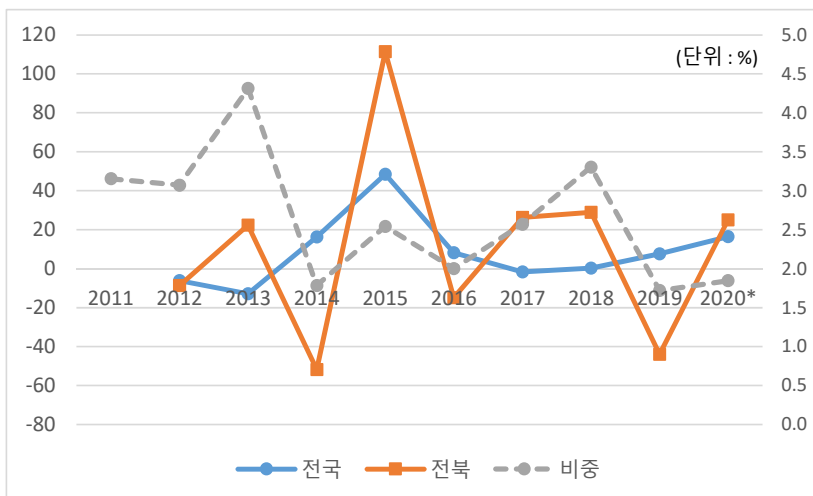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건설수주액은 연도별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라북도 2019년 건설수주액은 2조 6,510억 원으로서 전국 건설수주액의 1.7%를 차지함
 - 건설수주는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는데, 전국적으로는 2015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2018년에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국 수주액 변화보다 상당히 큰 진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전국 대비 건설수주액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3-12〉 전라북도 건설수주액

(단위 : 10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설 수주액	전국	95,332	89,395	77,885	90,606	134,493	145,386	142,966	143,292	154,243
	전북	3,007	2,746	3,359	1,617	3,418	2,909	3,673	4,734	2,651
전국 대비 비중	전북	3.2	3.1	4.3	1.8	2.5	2.0	2.6	3.3	1.7
전년대비 변화율	전국	-	-6.2	-12.9	16.3	48.4	8.1	-1.7	0.2	7.6
	전북	-	-8.7	22.3	-51.9	111.4	-14.9	26.3	28.9	-44.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그림 3-11〉 건설수주액 전년대비 변화율 및 전국대비 전북 수주액 비중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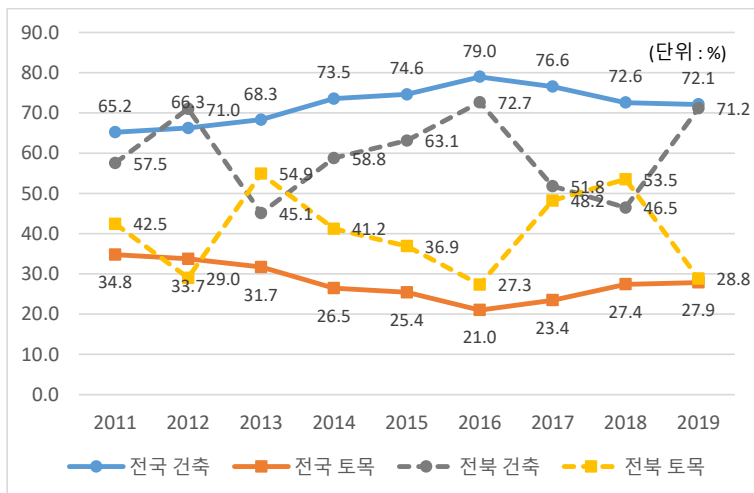
- 전라북도는 전국과 비교하여 토목공종 건설공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9년 전라북도의 건축공종 건설수주액은 1조 8,870억 원이고 토목공종 건설수주액은 7,640억 원임
 - 2011~2019년 동안의 평균 건설수주액 비율이 전국의 건축공종이 72.7%이고 토목공종은 27.3%이지만, 전북의 건축공종은 58.4%이고 토목공종은 41.6%임

〈표 3-13〉 전북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

(단위 : 10억 원)

연도\공종	전국			전라북도		
	계	건축	토목	계	건축	토목
2011	95,332	62,163	33,169	3,007	1,730	1,276
2012	89,395	59,230	30,165	2,746	1,950	796
2013	77,885	53,203	24,681	3,359	1,515	1,844
2014	90,606	66,639	23,967	1,617	950	666
2015	134,493	100,325	34,169	3,418	2,157	1,261
2016	145,386	114,804	30,582	2,909	2,114	795
2017	142,966	109,447	33,520	3,673	1,903	1,771
2018	143,292	103,978	39,314	4,734	2,200	2,534
2019	154,243	111,234	43,009	2,651	1,887	764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그림 3-12〉 전북지역 공종별 건설수주액 비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_공종별_건설수주액(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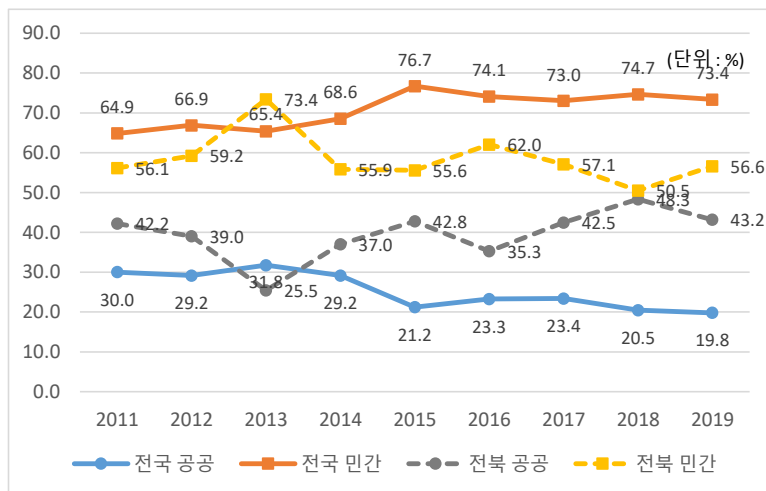
- 전라북도는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2011~2019년 동안의 평균 전국의 공공발주 건설수주액은 전체 건설수주액의 24.4%이고 민간발주 건설수주액은 71.7%인 반면, 전라북도의 공공발주 건설수주액 비율은 40.1%이고 민간발주 건설수주액은 58.2%임

〈표 3-14〉 전북지역 발주기관별 건설수주액

(단위 : 10억 원)

발주 기관 연도\	전국					전라북도				
	계	공공	민간	외국 기관	민자	계	공공	민간	외국 기관	민자
2011	95,332	28,624	61,839	142	4,727	3,007	1,269	1,688	8	41
2012	89,395	26,071	59,811	160	3,353	2,746	1,072	1,627	10	38
2013	77,885	24,736	50,947	199	2,003	3,359	855	2,465	20	19
2014	90,606	26,427	62,115	201	1,862	1,617	599	903	17	98
2015	134,493	28,546	103,185	144	2,618	3,418	1,463	1,900	5	51
2016	145,386	33,832	107,748	91	3,714	2,909	1,027	1,805	5	72
2017	142,966	33,446	104,431	121	4,969	3,673	1,561	2,097	9	6
2018	143,292	29,371	107,006	313	6,602	4,734	2,287	2,390	2	55
2019	154,243	30,572	113,151	357	10,163	2,651	1,145	1,501	1	4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경상)



〈그림 3-13〉 전북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비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사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경상)

4) 건축허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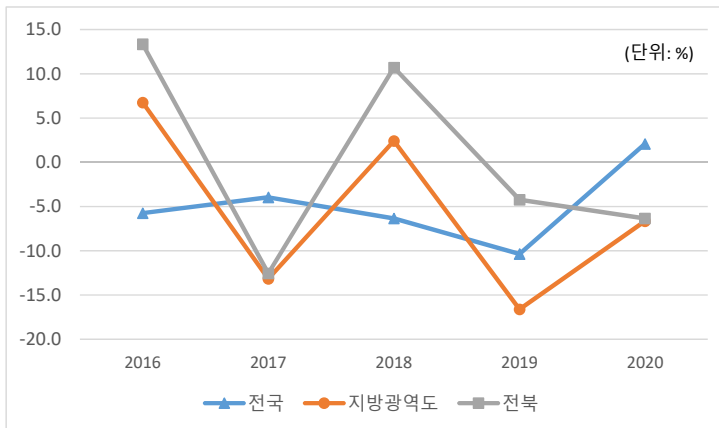
- 전라북도는 격년으로 건축허가면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2020년의 전국 건축허가면적은 147,310천 m²이고, 지방광역도는 47,263m²로서 전국의 32.08%를 차지하며 전북은 5,781천 m²로서 전국의 3.9%를 차지함
 - 전국적으로는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2020년에 증가로 전환됨
 - 전북은 지방광역도와 비슷한 전년 대비 증감율을 보이는데 격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2020년에 전북은 지방광역도와 달리 전년 대비 감소율이 더욱 확대됨

〈표 3-15〉 건축허가면적 추이

(단위 : 천 m²,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허가면적	189,840	178,955	171,875	160,964	144,293	147,31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가율		-5.7	-4.0	-6.3	-10.4	2.1
지방 광역도	허가면적	63,972	68,286	59,303	60,736	50,631	47,263
	비중	33.70	38.16	34.50	37.73	35.09	32.08
	증가율		6.7	-13.2	2.4	-16.6	-6.7
전북	허가면적	5,875.35	6,660	5,823	6,447	6,173	5,781
	비중	3.1	3.7	3.4	4.0	4.3	3.9
	증가율		13.4	-12.6	10.7	-4.2	-6.3

자료 : 통계청, 건설-건축허가및착공통계-시도별건축허가현황



〈그림 3-14〉 전라북도 건축허가면적 변화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건설-건축허가및착공통계-시도별건축허가현황

5) 종합건설업

가) 기성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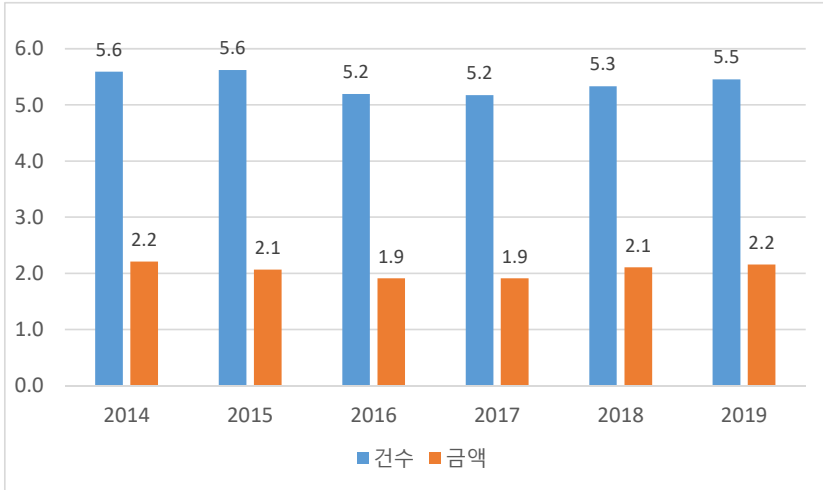
① 본사소재지별 기성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

- 전라북도에 본사소재지를 둔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계약건수는 2019년 5,638건으로 전국의 5.5% 비중을 차지하지만 계약금액은 전국의 2.2%에 불과함
 - 지방광역도의 기성실적 계약건수 비중은 2014년 47,764건 53.3%를 시작으로 감소 추세 속에서 2019년에는 52,082건 50.4%를 기록함
 - 이와 달리 전라북도 기성실적 계약건수는 2014년 5.6%를 시작으로 2016년 5.2%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다시 5.5%로 상승함
 - 전라북도 기성실적 계약금액은 2014년에 전국의 2.2%(3조 570억 원)에서 2016년과 2017년에 1.9%로 하락 후에 2019년 다시 2.2%(3조 8,410억 원)로 상승함

〈표 3-16〉 본사소재지별 기성실적 건수 및 계약 금액 (단위 : 건, 10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성실적 건수	전국	건	89,559	92,346	94,433	95,851	95,793	103,36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가율		0.03	0.02	0.01	0.00	0.07
	지방 광역시도	건	47,764	48,773	49,098	49,324	48,070	52,082
		비중	53.3	52.8	52.0	51.5	50.2	50.4
		증가율		0.02	0.01	0.00	-0.03	0.08
	전북	건	5,010	5,189	4,904	4,961	5,106	5,638
		비중	5.6	5.6	5.2	5.2	5.3	5.5
		증가율		0.03	-0.06	0.01	0.03	0.09
계약 금액	전국	금액	138,223	150,150	165,668	183,406	180,108	178,00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가율		0.08	0.09	0.10	-0.02	-0.01
	지방 광역시도	금액	40,495	43,162	44,649	47,088	45,657	44,964
		비중	29.3	28.7	27.0	25.7	25.3	25.3
		증가율		0.06	0.03	0.05	-0.03	0.02
	전북	금액	3,057	3,101	3,166	3,499	3,793	3,841
		비중	2.2	2.1	1.9	1.9	2.1	2.2
		증가율		0.01	0.02	0.10	0.08	0.01

자료 : 통계청, 건설-종합건설공사-본사소재지별 기성실적



〈그림 3-15〉 전라북도 본사소재지별 기성실적 건수 및 계약 금액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건설-종합건설공사-본사소재지별 기성실적

② 본사소재지별 세분공사종류별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 전라북도 종합건설업은 세분공사종류 중 토목공종 기성실적의 계약건수 및 계약 금액 비중이 높음
 - 기성실적으로 볼 때,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세분공사종류별 계약건수 비중은 토목공종이 2,515건으로 전국 토목공종 33,607건의 7.5%이고, 조경공종은 5.2%, 건축공종은 4.4%, 산업설비공종은 3.6% 순으로 전국 대비 비중을 나타냄
 - 계약금액 비중은 토목 3.8%, 조경 3.1%, 건축 1.9%, 산업설비 0.3%로 분석되어 계약건수와 동일한 비중 순위를 나타냄
 - 2019년 산업설비 공종은 전국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계약금액의 비중은 0.3%에 불과하여 대규모 공사 수주보다는 금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토목공종의 건설공사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적으로 건축공종과 토목공종의 비중이 각각 61.6%와 32.5%인 반면, 전라북도는 건축공종이 50.2%로서 전국과 비교하여 낮고 토목공종은 44.6%로서 전국의 32.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7〉 본사소재지별 세분공사종류별 기성실적 건수 및 비중

(단위 :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약 건수	전국	합계	89,559	92,346	94,433	95,851	95,793	103,360
		토목	21,979	27,450	32,383	32,467	31,626	33,607
		건축	60,464	57,258	55,531	56,979	57,997	63,678
		산업설비	3,232	3,196	1,788	1,833	1,727	1,674
		조경	3,884	4,442	4,731	4,572	4,443	4,401
	지방 광역시도	합계	47,764	48,773	49,098	49,324	48,070	52,082
		토목	14,978	19,017	22,108	22,550	21,953	23,271
		건축	29,150	25,910	23,986	23,853	23,331	26,037
		산업설비	1,731	1,570	723	727	711	708
		조경	1,905	2,276	2,281	2,194	2,075	2,066
	전북	합계	5,010	5,189	4,904	4,961	5,106	5,638
		토목	1,754	2,325	2,372	2,366	2,329	2,516
		건축	2,869	2,495	2,289	2,324	2,498	2,832
		산업설비	231	180	51	45	75	60
		조경	156	189	192	226	204	230
비중	전국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목	24.5	29.7	34.3	33.9	33.0	32.5
		건축	67.5	62.0	58.8	59.4	60.5	61.6
		산업설비	3.6	3.5	1.9	1.9	1.8	1.6
		조경	4.3	4.8	5.0	4.8	4.6	4.3
	지방 광역시도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목	31.4	39.0	45.0	45.7	45.7	44.7
		건축	61.0	53.1	48.9	48.4	48.5	50.0
		산업설비	3.6	3.2	1.5	1.5	1.5	1.4
		조경	4.0	4.7	4.6	4.4	4.3	4.0
	전북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목	35.0	44.8	48.4	47.7	45.6	44.6
		건축	57.3	48.1	46.7	46.8	48.9	50.2
		산업설비	4.6	3.5	1.0	0.9	1.5	1.1
		조경	3.1	3.6	3.9	4.6	4.0	4.1

자료 : 통계청, 건설-종합건설공사-본사소재지별 세부공종별 기성실적

〈표 3-18〉 본사소재지별 세분공사종류별 기성실적 계약금액 및 비중 (단위 : 10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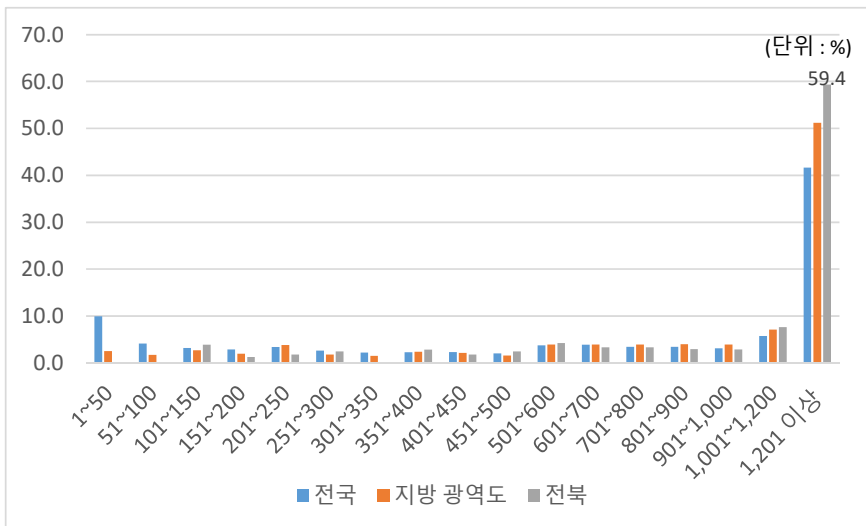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약 금액	전국	합계	138,223	150,150	165,668	183,406	180,108	178,004
		토목	26,171	29,004	34,226	32,762	31,409	32,468
		건축	94,314	103,663	117,488	135,338	134,381	131,134
		산업설비	15,037	14,397	10,904	12,015	11,209	11,716
		조경	2,701	3,086	3,050	3,290	3,109	2,685
	지방 광역시도	합계	40,495	43,162	44,649	47,088	45,657	44,964
		토목	9,455	10,777	13,307	13,185	12,571	13,009
		건축	25,887	26,984	27,710	30,605	29,880	29,030
		산업설비	3,940	3,984	2,269	1,970	1,980	1,869
		조경	1,211	1,415	1,361	1,326	1,224	1,056
	전북	합계	3,057	3,101	3,166	3,499	3,793	3,841
		토목	988	1,020	1,197	1,224	1,163	1,219
		건축	1,869	1,866	1,832	2,117	2,488	2,501
		산업설비	109	128	56	43	51	37
		조경	92	88	81	115	90	84
비중	전국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목	18.9	19.3	20.7	17.9	17.4	18.2
		건축	68.2	69.0	70.9	73.8	74.6	73.7
		산업설비	10.9	9.6	6.6	6.6	6.2	6.6
		조경	2.0	2.1	1.8	1.8	1.7	1.5
	지방 광역시도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목	23.3	25.0	29.8	28.0	27.5	28.9
		건축	63.9	62.5	62.1	65.0	65.4	64.6
		산업설비	9.7	9.2	5.1	4.2	4.3	4.2
		조경	3.0	3.3	3.0	2.8	2.7	2.3
	전북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목	32.3	32.9	37.8	35.0	30.7	31.7
		건축	61.1	60.2	57.9	60.5	65.6	65.1
		산업설비	3.6	4.1	1.8	1.2	1.3	1.0
		조경	3.0	2.8	2.5	3.3	2.4	2.2

자료 : 통계청, 건설-종합건설공사-본사소재지별 세부공종별 기성실적

③ 본사소재지 지역별 및 순위별 기성실적 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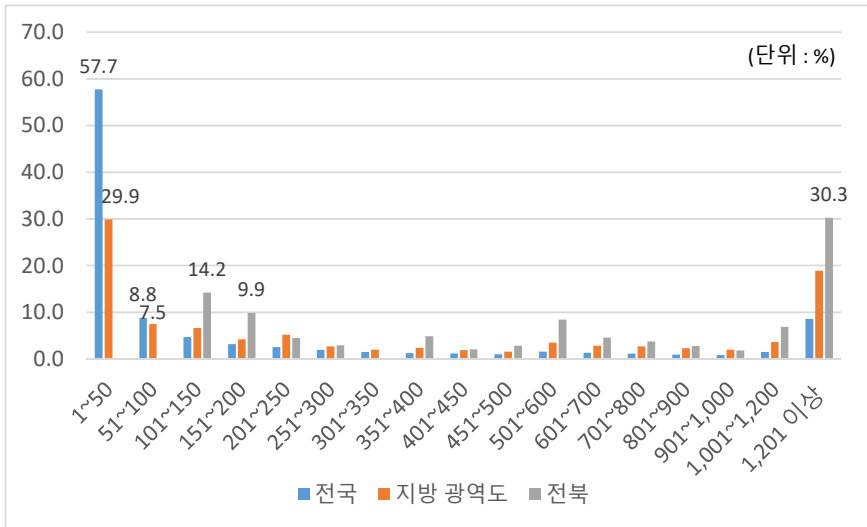
○ 전라북도 소재 건설업체(종합건설업)는 소규모의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공사 기성실적에서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모두 100위 이상에서 나타남
- 기성실적 건수에서는 전라북도 건설업체 중 1200위를 넘는 영세한 건설업체가 59.4%로서 전국 및 지방광역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줌
- 기성실적 금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50위 미만의 건설업체 공사가 전체 건설금액의 57.7%를 차지하고, 광역도 단위에서도 100위 미만의 건설업체가 전체의 37.4%를 차지할 정도로 상위순위 건설업체의 공사실적을 보이지만, 100위 미만의 순위를 가진 전라북도 건설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1200위 이상의 건설업체가 30.3%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전라북도의 101~1200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양호한 기성실적을 을 보여주고 있는데, 101~150위에서는 14.2%, 151~200위에서는 9.9%로서 전국 및 지방광역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림 3-16〉 본사소재지 지역별 및 순위별 기성실적 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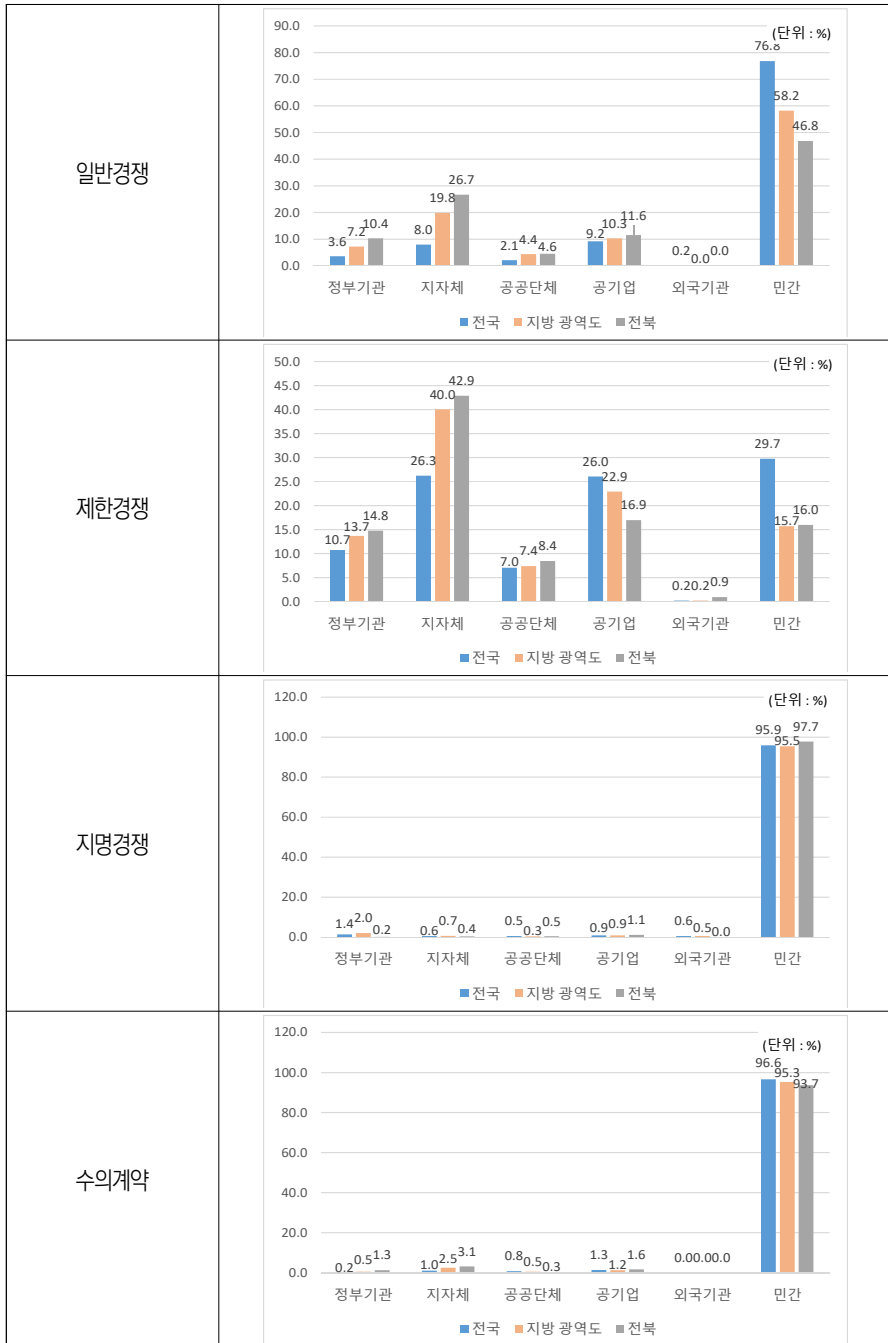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본사소재지별_순위별_발주기관별_기성실적



〈그림 3-17〉 본사소재지 지역별 및 순위별 기성실적 금액 비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본사소재지별_순위별_발주기관별_기성실적

- 전라북도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민간발주 건설공사에서 일반경쟁방식의 실적 비율이 낮고, 지자체발주의 제한경쟁방식 실적비율이 높음
 - 일반경쟁방식의 건설공사 실적에서는 민간발주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76.8%인 반면 전라북도 건설업체는 46.8%에 그침
 - 제한경쟁방식의 건설공사 실적에서는 전국적인 민간발주와 지자체발주 건설공사 실적이 각각 29.7%, 26.3%이지만 전라북도 건설업체는 지자체발주 건설공사 실적이 42.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본사소재지별 계약방법별 발주기관별 공사종류별 기성실적

〈그림 3-18〉 본사소재지별 계약방법별 발주기관별 기성실적(2019, 금액)

6) 전문건설업

가) 기성실적

① 전라북도 원도급 및 하도급 실적

-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의 기성실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도급보다 원도급 비율이 높고, 원도급 기성실적의 건수는 전국의 5.9%를 차지하는 반면 금액으로 본 기성실적의 비중은 3.8%에 불과함
 - 지방광역도는 전국의 전문건설 기성실적 건수의 45.5%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지만 금액으로는 24.4%에 불과하여 전문건설업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업체가 주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하도급의 건수 비중은 전국의 3.2%, 금액 비중은 2.3%에 불과해 하도급 규모 자체가 작다고 추론할 수 있음

〈표 3-19〉 전문건설 원도급 기성실적(2019)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원도급		하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금액	전국	832,859	113,324,850	640,511	37,128,274	192,348	76,196,577
	지방광역도	378,956	27,620,458	326,066	11,986,478	52,890	15,633,979
	전북	44,142	3,137,760	38,000	1,392,354	6,142	1,745,406
비중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광역도	45.5	24.4	50.9	32.3	27.5	20.5
	전북	5.3	2.8	5.9	3.8	3.2	2.3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하도급건설업통계 > 시도별 도급별 기성실적

② 전문건설업종별 원도급 기성실적

-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에서 원도급의 건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가장 많은 반면 금액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가장 많음
 - 전국의 전문건설업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사건수와 공사금액 모두 가장 많은데,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건수도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실적을 나타냄

〈표 3-20〉 전문건설업종별 원도급 기성실적(2019)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전국		전라북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40,511	37,128,274	38,000	1,392,354
실내건축공사업	88,353	6,605,352	1,249	48,517
토공사업	20,035	1,267,782	1,059	34,505
습식.방수공사업	14,574	909,722	516	32,991
석공사업	11,525	460,423	1,027	29,195
도장공사업	22,582	1,165,572	1,160	52,294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14,198	1,044,375	1,045	37,77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63,423	3,089,853	4,587	195,25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835	299,513	96	6,26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9,553	2,795,659	10,329	231,024
기계설비공사업	89,393	7,553,047	4,178	201,940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69,129	2,292,578	4,236	95,649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959	130,158	293	13,210
철도궤도공사업	305	193,940	2	42
포장공사업	27,295	1,535,409	2,066	77,062
수중공사업	843	83,374	19	2,639
조경식재공사업	28,831	1,224,215	1,280	46,66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15,023	600,943	734	26,851
강구조물공사업	479	172,106	18	8,903
철강재설치공사업	2	672	-	-
삭도설치공사업	48	5,023	-	-
준설공사업	44	74,335	1	5,922
승강기설치공사업	2,851	184,398	25	1,599
시설물유지관리업	87,231	5,439,822	4,080	244,058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하도급건설업통계 > 시도별 업종별 기성실적(원도급)

③ 전문건설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

- 전라북도 전문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 전국적으로는 건설공사 건수가 많은 전문건설업종은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이고 금액으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가장 많음

- 전라북도에서는 건수 및 금액에서 모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가장 많음

〈표 3-21〉 전문건설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2019)

구분	전국		전라북도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백만원)
합계	192,348	76,196,577	6,142	1,745,406
실내건축공사업	17,285	6,394,206	345	76,663
토공사업	15,497	10,828,046	594	265,622
습식·방수공사업	15,420	4,350,433	336	66,900
석공사업	6,863	1,906,958	203	32,981
도장공사업	9,042	1,220,203	200	20,285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9,819	2,015,171	287	45,17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8,982	7,024,079	907	168,50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6,162	1,963,637	37	10,08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8,448	17,955,915	1,175	557,284
기계설비공사업	24,795	11,588,648	672	126,196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7,296	1,679,021	290	74,287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027	774,820	54	40,577
철도궤도공사업	94	70,370	4	1,411
포장공사업	4,081	596,183	129	16,228
수중공사업	537	566,005	10	20,868
조경식재공사업	5,623	1,411,192	212	42,548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2,656	907,954	91	18,629
강구조물공사업	5,685	3,416,660	281	120,031
철강재설치공사업	143	208,970	-	-
석도설치공사업	25	11,328	-	-
준설공사업	29	104,445	-	-
승강기설치공사업	3,226	352,479	44	724
시설물유지관리업	8,613	849,856	271	40,40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하도급건설업통계 > 시도별 업종별 기성실적(하도급)

나) 지역별 업종 및 입찰형태별 기성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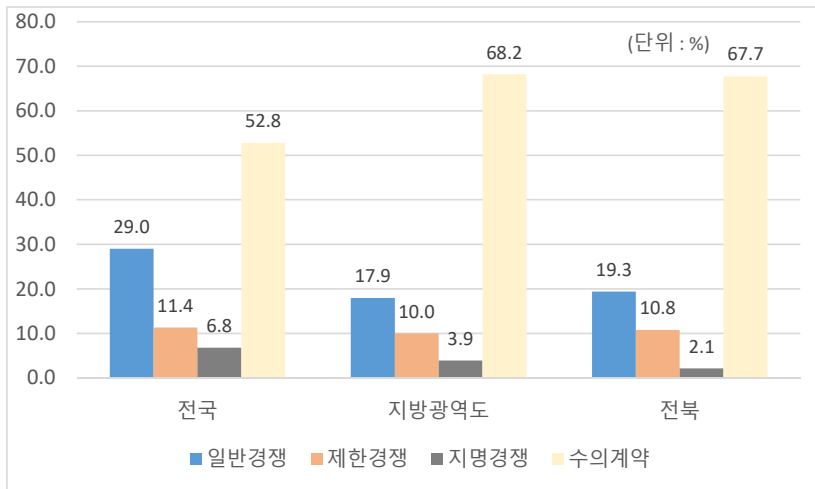
- 전라북도 입찰형태별 기성실적 건수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가장 많고, 금액에서의 비중은 일반경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2〉 입찰형태별 기성실적(2019)

(단위 : 건,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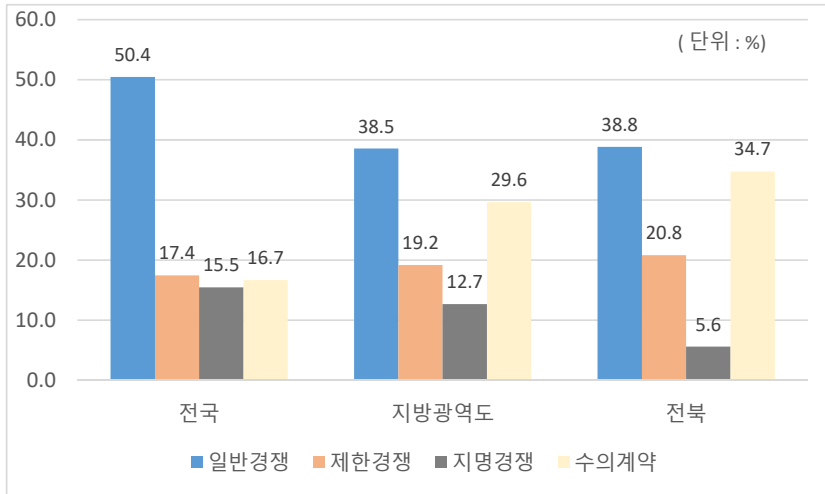
구분	전국		지방광역시도		전북		
	수/금액	비율	수/금액	비율	수/금액	비율	
건수	합계	832,859	100.0	378,956	100.0	44,142	100.0
	일반경쟁	241,799	29.0	67,975	17.9	8,540	19.3
	제한경쟁	94,599	11.4	37,834	10.0	4,757	10.8
	지명경쟁	56,697	6.8	14,677	3.9	946	2.1
	수의계약	439,764	52.8	258,470	68.2	29,899	67.7
금액	합계	113,324,850	100.0	27,620,458	100.0	3,137,760	100
	일반경쟁	57,144,539	50.4	10,645,226	38.5	1,218,165	38.8
	제한경쟁	19,765,792	17.4	5,290,428	19.2	653,770	20.8
	지명경쟁	17,524,725	15.5	3,503,887	12.7	175,694	5.6
	수의계약	18,889,795	16.7	8,180,916	29.6	1,090,131	34.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전문건설업-기성실적-시도별 입찰형태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그림 3-19〉 입찰형태별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계약 건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전문건설업-기성실적-시도별 입찰형태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그림 3-20〉 입찰형태별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계약 금액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전문건설업-기성실적-시도별 입찰형태 및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다) 시공지역별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 전북의 전문건설업 기성실적 계약건수는 1천만 원 미만과 계약금액은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의 기성실적 계약건수 비중은 1천만 원 이하의 공사가 34.0% 가장 높은 반면 계약 금액 비중은 50억 원 이상의 공사가 10%대 이상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광역시도의 공사는 3억~5억 원 규모의 공사를 중심으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공사금액이 큰 대규모 공사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전북의 기성실적 계약금액 비중은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1%,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9.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3% 순으로 나타나 2억 원 미만의 공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23〉 공사규모별 기성실적(2019)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전국		지방광역시도		전북		
	수/금액	비율	수/금액	비율	수/금액	비율	
건수	합계	832,859	100.0	435,647	100.0	47,146	100.0
	1천만원 미만	282,914	34.0	151,421	34.8	15,904	33.7
	1천만~1.5천만원 미만	79,818	9.6	49,892	11.5	5,707	12.1
	1.5천만~2천만원 미만	91,195	10.9	60,601	13.9	6,444	13.7
	2천만 ~ 5천만원 미만	143,757	17.3	74,116	17.0	8,517	18.1
	5천만~1억원 미만	83,498	10.0	39,075	9.0	4,407	9.3
	1억~2억원미만	57,606	6.9	24,890	5.7	2,571	5.5
	2억~3억원미만	26,928	3.2	11,311	2.6	1,211	2.6
	3억~5억원미만	24,680	3.0	9,655	2.2	1,003	2.1
	5억~7억원미만	12,222	1.5	4,545	1.0	487	1.0
	7억~10억원미만	9,882	1.2	3,437	0.8	331	0.7
	10억~15억원미만	7,774	0.9	2,733	0.6	252	0.5
	15억~20억원미만	3,816	0.5	1,247	0.3	91	0.2
	20억~30억원미만	3,718	0.4	1,213	0.3	109	0.2
	30억~50억원미만	2,584	0.3	798	0.2	64	0.1
	50억~100억원미만	1,681	0.2	514	0.1	37	0.1
	100억원이상	786	0.1	199	0.0	11	0.0
	금액	합계	113,324,850	100.0	40,928,735	100.0	3,826,640
1천만원 미만		1,283,209	1.1	745,849	1.8	86,085	2.2
1천만~1.5천만원 미만		987,845	0.9	618,703	1.5	70,110	1.8
1.5천만~2천만원 미만		1,621,932	1.4	1,080,297	2.6	114,610	3.0
2천만 ~ 5천만원 미만		4,604,397	4.1	2,348,085	5.7	270,817	7.1
5천만~1억원 미만		5,994,214	5.3	2,796,748	6.8	317,791	8.3
1억~2억원미만		8,188,814	7.2	3,525,578	8.6	363,520	9.5
2억~3억원미만		6,582,247	5.8	2,761,095	6.7	294,951	7.7
3억~5억원미만		9,539,167	8.4	3,723,121	9.1	386,930	10.1
5억~7억원미만		7,193,382	6.3	2,668,435	6.5	283,968	7.4
7억~10억원미만		8,238,428	7.3	2,858,468	7.0	273,939	7.2
10억~15억원미만		9,424,326	8.3	3,298,657	8.1	302,493	7.9
15억~20억원미만		6,581,179	5.8	2,145,054	5.2	156,905	4.1
20억~30억원미만		9,024,368	8.0	2,932,656	7.2	264,766	6.9
30억~50억원미만		9,796,089	8.6	3,021,040	7.4	245,719	6.4
50억~100억원미만		11,473,586	10.1	3,498,760	8.5	254,803	6.7
100억원이상		12,791,667	11.3	2,906,189	7.1	139,231	3.6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전문건설업-기성실적-공사규모별 기성실적

2. 전북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 종합 현황

1) 건설산업업체 수

- 2021년 3월 기준 전라북도 건설업체 수는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건설업체수는 총 88,993개로 이중 종합건설업체가 13,734개, 전문건설업체가 75,259개 있음
 - 지방광역도의 종합건설업체 수는 6,407개로서 전국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764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 수를 보면 지방광역도에 34,856개로서 전국의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이중 3,973개로 전국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4〉 건설산업업체 수 및 비중 현황(2021년 3월 기준)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비중		
	전체	종합	전문	전체	종합	전문
전국	88,993	13,734	75,259	100	100	100
지방광역시도	41,263	6,407	34,856	46.4	46.7	46.3
전북	4,737	764	3,973	5.3	5.6	5.2

출처 : 건설산업정보시스템(2021.03 기준)-건설산업통계- 월별 건설업체수 및 건설업종수

2) 건설업체 운영형태 현황

- 전라북도의 건설업체 운영형태는 단독사업체가 95.5%로서 대부분을 차지함
 - 전라북도 2019년 건설업체수는 6,077개로서 이 중에서 단독사업체는 5,803개를 차지하여 전체의 95.5%임
 - 공장지사영업소 및 본사, 본점 형태는 2%대의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공장,지사, 영업소가 2019년 기준으로 각각 전체의 2.3%, 2.2%를 차지함

〈표 3-25〉 건설업체 운영형태별 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사업체비중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전국	계	137,220	138,478	142,840	146,293	100.0	100.0	100.0	100.0
	단독사업체	131,174	131,942	135,714	138,612	95.6	95.3	95.0	94.7
	본사,본점	2,840	3,009	3,279	3,616	2.1	2.2	2.3	2.5
	공장,지사,영업소	3,206	3,527	3,847	4,065	2.3	2.5	2.7	2.8
지방 광역시도	계	53,221	53,543	55,828	8,154	100.0	100.0	100.0	100.0
	단독사업체	51,007	51,173	53,315	55,369	95.6	95.8	95.6	95.5
	본사,본점	1,117	1,151	1,207	1,347	2.3	2.1	2.1	2.2
	공장,지사,영업소	1,097	1,219	1,306	1,438	2.1	2.1	2.3	2.3
전북	계	5,675	5,627	5,864	6,077	100.0	100.0	100.0	100.0
	단독사업체	5,471	5,409	5,642	5,803	96.4	96.1	96.2	95.5
	본사,본점	102	99	107	135	1.8	1.8	1.8	2.2
	공장,지사,영업소	102	119	115	139	1.8	2.1	2.0	2.3

출처 : 통계청,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10차개정-사업체 구분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3) 건설산업 종사자 및 매출

가) 건설산업 종사자

- 전라북도 건설산업 분야 종사자 수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6.6%, 지방광역시도 6.4%보다 높은 7.0%를 기록함
 - 전국의 건설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최근 4년간 6.6~6.6% 수준에서, 지방광역시도는 6.3~6.4% 수준에서 큰 변동 없는 분포를 나타냄
 - 전북의 경우에도 건설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최근 4년간 7.0%를 유지하고 있음

나) 건설산업 사업체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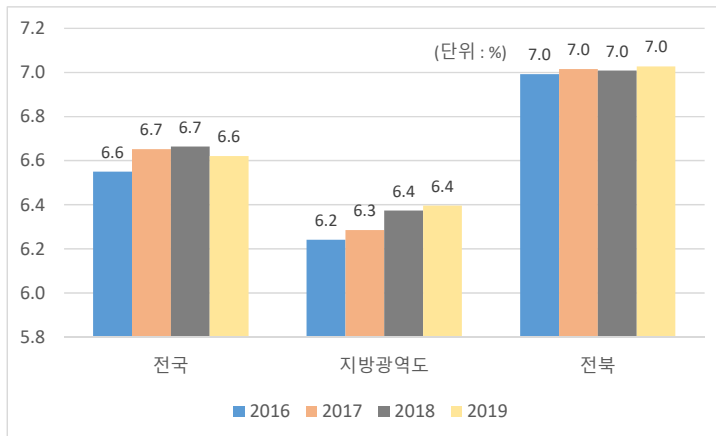
- 전라북도 건설산업 사업체 매출 비중은 2019년 기준 전국 6.2%보다는 낮지만 지방광역시도 4.5%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냄
 - 2018년은 전년기준 사업체 매출 비중이 전국 -0.3%, 지방광역시도 -0.6% 하락한 반면 전북은 0.4% 상승함

〈표 3-26〉 건설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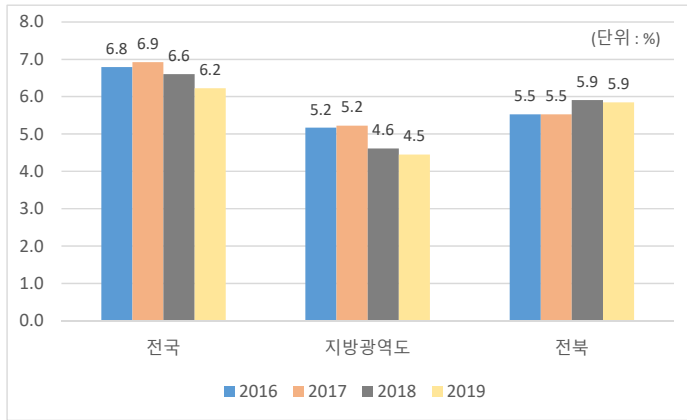
구분	종사자 수			매출금액			
	전국	지방광역도	전북	전국	지방광역도	전북	
'16	전체	21,259	11,131	675	5,462,931	2,658,843	129,389
	건설산업	1,392	694,715	47	371,205	137,386	7,149
	비중	6.6	6.2	7.0	6.8	5.2	5.5
'17	전체	21,626	11,376	681	5,836,148	2,895,834	136,989
	건설산업	1,438	715,055	47	403,856	151,336	7,573
	비중	6.7	6.3	7.0	6.9	5.2	5.5
'18	전체	22,234	11,782	694	6,033,068	3,023,244	140,185
	건설산업	1,481	751	48	398,127	139,472	8,285
	비중	6.7	6.4	7.0	6.6	4.6	5.9
'19	전체	22,723	12,171	720	6,195,097	3,044,892	143,060
	건설산업	1,504	778	50	385,823	135,564	8,369
	비중	6.6	6.4	7.0	6.2	4.5	5.9

자료 : 통계청,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10차개정-종사자수 및 매출액



〈그림 3-21〉 전북 건설업 종사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10차개정-종사자수 및 매출액



〈그림 3-22〉 전북 건설업 매출액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10차개정-종사자수 및 매출액

나. 종합건설업체

1) 종합건설업체 및 업종

- 2018년 이후 2021.3월까지 종합건설업의 업체수와 업종수는 해마다 상승함
 -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2021년 3월 기준 764개로 이는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수는 2021년 3월 기준 959개로 전체의 6%를 차지함
 - 2021.3월 기준 전국의 종합건설업체 수는 13,734개로 전년 말 대비 1.3% 상승한 반면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764개로 전년 말 대비 3.0%를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임

〈표 3-27〉 종합건설 업체 및 업종 현황

(단위 : 개, %)

구분		업체				업종			
		2018.12	2019.12	2020.12	2021.03	2018.12	2019.12	2020.12	2021.03
전국	수	12,639	13,036	13,557	13,734	14,749	15,220	15,832	16,03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방광역시도	수	6,010	6,095	6,328	6,407	7,397	7,524	7,834	7,933
	비중	47.6	46.8	46.7	46.7	50.2	49.4	49.5	49.5
전북	수	697	718	742	764	875	902	932	959
	비중	5.5	5.5	5.5	5.6	5.9	5.9	5.9	6.0

출처 : 건설산업정보시스템(2021.03)-건설산업통계-건설업등록통계-월별 건설업체 및 공종수

2) 종합건설업체 공종 현황

가) 공종별 종합업체 수

- 2021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종은 토목공사업으로 총 258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의 9.2%를 차지하는 비중임
- 토목공사업 다음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246개 7.9%, 조경 공사업 109개 7.4%,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18개 4.3%, 건축공사업 328개 4.0% 순을 보임

〈표 3-28〉 공종별 종합건설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계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전국	수	16,031	3,116	2,791	8,235	415	1,47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 광역시도	수	7,996	2,004	2,320	2,715	177	780
	비중	49.9	64.3	83.1	33.0	42.7	52.9
전북	수	959	246	258	328	18	109
	비중	6.0	7.9	9.2	4.0	4.3	7.4

출처 : 건설산업정보시스템(2021.03)-건설산업통계-건설업등록통계-건설업종별 등록업종 수

나) 시군별 종합건설업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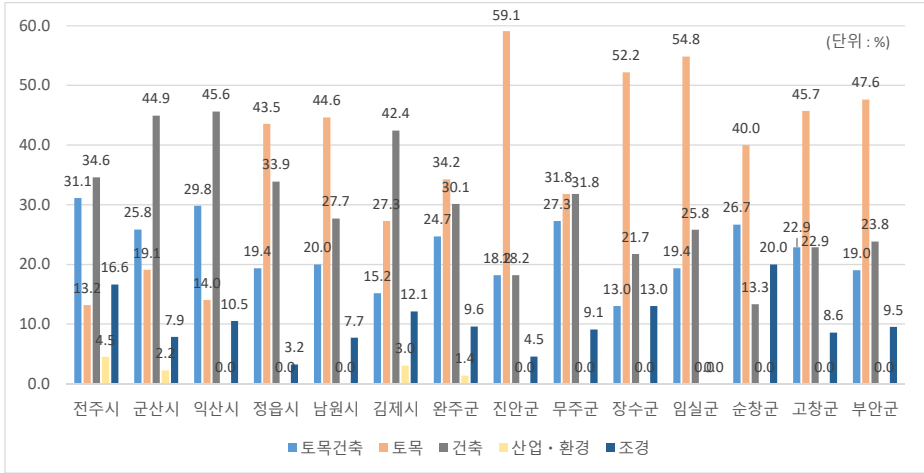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는 건축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나머지 시군은 토목업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토목건축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전주시 전체업종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은 장수군으로서 13.0%로 나타남
- 토목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진안군 전체업종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은 익산시로 14.0%로 나타남
- 건축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익산시로 익산시 전체업종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은 순창군으로 13.3%로 나타남
- 산업환경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 전주시 전체업종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제시 3.0%, 군산시 2.2%, 완주군 1.4% 순을 보임
- 조경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군으로 순창군 전체업종의 20.0%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9〉 시군별 종합건설업종 분포(2021)

(단위 : 개, %)

지역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합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합계	241	26.0	246	26.5	311	33.5	21	2.3	108	11.7	927	100.0
전주시	118	31.1	50	13.2	131	34.6	17	4.5	63	16.6	379	100.0
군산시	23	25.8	17	19.1	40	44.9	2	2.2	7	7.9	89	100.0
익산시	17	29.8	8	14.0	26	45.6	0	0.0	6	10.5	57	100.0
정읍시	12	19.4	27	43.5	21	33.9	0	0.0	2	3.2	62	100.0
남원시	13	20.0	29	44.6	18	27.7	0	0.0	5	7.7	65	100.0
김제시	5	15.2	9	27.3	14	42.4	1	3.0	4	12.1	33	100.0
완주군	18	24.7	25	34.2	22	30.1	1	1.4	7	9.6	73	100.0
진안군	4	18.2	13	59.1	4	18.2	0	0.0	1	4.5	22	100.0
무주군	6	27.3	7	31.8	7	31.8	0	0.0	2	9.1	22	100.0
장수군	3	13.0	12	52.2	5	21.7	0	0.0	3	13.0	23	100.0
임실군	6	19.4	17	54.8	8	25.8	0	0.0	0	0.0	31	100.0
순창군	4	26.7	6	40.0	2	13.3	0	0.0	3	20.0	15	100.0
고창군	8	22.9	16	45.7	8	22.9	0	0.0	3	8.6	35	100.0
부안군	4	19.0	10	47.6	5	23.8	0	0.0	2	9.5	21	100.0

출처 : 전라북도청 내부자료. 종합건설업종 등록업체 목록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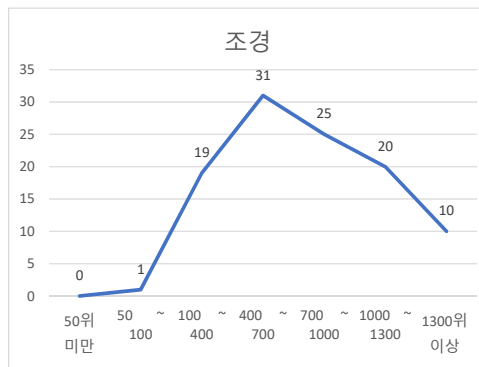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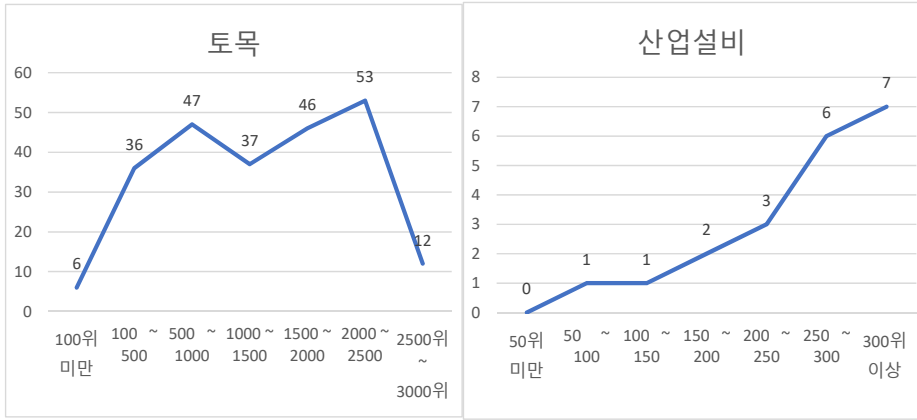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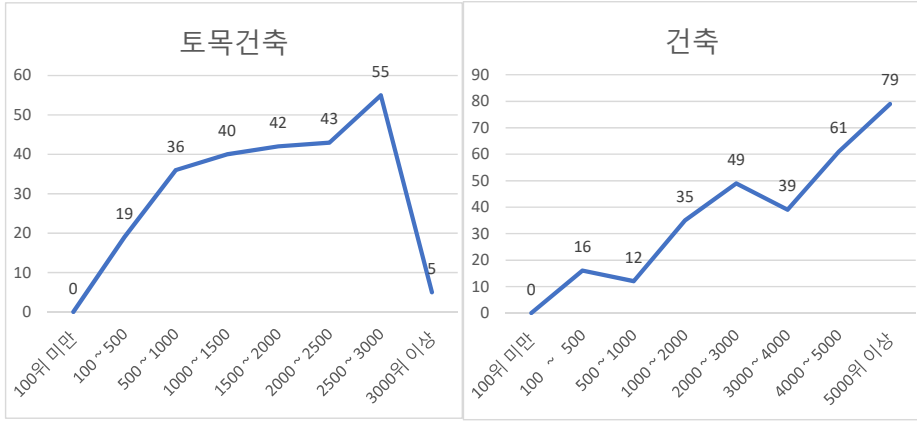


〈그림 3-23〉 시군별 종합건설업종 분포

출처 : 전라북도청 내부자료. 종합건설업종 등록업체 목록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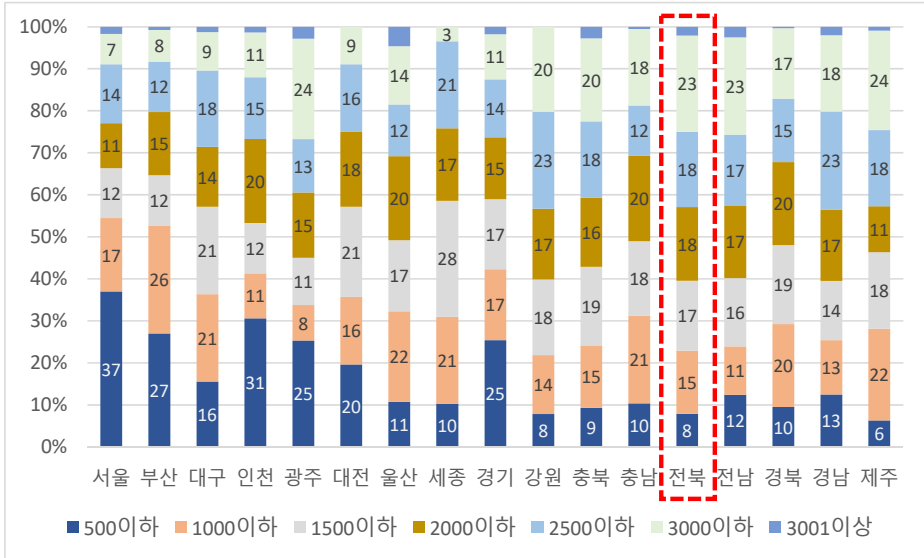
3)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토목업종과 조경업의 업체가 중위권 이내에서 분포가 높은 반면 토목건축, 건축, 산업설비는 하위권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음
 - 토목건축업종은 100위 미만 순위가 전무하며 2500위 이상 3000위 미만에 순위가 55개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함
 - 건축 업종은 100위 미만의 순위는 전무한 실정이며 5000위 이상 순위가 79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가장 취약한 경쟁력을 나타냄
 - 토목업종은 하위권인 2000위 이상 2500위 미만에 53개가 분포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중상위권인 500위 이상 1000위 미만에 47개 업체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시공능력평가액을 받는 도내 산업설비 업체는 20개소 밖에 되지 않으며 13개가 250위 이상의 순위가 분포하고 있음
 - 조경업종은 50위 미만 순위에서 전무하여 400위 이상 700위 미만, 중위권 순위가 31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냄



〈그림 3-24〉 종합건설업 공종별 시공능력평가 순위

자료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2020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그림 3-25〉 시도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분포

자료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2020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다. 전문건설업체

1) 전문건설업체 및 업종 현황

-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전문건설업체의 업체수 및 업종수는 해마다 상승함
 - 2021년 3월 기준 도내 전문업체 수는 3,973개로 전국의 5.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은 6,265개로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2021.3월 기준 전국의 전문건설업체 수는 75,259개로 전년 말 대비 2.0% 상승하였고, 지방광역도는 2.3% 상승한 반면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3,973개로 전년 말 대비 3.1%를 상승해 전국 및 지방광역도 전문건설업체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남

〈표 3-30〉 전문건설 업체 및 업종 현황

(단위 : 개, %)

구분	업체				업종				
	2018.12	2019.12	2020.12	2021.03	2018.12	2019.12	2020.12	2021.03	
전국	수	66,829	70,001	73,809	75,259	98,466	103,750	110,897	113,17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 광역도	수	30,467	32,023	34,060	34,856	45,643	48,420	52,605	54,132
	비중	45.6	45.7	46.1	46.3	46.4	46.7	47.4	47.8
전북	수	3,420	3,606	3,855	3,973	5,226	5,570	6,074	6,265
	비중	5.1	5.2	5.2	5.3	5.3	5.4	5.5	5.5

출처 : 건설산업정보시스템(2021.03)-건설산업통계-건설업등록통계-월별 건설업체 및 공종수

2) 전문건설업체 업종 현황

- 2021년 기준 전북도내에서 많은 전문건설업 공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전국 동종의 4.1%를 차지함
 - 다음으로 많은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총 1,234개로서 전국 동종의 10.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03개 6.6%, 도장습삭방수석공사업 625개 6.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이 530개 5.7%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적은 수의 공종은 철도·궤도공사업으로 1개 업체가 있고, 다음 순으로 적은 공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12개임

〈표 3-31〉 공종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단위 : 개, %)

공종	전국		지방광역시도		전북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2,162	100.0	7,219	59.4	803	6.6
실내건축공사업	6,901	100.0	3,024	43.8	190	2.8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9,231	100.0	5,923	64.2	530	5.7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9,925	100.0	6,748	68.0	625	6.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723	100.0	5,590	64.1	496	5.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249	100.0	10,107	82.5	1,234	1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783	100.0	2,348	62.1	199	5.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8,366	100.0	5,243	62.7	527	6.3
철도·궤도공사업	41	100.0	14	34.1	1	2.4
철강구조물공사업	771	100.0	446	57.8	31	4.0
수중준설공사업	451	100.0	383	84.9	20	4.4
승강기·삭도공사업	692	100.0	297	42.9	12	1.7
기계가스설비공사업	9,397	100.0	5,226	55.6	332	3.5
가스난방공사업	30,482	100.0	16,757	55.0	1,265	4.1
총계	113,174	100.0	70,393	62.2	6,265	5.5

출처 : 건설산업정보시스템(2021.03)-건설산업통계-건설업등록통계-월별 건설업체 및 공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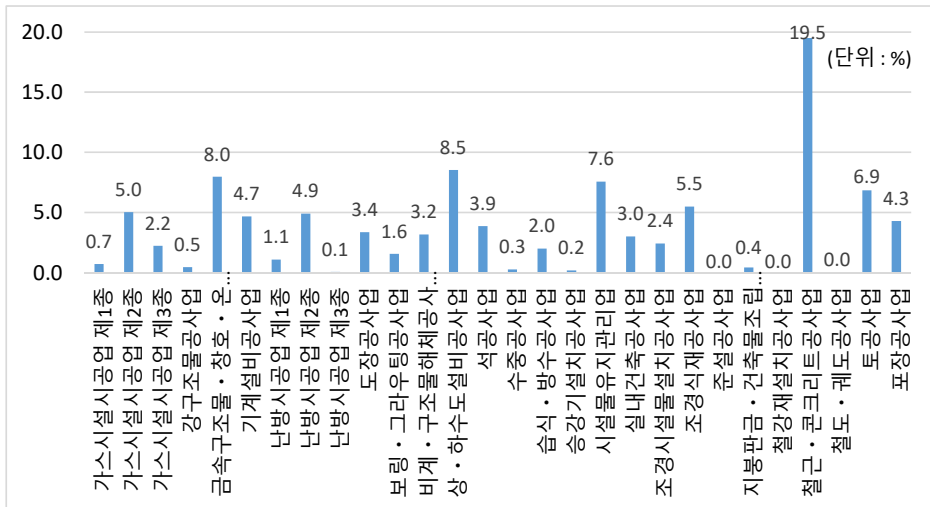
○ 업종별 전문건설업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가장 많음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전체 전문건설업 업종의 19.5%를 차지하여 가장 두드러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8.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8.0%, 시설물유지관리업이 7.6%, 토공사업이 6.9%, 조경식재공사업이 5.5% 등의 주요 업종분포를 보임

〈표 3-32〉 업종수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업종	업체수	업종	업체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44	수중공사업	17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302	습식·방수공사업	121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135	승강기설치공사업	12
강구조물공사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45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479	실내건축공사업	181
기계설비공사업	28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46
난방시공업 제1종	67	조경식재공사업	331
난방시공업 제2종	295	준설공사업	2
난방시공업 제3종	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7
도장공사업	202	철강재설치공사업	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9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7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92	철도·궤도공사업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13	토공사업	412
석공사업	233	포장공사업	259
계			6,010

자료 : 도청 내부자료(전문건설업 등록목록)



〈그림 3-26〉 전문건설업종 비율

자료 : 도청 내부자료(전문건설업 등록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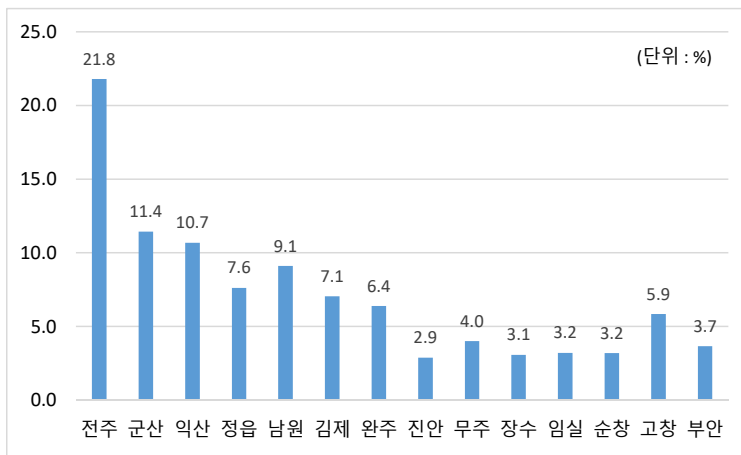
3) 시군별 전문건설업체 업종 분포 현황

- 가장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로서 1,310개(21.8%)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174개(6.4%)임

〈표 3-33〉 시군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시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업체수	1,310	688	642	458	547	424	384
시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업체수	174	241	185	193	192	352	220

자료 : 도청 내부자료(전문건설업 등록목록)



〈그림 3-27〉 시군별 전문건설업체 현황

자료 : 도청 내부자료(전문건설업 등록목록)

-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전주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14.0%로 가장 높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9.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장수, 순창, 고창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전주를 제외한 시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석공사업이 공히 4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나타남
- 전주와 연결하는 김제와 완주에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주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업종임

〈표 3-34〉 시군별 업종별 업체수 비율(%)

행 레이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1.8	0.9	1.1	0.2	0.0	0.7	0.3	0.0	0.0	0.0	0.0	0.0	0.6	0.0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5.0	5.1	8.4	5.9	4.8	5.2	3.9	4.0	3.7	2.2	2.6	3.6	3.4	5.9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3.7	2.5	2.5	2.0	2.2	1.4	0.3	2.3	3.3	0.5	1.6	1.6	1.1	1.4
강구조물공사업	0.6	1.7	0.2	0.0	0.2	1.4	0.3	0.0	0.0	0.0	0.0	0.0	0.0	0.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9.6	8.6	9.0	5.5	7.7	9.7	9.1	4.6	8.7	4.3	5.7	3.1	6.8	6.8
기계설비공사업	7.4	10.0	5.1	3.5	2.2	3.5	4.9	2.3	1.7	0.5	1.0	1.0	1.4	0.9
난방시공업 제1종	2.0	1.9	1.6	1.5	0.4	0.2	0.5	0.0	0.8	0.0	0.0	0.5	0.9	0.0
난방시공업 제2종	6.1	4.5	5.1	3.9	5.9	6.4	1.6	4.0	5.4	1.1	3.6	6.3	4.0	5.9
난방시공업 제3종	0.1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0.0
도장공사업	4.6	3.1	4.8	3.5	3.1	3.5	1.3	2.3	3.3	2.2	1.6	1.6	3.4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1	0.7	1.4	0.9	1.5	0.9	3.6	2.9	1.7	0.5	4.1	2.6	2.0	2.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사업	3.4	5.7	3.4	2.4	1.8	2.8	3.4	2.9	2.5	1.6	3.6	1.0	3.1	2.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7	10.5	12.3	7.0	5.9	7.1	8.1	12.6	8.3	18.4	8.8	11.5	6.8	16.4
석공사업	1.3	0.3	1.2	4.6	8.6	0.2	4.4	13.8	10.4	11.4	9.3	12.0	1.7	1.4
수중공사업	0.1	1.7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습식·방수공사업	4.2	0.9	2.3	2.0	1.3	0.7	3.1	0.0	0.8	0.5	1.0	0.0	1.4	1.8
승강기설치공사업	0.5	0.0	0.2	0.0	0.0	0.2	0.8	0.0	0.0	0.0	0.0	0.0	0.0	0.0
시설물유지관리업	14.0	5.2	5.6	6.1	7.1	3.8	9.4	4.0	5.4	3.2	6.2	4.2	6.5	5.9
실내건축공사업	6.8	2.5	2.6	1.5	1.6	2.1	2.9	0.0	1.7	2.2	1.0	1.0	2.3	0.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3	2.5	1.6	3.3	2.2	2.4	1.8	1.7	0.0	1.6	2.1	2.6	2.8	3.2
조경식재공사업	5.9	5.4	5.3	4.4	6.9	6.1	4.9	5.7	3.3	4.3	6.2	3.6	6.3	5.9
준설공사업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0.3	0.6	0.6	0.7	0.7	0.5	0.5	0.0	0.0	0.0	0.5	0.0	0.6	0.5
철강재설치공사업	0.0	0.0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2	13.7	12.8	27.1	23.0	28.5	22.1	25.3	27.0	34.6	28.0	34.4	31.8	24.5
철도·궤도공사업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토공사업	4.5	7.4	7.3	6.6	6.9	5.2	8.6	7.5	7.9	8.1	9.8	6.8	9.9	8.2
포장공사업	2.7	4.2	5.1	7.4	6.0	6.8	4.2	4.0	4.1	2.7	3.1	2.6	2.8	2.7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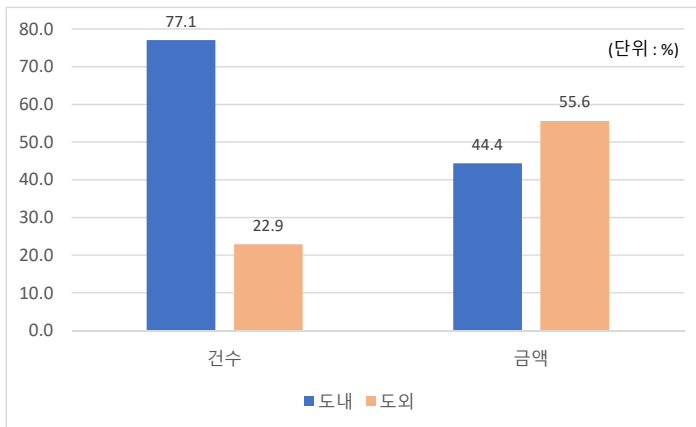
자료 : 도청 내부자료(전문건설업 등록 목록)

3. 전북 역내 공사 현황

가. 원도급(1억 원 이상) 공사현황¹⁶⁾

1) 원도급(1억 원 이상) 공사 건수 및 금액 수주 현황

- 전북도내에서 진행된 원도급 공사 중 도내업체가 수주한 공사 공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18년~2020년 간 도내에서 진행된 1억 원 이상 원도급 공사 중 도내업체가 수주한 공사 건수는 77.1%인 반면 공사금액은 44.4%에 불과함
 - 1억 원 이상 원도급 공사는 총 15,094건이며 이중 전라북도 내 업체가 11,637건을 수주하였고, 공사금액은 총 19,651,701백만 원이며 이중 도내 업체가 8,713,376백만 원을 수주함



〈그림 3-28〉 1억 원 이상 원도급 공사 도내 업체 수주 현황

출처 : 국토부 내부자료, 2018년~2020년 1억원이상 원도급 리스트

2) 발주자별 원도급 공사

- 최근 3년간 민간이 발주한 공사 건수는 감소, 공사액은 증가함
 - 공사액의 민간발주 비중이 2018년 47.5%, 2019년 53.8%, 2020년 57.0%로 계속 증가하지만 공사건수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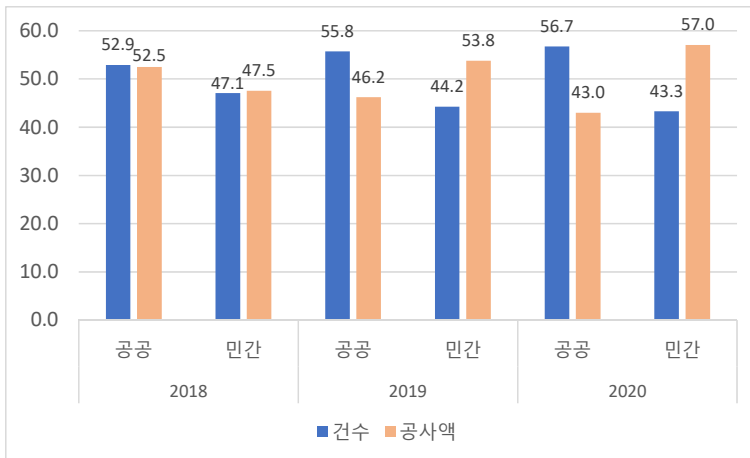
16)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북공사지역 2018년~2020년 1억원이상 원도급 리스트 15,094건을 분석함

〈표 3-35〉 1억 원 이상 원도급 발주자별 현황

(단위 : 건, %)

년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18	공공	2,356	52.9	37,548	52.5
	민간	2,098	47.1	34,014	47.5
	합계	4,454	100.0	71,563	100.0
2019	공공	2,973	55.8	26,982	46.2
	민간	2,359	44.2	31,387	53.8
	합계	5,332	100.0	58,369	100.0
2020	공공	3,010	56.7	28,606	43.0
	민간	2,298	43.3	37,979	57.0
	합계	5,308	100.0	66,585	100.0
합계	공공	8,339	55.2	93,137	47.4
	민간	6,755	44.8	103,380	52.6
	합계	15,094	100.0	196,517	100.0

출처 : 국토부 내부자료, 2018년~2020년 1억이상 원도급 리스트



〈그림 3-29〉 1억 원 이상 원도급 발주자별 현황

출처 : 국토부 내부자료, 2018년~2020년 1억이상 원도급 리스트

3) 시군별 원도급 공사

- 도내에서 가장 많은 원도급 공사가 진행된 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순이며 전주시에 3,040건 57.3%, 금액은 54,292백만 원 27.6% 집중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낮은 공사 건수를 나타낸 지역은 순창군으로 8.1%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사 금액으로는 장수군이 1.1%로 가장 작은 비중을 나타냄

〈표 3-36〉 시군별 원도급 공사건수 현황

(단위 : 건, %)

지역	2018		2019		2020		합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주	893	20.0	1,093	20.5	1,054	19.9	3,040	57.3
군산	619	13.9	720	13.5	716	13.5	2,055	38.7
익산	583	13.1	637	11.9	650	12.2	1,870	35.2
정읍	306	6.9	385	7.2	407	7.7	1,098	20.7
남원	326	7.3	388	7.3	377	7.1	1,091	20.6
김제	295	6.6	348	6.5	368	6.9	1,011	19.0
완주	330	7.4	401	7.5	401	7.6	1,132	21.3
진안	160	3.6	162	3.0	163	3.1	485	9.1
무주	137	3.1	204	3.8	188	3.5	529	10.0
장수	125	2.8	164	3.1	159	3.0	448	8.4
임실	170	3.8	171	3.2	178	3.4	519	9.8
순창	115	2.6	149	2.8	169	3.2	433	8.2
고창	184	4.1	226	4.2	226	4.3	636	12.0
부안	211	4.7	284	5.3	252	4.7	747	14.1
합계	4,454	100.0	5,332	100.0	5,308	100.0	15,094	100.0

〈표 3-37〉 시군 별 원도급 공사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지역	2018		2019		2020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주	23,870	33.4	17,477	29.9	12,945	19.4	54,292	27.6
군산	8,416	11.8	9,711	16.6	15,080	22.6	33,207	16.9
익산	6,595	9.2	6,462	11.1	9,210	13.8	22,267	11.3
정읍	2,989	4.2	2,968	5.1	3,860	5.8	9,817	5.0
남원	3,301	4.6	2,899	5.0	3,341	5.0	9,541	4.9
김제	9,679	13.5	3,105	5.3	4,179	6.3	16,962	8.6
완주	4,982	7.0	5,935	10.2	6,460	9.7	17,377	8.8
진안	1,397	2.0	763	1.3	1,109	1.7	3,269	1.7
무주	990	1.4	1,466	2.5	1,440	2.2	3,895	2.0
장수	558	0.8	853	1.5	724	1.1	2,135	1.1
임실	945	1.3	1,240	2.1	1,106	1.7	3,290	1.7
순창	755	1.1	992	1.7	1,682	2.5	3,429	1.7
고창	1,674	2.3	1,492	2.6	2,494	3.7	5,659	2.9
부안	5,414	7.6	3,007	5.2	2,956	4.4	11,377	5.8
합계	71,563	100	58,369	100	66,585	100	196,517	100.0

4) 본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

-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내 업체가 원도급 공사 건수의 27.4%, 공사 금액의 20.0%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군산시가 공사 건수의 9.7%를, 공사 금액의 5.3%를, 익산시가 공사 건수의 7.6%, 공사 금액의 4.8%를 나타내 1순위 전주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원도급 계약 건수의 비중은 무주군 1.6%, 진안군 1.5%, 장수군 1.4%, 순창군 1.0%로 1%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계약금액의 비중은 무주군 0.7%, 진안군 0.7%, 장수군 0.5%, 1% 미만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동부권 지역의 공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표 3-38〉 본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건수 현황

(단위 : 건, %)

지역	2018		2019		2020		합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주	1,263	28.4	1,453	27.3	1,413	26.6	4,129	27.4
군산	382	8.6	552	10.4	531	10.0	1,465	9.7
익산	340	7.6	381	7.1	423	8.0	1,144	7.6
정읍	183	4.1	243	4.6	320	6.0	746	4.9
남원	228	5.1	320	6.0	316	6.0	864	5.7
김제	156	3.5	190	3.6	220	4.1	566	3.7
완주	223	5.0	323	6.1	339	6.4	885	5.9
진안	53	1.2	76	1.4	96	1.8	225	1.5
무주	41	0.9	102	1.9	100	1.9	243	1.6
장수	56	1.3	83	1.6	73	1.4	212	1.4
임실	70	1.6	121	2.3	124	2.3	315	2.1
순창	41	0.9	58	1.1	56	1.1	155	1.0
고창	136	3.1	148	2.8	179	3.4	463	3.1
부안	55	1.2	77	1.4	93	1.8	225	1.5
도내소계	3,227	72.5	4,127	77.4	4,283	80.7	11,637	77.1
도외	1,227	27.5	1,205	22.6	1,025	19.3	3,457	22.9
합계	4,454	100.0	5,332	100.0	5,308	100.0	15,094	100.0

〈표 3-39〉 본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지역	2018		2019		2020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주	11,142	15.6	13,955	23.9	14,157	21.3	39,253	20.0
군산	2,711	3.8	3,528	6.0	4,114	6.2	10,354	5.3
익산	2,883	4.0	2,418	4.1	4,216	6.3	9,517	4.8
정읍	1,074	1.5	1,177	2.0	1,618	2.4	3,869	2.0
남원	930	1.3	1,793	3.1	1,312	2.0	4,035	2.1
김제	968	1.4	928	1.6	1,240	1.9	3,136	1.6
완주	1,458	2.0	2,294	3.9	2,286	3.4	6,038	3.1
진안	399	0.6	471	0.8	413	0.6	1,283	0.7
무주	353	0.5	422	0.7	666	1.0	1,441	0.7
장수	306	0.4	433	0.7	335	0.5	1,074	0.5
임실	383	0.5	675	1.2	779	1.2	1,838	0.9
순창	298	0.4	439	0.8	519	0.8	1,256	0.6
고창	685	1.0	739	1.3	1,291	1.9	2,716	1.4
부안	428	0.6	431	0.7	524	0.8	1,383	0.7
도내소계	24,019	33.6	29,704	50.9	33,471	50.3	87,194	44.4
도외	47,544	66.4	28,665	49.1	33,115	49.7	109,323	55.6
합계	71,563	100.0	58,369	100.0	66,585	100.0	196,517	100.0

5)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

- 본사소재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건수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군산시 44.6%, 익산시 39.5%, 장수군 34.0%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사 금액으로는 군산 39.1%, 전주 36.4%, 익산 35.1% 순위를 보임
 - 군산시는 공사건수와 공사금액 기준에서 각각 44.6%와 39.1%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내 업체가 당해 지역 공사를 수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익산시는 공사건수 기준으로는 2순위는 39.5%,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3순위 35.1%를 차지하고 있어 군산시 다음으로 지역내 공사를 지역내 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이 높음
 - 공사건수에서 본사소재지에서의 공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완주군으로 20.0%를 보이고, 공사금액에서는 순창군으로서 8.6%임

〈표 3-40〉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건수 현황

(단위 : 건)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전주	1,267	352	406	197	278	288	369	140	124	113	139	118	142	196	4,129
군산	153	654	119	89	58	83	67	33	28	21	36	26	38	60	1,465
익산	132	95	452	70	64	62	49	21	28	31	33	27	35	45	1,144
정읍	101	65	41	246	37	46	34	20	19	20	25	12	33	47	746
남원	116	53	73	44	260	46	56	25	29	33	34	36	26	33	864
김제	84	39	36	34	31	160	26	26	15	24	16	11	16	48	566
완주	158	67	85	51	69	46	177	38	34	29	32	19	37	43	885
진안	41	11	11	11	19	11	9	60	8	7	11	5	11	10	225
무주	29	21	15	14	4	9	14	10	72	12	12	10	9	12	243
장수	16	9	14	9	11	15	12	20	6	72	5	8	10	5	212
임실	56	19	19	15	25	13	18	10	10	10	85	9	14	12	315
순창	23	12	11	7	8	10	9	8	2	1	7	44	5	8	155
고창	73	37	37	36	21	14	25	10	12	19	20	21	115	23	463
부안	22	18	15	14	17	11	14	10	7	3	6	13	6	69	225
도외	139	603	197	189	135	136	74	253	536	58	53	769	261	54	3,457
합계	636	2,055	1,011	1,091	529	747	433	1,132	1,870	519	448	3,040	1,098	485	15,094

〈표 3-41〉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건수 비중 현황

(단위 : %)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전주	30.7	8.5	9.8	4.8	6.7	7.0	8.9	3.4	3.0	2.7	3.4	2.9	3.4	4.7	100
군산	10.4	44.6	8.1	6.1	4.0	5.7	4.6	2.3	1.9	1.4	2.5	1.8	2.6	4.1	100
익산	11.5	8.3	39.5	6.1	5.6	5.4	4.3	1.8	2.4	2.7	2.9	2.4	3.1	3.9	100
정읍	13.5	8.7	5.5	33.0	5.0	6.2	4.6	2.7	2.5	2.7	3.4	1.6	4.4	6.3	100
남원	13.4	6.1	8.4	5.1	30.1	5.3	6.5	2.9	3.4	3.8	3.9	4.2	3.0	3.8	100
김제	14.8	6.9	6.4	6.0	5.5	28.3	4.6	4.6	2.7	4.2	2.8	1.9	2.8	8.5	100
완주	17.9	7.6	9.6	5.8	7.8	5.2	20.0	4.3	3.8	3.3	3.6	2.1	4.2	4.9	100
진안	18.2	4.9	4.9	4.9	8.4	4.9	4.0	26.7	3.6	3.1	4.9	2.2	4.9	4.4	100
무주	11.9	8.6	6.2	5.8	1.6	3.7	5.8	4.1	29.6	4.9	4.9	4.1	3.7	4.9	100
장수	7.5	4.2	6.6	4.2	5.2	7.1	5.7	9.4	2.8	34.0	2.4	3.8	4.7	2.4	100
임실	17.8	6.0	6.0	4.8	7.9	4.1	5.7	3.2	3.2	3.2	27.0	2.9	4.4	3.8	100
순창	14.8	7.7	7.1	4.5	5.2	6.5	5.8	5.2	1.3	0.6	4.5	28.4	3.2	5.2	100
고창	15.8	8.0	8.0	7.8	4.5	3.0	5.4	2.2	2.6	4.1	4.3	4.5	24.8	5.0	100
부안	9.8	8.0	6.7	6.2	7.6	4.9	6.2	4.4	3.1	1.3	2.7	5.8	2.7	30.7	100
도외	22.2	17.4	15.5	7.5	5.5	5.7	7.3	1.6	3.9	1.5	1.7	2.1	4.0	3.9	100
합계	20.1	13.6	12.4	7.3	7.2	6.7	7.5	3.2	3.5	3.0	3.4	2.9	4.2	4.9	100

〈표 3-42〉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금액 현황

(단위 : 억 원)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합계
전주	14,291	2,793	4,389	1,658	2,277	3,138	3,129	975	863	754	1,142	764	1,408	1,673	39,253
군산	1,333	4,052	1,208	403	594	551	425	288	165	123	327	180	383	323	10,354
익산	786	433	3,338	1,574	1,100	611	372	78	146	116	190	153	307	314	9,517
정읍	602	457	191	962	202	287	205	59	108	73	207	53	176	288	3,869
남원	657	399	309	129	764	200	645	80	84	87	161	199	178	143	4,035
김제	478	373	110	164	108	957	225	164	79	58	98	95	59	166	3,136
완주	1,471	450	519	280	424	416	822	282	206	101	154	97	427	390	6,038
진안	280	54	69	80	175	49	44	126	95	24	110	52	51	74	1,283
무주	247	223	45	47	100	28	85	100	160	63	65	36	79	163	1,441
장수	178	49	66	79	51	109	58	96	20	268	25	38	24	13	1,074
임실	409	136	156	84	159	59	205	32	59	33	223	121	91	70	1,838
순창	328	205	110	100	161	26	49	76	13	1	55	108	10	15	1,256
고창	558	198	278	242	140	77	100	39	55	87	183	118	533	108	2,716
부안	175	78	171	89	73	55	106	36	79	18	19	182	83	219	1,383
도외	32,499	23,306	11,307	3,926	3,215	10,401	10,908	839	1,762	330	333	1,234	1,851	7,415	109,323
합계	54,292	33,207	22,267	9,817	9,541	16,962	17,380	3,269	3,895	2,135	3,290	3,429	5,659	11,374	196,517

〈표 3-43〉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원도급 공사금액 비중 현황

(단위 :%)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전주	36.4	7.1	11.2	4.2	5.8	8.0	8.0	2.5	2.2	1.9	2.9	1.9	3.6	4.3	100
군산	12.9	39.1	11.7	3.9	5.7	5.3	4.1	2.8	1.6	1.2	3.2	1.7	3.7	3.1	100
익산	8.3	4.6	35.1	16.5	11.6	6.4	3.9	0.8	1.5	1.2	2.0	1.6	3.2	3.3	100
정읍	15.6	11.8	4.9	24.9	5.2	7.4	5.3	1.5	2.8	1.9	5.3	1.4	4.5	7.4	100
남원	16.3	9.9	7.7	3.2	18.9	5.0	16.0	2.0	2.1	2.1	4.0	4.9	4.4	3.5	100
김제	15.3	11.9	3.5	5.2	3.4	30.5	7.2	5.2	2.5	1.9	3.1	3.0	1.9	5.3	100
완주	24.4	7.5	8.6	4.6	7.0	6.9	13.6	4.7	3.4	1.7	2.5	1.6	7.1	6.5	100
진안	21.8	4.2	5.4	6.2	13.6	3.8	3.4	9.8	7.4	1.8	8.6	4.1	4.0	5.8	100
무주	17.1	15.5	3.1	3.3	6.9	1.9	5.9	7.0	11.1	4.4	4.5	2.5	5.5	11.3	100
장수	16.6	4.5	6.2	7.4	4.7	10.2	5.4	8.9	1.9	25.0	2.4	3.5	2.2	1.2	100
임실	22.3	7.4	8.5	4.6	8.7	3.2	11.2	1.7	3.2	1.8	12.1	6.6	5.0	3.8	100
순창	26.1	16.3	8.8	7.9	12.8	2.0	3.9	6.1	1.0	0.1	4.3	8.6	0.8	1.2	100
고창	20.5	7.3	10.2	8.9	5.2	2.8	3.7	1.4	2.0	3.2	6.7	4.4	19.6	4.0	100
부안	12.7	5.7	12.4	6.4	5.3	4.0	7.7	2.6	5.7	1.3	1.4	13.2	6.0	15.8	100
도외	29.7	21.3	10.3	3.6	2.9	9.5	10.0	0.8	1.6	0.3	0.3	1.1	1.7	6.8	100
합계	27.6	16.9	11.3	5.0	4.9	8.6	8.8	1.7	2.0	1.1	1.7	1.7	2.9	5.8	100

나. 하도급 공사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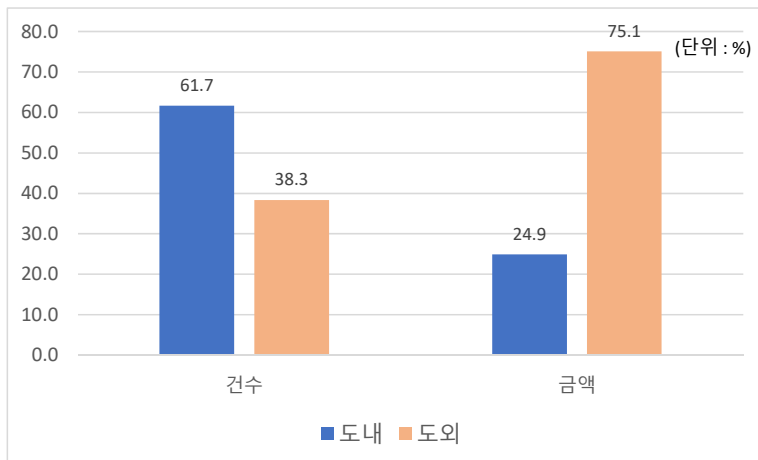
1)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현황(2018년 ~ 2020년)

- 도내 하도급 공사의 계약 건수는 도내 업체가 6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약금액 비중은 24.9%에 불과함
 -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 12,957건 중 도내 업체가 수주하는 공사 건수는 7,993건으로 6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금액 2,559,966억 원 중 도내 업체가 차지하는 금액은 647,442억 원으로 전체의 24.9%에 불과하여 건설공사 건수 당 단가가 낮은 하도급 공사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44〉 하도급 공사 현황

(단위 : 건, 억 원, %)

년도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도내	7,993	61.7	647,442	24.9
도외	4,964	38.3	1,952,524	75.1
합계	12,957	100.0	2,599,966	100.0



〈그림 3-30〉 공사 하도급 현황

17)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2020년 전북지역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 12,957건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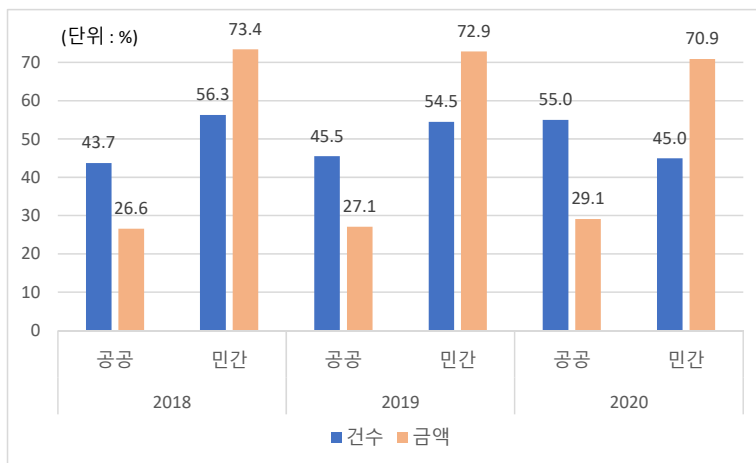
2) 발주자별 하도급 공사

- 2020년 기준 도내 하도급 공사는 계약건수의 비중은 공공공사(55.0%)가 높으나, 계약금액의 비중은 민간공사(70.9%)가 높게 나타남
- 민간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 건수는 2018년 56.3%에서 2020년 45.0%로 비율이 하락하였으나 공사 계약금액 비율은 73.4%에서 65.7%로 하락함
-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건당 단가가 높은 하도급 민간 공사를 도내에 많이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45〉 발주자별 하도급 공사 현황

(단위 : 건, %)

년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18	공공	1,926	43.7	240,314	26.6
	민간	2,486	56.3	662,535	73.4
	합계	4,412	100.0	902,849	100.0
2019	공공	2,017	45.5	250,579	27.1
	민간	2,414	54.5	674,128	72.9
	합계	4,431	100.0	924,707	100.0
2020	공공	2,264	55.0	264,609	29.1
	민간	1,850	45.0	507,801	65.7
	합계	4,114	100.0	772,410	100.0
합계	공공	6,207	47.9	755,502	29.1
	민간	6,750	52.1	1,844,464	70.9
	합계	12,957	100.0	2,599,966	100.0



〈그림 3-31〉 발주자별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 비중

3) 공종별 하도급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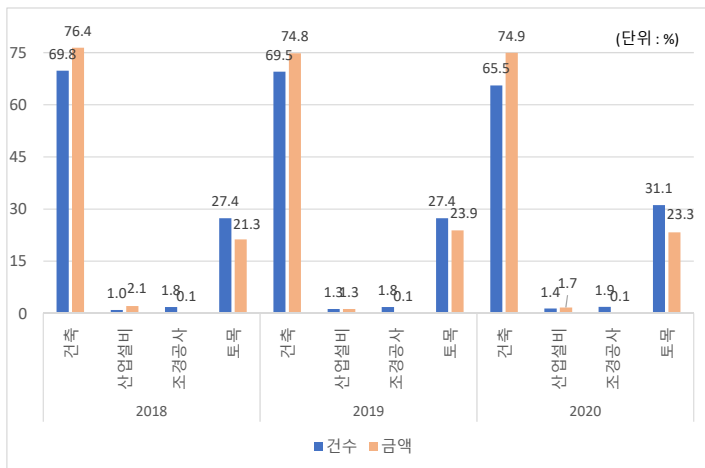
○ 도내 하도급 공사는 건축공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건축공종의 계약 건수 비중은 65.9%, 계약 금액 비중은 74.9%로 건축공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6〉 공종별 하도급 공사 현황

(단위 : 건, 억 원, %)

년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2018	건축	3,078	69.8	689,952	76.4
	산업설비	46	1.0	19,179	2.1
	조경공사	78	1.8	1,337	0.1
	토목	1,210	27.4	192,381	21.3
	합계	4,412	100.0	902,849	100.0
2019	건축	3,080	69.5	691,361	74.8
	산업설비	58	1.3	11,881	1.3
	조경공사	78	1.8	869	0.1
	토목	1,215	27.4	220,596	23.9
	합계	4,431	100.0	924,707	100.0
2020	건축	2,695	65.5	565,196	73.2
	산업설비	59	1.4	13,607	1.8
	조경공사	80	1.9	1,213	0.2
	토목	1,280	31.1	192,393	24.9
	합계	4,114	100.0	772,410	100.0
2021	건축	8,853	68.3	1,946,509	74.9
	산업설비	163	1.3	44,667	1.7
	조경공사	236	1.8	3,420	0.1
	토목	3,705	28.6	605,370	23.3
	합계	12,957	100.0	2,599,966	100.0



〈그림 3-32〉 공종별 하도급 공사 현황

4) 시군별 하도급 공사¹⁸⁾

- 하도급 공사는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전주시에 집중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공사건수 기준 전주시의 비중은 29.6%인 반면 공사금액 기준 비중은 51.5%에 이르고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건당 단가가 높은 하도급 공사로 볼 수 있음

〈표 3-47〉 시군별 하도급 공사건수 현황 (단위 : 건, %)

지역	2018		2019		2020		합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주	1,394	31.6	1,394	31.5	1,051	25.5	3,839	29.6
군산	543	12.3	456	10.3	544	13.2	1,543	11.9
익산	515	11.7	460	10.4	494	12.0	1,469	11.3
정읍	247	5.6	272	6.1	256	6.2	775	6.0
남원	211	4.8	247	5.6	268	6.5	726	5.6
김제	241	5.5	225	5.1	248	6.0	714	5.5
완주	335	7.6	430	9.7	348	8.5	1,113	8.6
진안	88	2.0	126	2.8	98	2.4	312	2.4
무주	82	1.9	115	2.6	97	2.4	294	2.3
장수	84	1.9	74	1.7	92	2.2	250	1.9
임실	140	3.2	91	2.1	127	3.1	358	2.8
순창	108	2.4	109	2.5	132	3.2	349	2.7
고창	198	4.5	206	4.6	176	4.3	580	4.5
부안	226	5.1	226	5.1	183	4.4	635	4.9
합계	4,412	100.0	4,431	100.0	4,114	100.0	12,957	100.0

〈표 3-48〉 시군별 하도급 공사금액 현황 (단위 : 억 원, %)

지역	2018		2019		2020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주	439,358	48.7	522,936	56.6	377,969	48.9	1,340,263	51.5
군산	152,591	16.9	114,967	12.4	126,766	16.4	394,323	15.2
익산	93,380	10.3	71,963	7.8	60,364	7.8	225,706	8.7
정읍	29,511	3.3	25,483	2.8	23,771	3.1	78,765	3.0
남원	30,043	3.3	17,916	1.9	13,846	1.8	61,805	2.4
김제	49,465	5.5	51,458	5.6	37,823	4.9	138,746	5.3
완주	42,963	4.8	48,678	5.3	76,232	9.9	167,873	6.5
진안	4,254	0.5	6,868	0.7	5,265	0.7	16,388	0.6
무주	1,773	0.2	3,549	0.4	3,415	0.4	8,737	0.3
장수	1,430	0.2	1,310	0.1	2,340	0.3	5,080	0.2
임실	4,949	0.5	1,559	0.2	2,438	0.3	8,946	0.3
순창	6,913	0.8	3,764	0.4	5,266	0.7	15,944	0.6
고창	9,242	1.0	8,615	0.9	6,925	0.9	24,782	1.0
부안	36,976	4.1	45,643	4.9	29,989	3.9	112,608	4.3
합계	902,849	100.0	924,707	100.0	772,410	100.0	2,599,966	100.0

18)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을 의미

5)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 현황

- 많은 공사가 시행되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시지역에서 전북도내 다른 시군의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부안, 고창에서는 본사소재지와 공사현장이 일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49〉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건수 현황 (단위 : 건)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합계
전주	1,379	252	336	137	110	197	317	76	58	48	123	76	91	80	3,280
군산	93	368	64	44	19	35	31	8	4	4	7	9	13	30	729
익산	202	62	212	47	18	53	58	9	10	14	22	9	18	26	760
정읍	70	20	24	133	33	20	22	8	5	12	11	9	14	18	399
남원	54	24	9	15	220	19	16	7	17	15	17	13	11	21	458
김제	176	49	58	13	24	71	57	9	6	3	15	17	16	13	527
완주	219	57	75	34	31	33	135	33	10	14	31	26	20	34	752
진안	25	8	8	2	14	3	19	51	2	8	-	4	3	5	152
무주	16	10	5	7	1	2	7	3	47	3	6	3	8	1	119
장수	23	3	5	6	9	7	4	6	3	56	1	7	7	3	140
임실	29	15	8	3	25	5	19	5	4	4	38	13	6	9	183
순창	4	2	1	6	1	1	5	1	4	-	-	35	8	1	69
고창	5	8	3	4	6	7	8	6	3	3	1	2	139	16	211
부안	8	7	7	6	5	6	9	3	1	4	7	4	5	142	214
도외	1,536	658	654	318	210	255	406	87	120	62	79	122	221	236	4,964
합계	3,839	1,543	1,469	775	726	714	1,113	312	294	250	358	349	580	635	12,957

〈표 3-50〉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건수 비중 현황 (단위 : %)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전주	42.0	7.7	10.2	4.2	3.4	6.0	9.7	2.3	1.8	1.5	3.8	2.3	2.8	2.4	100
군산	12.8	50.5	8.8	6.0	2.6	4.8	4.3	1.1	0.5	0.5	1.0	1.2	1.8	4.1	100
익산	26.6	8.2	27.9	6.2	2.4	7.0	7.6	1.2	1.3	1.8	2.9	1.2	2.4	3.4	100
정읍	17.5	5.0	6.0	33.3	8.3	5.0	5.5	2.0	1.3	3.0	2.8	2.3	3.5	4.5	100
남원	11.8	5.2	2.0	3.3	48.0	4.1	3.5	1.5	3.7	3.3	3.7	2.8	2.4	4.6	100
김제	33.4	9.3	11.0	2.5	4.6	13.5	10.8	1.7	1.1	0.6	2.8	3.2	3.0	2.5	100
완주	29.1	7.6	10.0	4.5	4.1	4.4	18.0	4.4	1.3	1.9	4.1	3.5	2.7	4.5	100
진안	16.4	5.3	5.3	1.3	9.2	2.0	12.5	33.6	1.3	5.3	-	2.6	2.0	3.3	100
무주	13.4	8.4	4.2	5.9	0.8	1.7	5.9	2.5	39.5	2.5	5.0	2.5	6.7	0.8	100
장수	16.4	2.1	3.6	4.3	6.4	5.0	2.9	4.3	2.1	40.0	0.7	5.0	5.0	2.1	100
임실	15.8	8.2	4.4	1.6	13.7	2.7	10.4	2.7	2.2	2.2	20.8	7.1	3.3	4.9	100
순창	5.8	2.9	1.4	8.7	1.4	1.4	7.2	1.4	5.8	-	-	50.7	11.6	1.4	100
고창	2.4	3.8	1.4	1.9	2.8	3.3	3.8	2.8	1.4	1.4	0.5	0.9	65.9	7.6	100
부안	3.7	3.3	3.3	2.8	2.3	2.8	4.2	1.4	0.5	1.9	3.3	1.9	2.3	66.4	100
도외	30.9	13.3	13.2	6.4	4.2	5.1	8.2	1.8	2.4	1.2	1.6	2.5	4.5	4.8	100
합계	29.6	11.9	11.3	6.0	5.6	5.5	8.6	2.4	2.3	1.9	2.8	2.7	4.5	4.9	100

〈표 3-51〉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금액 현황

(단위 : 십억 원)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전주	15,548	3,705	3,226	801	475	2,849	2,581	280	156	98	380	206	360	705	1,015
군산	1,007	4,770	663	275	189	648	186	25	9	8	8	45	55	651	8,523
익산	2,784	741	2,029	407	114	628	373	9	34	29	55	31	76	320	4,035
정읍	521	85	191	337	143	71	39	5	13	17	14	12	23	72	1,237
남원	165	75	27	31	648	93	29	15	20	23	15	22	11	63	684
김제	1,687	451	382	21	116	746	399	20	13	3	40	33	93	33	1,847
완주	1,239	265	662	162	184	223	1,218	115	15	27	89	169	51	174	422
진안	97	20	15	3	60	2	205	100	8	6	-	15	6	10	4,593
무주	175	35	74	27	26	4	114	39	127	4	26	6	18	12	7,628
장수	80	13	4	37	12	18	4	14	1	119	1	87	9	22	862
임실	119	71	12	2	297	23	78	7	3	6	75	13	6	152	421
순창	23	26	0	32	5	1	113	5	4	-	-	62	150	0	31,369
고창	145	71	23	17	10	36	11	21	5	18	2	1	519	137	1,542
부안	17	12	116	12	13	108	49	2	1	5	7	4	43	1,459	549
도외	110,420	29,091	15,149	5,713	3,890	8,425	11,389	983	467	143	186	888	1,056	7,451	195,270
합계	134,026	39,432	22,571	7,877	6,180	13,875	16,787	1,639	874	508	895	1,594	2,478	11,261	259,997

〈표 3-52〉 본사소재지별 공사소재지별 하도급 공사금액 비중 현황

(단위 : %)

공사 본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전주	49.6	11.8	10.3	2.6	1.5	9.1	8.2	0.9	0.5	0.3	1.2	0.7	1.1	2.2	100
군산	11.8	55.9	7.8	3.2	2.2	7.6	2.2	0.3	0.1	0.1	0.1	0.5	0.6	7.6	100
익산	36.5	9.7	26.6	5.3	1.5	8.2	4.9	0.1	0.4	0.4	0.7	0.4	1.0	4.2	100
정읍	33.8	5.5	12.4	21.9	9.3	4.6	2.5	0.3	0.8	1.1	0.9	0.8	1.5	4.7	100
남원	13.4	6.0	2.2	2.5	52.4	7.5	2.3	1.2	1.6	1.9	1.2	1.8	0.9	5.1	100
김제	41.8	11.2	9.5	0.5	2.9	18.5	9.9	0.5	0.3	0.1	1.0	0.8	2.3	0.8	100
완주	27.0	5.8	14.4	3.5	4.0	4.9	26.5	2.5	0.3	0.6	1.9	3.7	1.1	3.8	100
진안	17.7	3.7	2.7	0.6	11.0	0.3	37.3	18.3	1.5	1.1	-	2.8	1.0	1.9	100
무주	25.5	5.1	10.7	3.9	3.8	0.6	16.7	5.7	18.5	0.5	3.7	0.9	2.6	1.8	100
장수	19.1	3.2	0.9	8.8	2.8	4.3	0.9	3.3	0.2	28.3	0.2	20.7	2.2	5.2	100
임실	13.9	8.2	1.3	0.2	34.4	2.7	9.0	0.8	0.3	0.7	8.7	1.5	0.7	17.6	100
순창	5.4	6.1	0.1	7.6	1.1	0.3	26.8	1.2	0.9	-	-	14.8	35.6	0.1	100
고창	14.3	7.0	2.3	1.6	1.0	3.5	1.1	2.1	0.5	1.8	0.1	0.1	51.1	13.5	100
부안	0.9	0.7	6.3	0.6	0.7	5.8	2.7	0.1	0.0	0.3	0.4	0.2	2.3	79.0	100
도외	56.6	14.9	7.8	2.9	2.0	4.3	5.8	0.5	0.2	0.1	0.1	0.5	0.5	3.8	100
합계	51.5	15.2	8.7	3.0	2.4	5.3	6.5	0.6	0.3	0.2	0.3	0.6	1.0	4.3	100

다. 역내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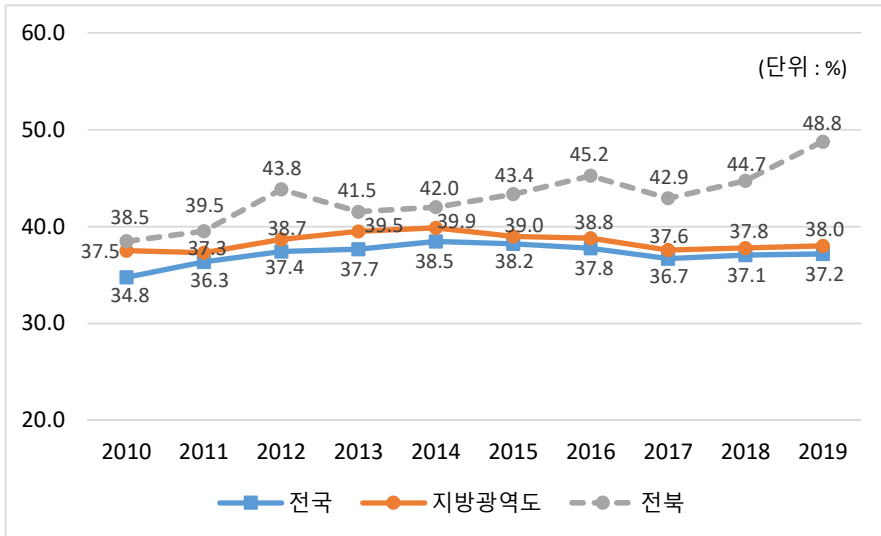
1) 역내공사의 역내업체 수주 비중

- 전북지역 내 발주공사를 전북도내 건설업체의 수주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음
 - 각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를 당해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을 보면, 전북은 2019년 기준으로 48.8%로서 전국 평균 37.2%와 지방광역도 평균 38.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북의 역내에서 발주한 공사를 전북 업체가 공사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전국 및 지방광역도 평균 비율은 지난 9년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북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53〉 역내발주 공사의 역내업체 수주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69.4	71.2	71.0	72.4	73.5	70.9	75.0	77.4	75.9	71.7
부산	32.2	39.0	43.0	43.3	42.6	44.1	45.6	40.9	39.1	41.0
대구	31.3	35.8	35.4	31.7	35.1	36.5	35.2	37.6	35.3	31.6
인천	18.9	21.6	22.5	20.1	20.5	23.3	23.2	21.7	23.6	25.1
광주	24.3	32.9	30.3	28.9	30.8	36.9	30.2	29.7	33.1	31.8
대전	32.0	34.1	39.0	39.7	41.6	34.1	35.6	36.4	36.3	37.9
울산	18.1	20.2	18.0	21.0	23.5	26.1	22.7	16.1	18.8	22.6
세종	-	-	2.4	4.3	8.7	7.1	7.7	10.4	7.6	9.5
경기	30.0	28.3	30.1	29.7	28.8	27.8	26.3	26.4	28.6	29.3
강원	35.8	35.2	31.4	30.3	26.3	28.6	31.4	32.6	32.9	32.0
충북	31.7	33.6	36.0	39.8	40.7	37.8	33.5	28.6	29.6	35.8
충남	21.7	21.2	20.4	20.0	20.8	19.1	21.2	21.2	22.9	26.2
전북	38.5	39.5	43.8	41.5	42.0	43.4	45.2	42.9	44.7	48.8
전남	33.3	31.5	37.3	40.6	49.3	49.8	50.7	51.0	47.6	42.1
경북	44.9	43.0	45.7	49.0	43.7	40.1	35.4	36.5	38.6	39.4
경남	36.2	38.9	41.3	40.1	41.5	36.9	33.7	32.0	32.4	33.3
제주	58.1	55.4	53.6	54.6	54.8	56.2	59.3	56.0	53.6	46.6
전국	34.8	36.3	37.4	37.7	38.5	38.2	37.8	36.7	37.1	37.2
지방광역도	37.5	37.3	38.7	39.5	39.9	39.0	38.8	37.6	37.8	38.0

자료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종합건설업조사 본사소재지별 공사지역별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각 년도



〈그림 3-33〉 지역별 역내발주 공사 역내업체 수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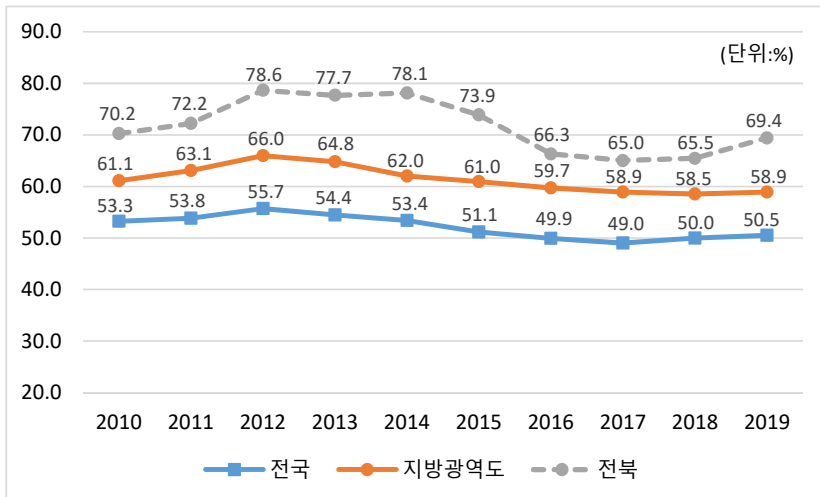
2) 역내업체의 역내공사 수주 비중

- 전북지역 건설업체는 도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북도내 건설업체가 수행한 건설공사 중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성실적의 비율이 69.4%로서 전국 평균인 50.5%와 지방광역시도 평균인 58.9%보다 각각 18.9%p, 10.5%p 높게 나타남
 - 이는 전국 평균이나 지방광역시도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북 건설업체가 타지역보다는 전북지역 내에서 발주된 공사를 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지역 내의 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전국이나 지방광역시도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북은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북건설업체의 타 지역의 공사참여가 일정부분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표 3-54〉 지역별 역내업체 건설공사 중 지역내 공사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18.3	19.1	17.7	20.0	21.5	21.7	21.6	21.2	22.3	22.3
부산	48.4	52.2	55.0	53.1	53.5	46.3	45.4	45.7	53.0	56.6
대구	62.8	66.6	61.4	59.6	62.3	60.4	55.8	48.1	44.4	48.8
인천	25.6	32.0	32.2	25.7	23.2	23.2	27.7	29.6	29.8	33.1
광주	41.7	34.9	39.1	32.7	34.9	27.8	19.8	19.3	33.7	27.0
대전	42.1	41.6	44.0	41.0	33.0	26.3	26.9	26.1	23.9	28.8
울산	75.7	66.9	68.9	75.8	79.9	77.7	75.8	72.8	72.4	69.8
세종	-	-	8.2	12.7	28.5	26.2	29.0	42.6	36.7	41.3
경기	48.7	43.5	45.0	44.7	49.5	46.9	47.7	49.7	51.6	50.6
강원	72.1	71.0	74.7	73.9	73.0	68.1	69.8	73.6	75.8	74.0
충북	72.9	73.5	74.8	77.6	72.5	69.1	69.1	66.8	70.6	72.1
충남	45.1	49.0	49.9	49.3	45.7	52.0	54.2	55.9	54.3	53.8
전북	70.2	72.2	78.6	77.7	78.1	73.9	66.3	65.0	65.5	69.4
전남	37.9	45.5	49.4	46.3	37.5	34.5	31.3	29.1	28.1	34.1
경북	44.2	42.3	49.1	42.6	45.2	43.3	38.8	37.9	34.0	29.9
경남	59.2	63.8	63.2	60.8	58.9	57.8	61.3	58.6	59.7	55.5
제주	87.3	87.1	87.8	90.4	85.3	89.0	87.0	84.5	80.2	82.5
전국	53.3	53.8	55.7	54.4	53.4	51.1	49.9	49.0	50.0	50.5
지방광역도	61.1	63.1	66.0	64.8	62.0	61.0	59.7	58.9	58.5	58.9

자료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종합건설업조사 본사소재지역별 공사지역별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각 년도



〈그림 3-34〉 지역별 역내업체 건설공사 중 지역내 공사 비율(%)

4

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Jeonbuk Institute

-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별 정책방안

제4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1) 전북 건설산업 및 건설사업자 현황

- 전라북도 내의 건설공사는 민간발주 공사에 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수주액으로 살펴본 전북의 공공발주 비율은 전체 공사의 40.1%로서 전국 평균 2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발주의 경우에는 전국은 71.7%에 달하는 반면 전북은 58.2%에 그치고 있음



〈그림 4-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 전북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낮은 순위의 그룹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어서 대외적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북의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00위 이내인 업체는 전무하고, 2,500위 ~ 3,000위인 업체들이 가장 많은 분포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2) 타 지자체 정책 사례 시사점

- 당해 지역의 건설업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내 숙련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행정에서 지역건설산업 건전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지원시책을 진행하고 있음
 - 강원에서는 불법 또는 부실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계약과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함
 - 경남에서는 대기업 본사 방문 등 민관이 합동으로 세일즈를 진행하고 건설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수주지원 활동을 추진함
- 지역의 건설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보호하는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경북에서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활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우수한 기술을 보호 및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지역건설산업 관련 기관들이 모여 산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경남에서는 건설대기업, 발주기관, 지역건설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함
- 건설행정 부서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심과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여건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건설공사 인허가를 위한 협의나 공사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3) 전문가 자문

- 행정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활동이 필요한
 - 타지역 정책사례에서처럼 건설공사의 인허가 협의나 공사현장의 점검 등의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요청, 유도, 독려되어야 함
- 지역의 건설공사가 공공발주 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발주 공사에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공사물량을 확대하여야 함
 - 전국의 건설공사 실적에서 공공발주 공사의 비율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업체가 지역 내 건설공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 및 제도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의 여건과 현황, 다른 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공공행정 지원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함
-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는 전북 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공사실적을 증가시킴으로써 건설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많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전략임
 - 전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나 인지도 등 전반적인 경쟁력은 전국 건설업체에 비해 낮다는 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지역 내에 공공부문의 선제적 재정투자자와 민간공사의 지원을 통해 공사물량을 확대하고 전북 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공사실적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북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공공행정 지원 강화' 전략은 전북도 행정기관이 건설업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절차에서 지역건설업체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편의를 지원하도록 함
 - 지역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건설공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략임
 -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전국단위의 대형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지역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지역 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은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과 건설산업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임
 - 지역건설업체의 지역건설공사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건설산업 지원조례 등에 담기도록 함
 - 건설관련 지자체, 협회 등의 기관이 협력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업체를 운영하는 방안임

전략	과제	방안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공사물량 확대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민간공사 확대 유도 및 지원
	경쟁력 제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중소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역건설 활성화 우수업체 포상
공공행정 지원 강화	지역업체 우대	지역건설업체 참여 건설공사 인센티브 제공 사업승인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단축 지역특화사업 지역건설업체 우대 지역 발주 공사 참여 제한
	행정 지원 및 관리감독	지역 우수 건설업체 홍보 및 민관 합동세일즈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및 퇴출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제도 정비개선	지역건설산업 확대 및 지역업체 소재지 기간 제한 분리·분할발주 범위 명확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홍보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련 조례 제정
	거버넌스 구축	건설관련 유관부서 협업 도내 건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림 4-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종합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별 정책방안

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전략

1)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가)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의 건설산업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 건설공사 수주액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공공발주 건설공사 비율이 24.4%이지만 전북은 40.1%로서 전국 평균 대비 15.7%p 높은 공공발주 비중을 나타냄
- 전북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도로의 개설 및 정비,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 관련 공공사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 2021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사업이 73건으로 총사업비는 1조 8,010억 원에 달함
 -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개량 공사, 지방하천 정비, 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공공주택 건설, 도서관 및 체육관 건립 등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
- 기반시설 설치와 주민이용시설의 설치 등 공공시설 설치에 선제적 재정투자로 건설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내용

- 국가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공사를 확대함
 -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함
- 전라북도가 자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건설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공사실적 축적의 기회를 제공함
 - 군산, 장수, 임실 등 3곳에서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쇠퇴지역의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을 전북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에는 생활편의와 복지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과소화마을 재구조화 사업 등을 발굴함
 - 일본의 입지정화계획과 같이 과소화마을을 대상으로 콤팩트 빌리지를 조성하는 등 선제적인 공공사업의 대응이 필요함
- 노후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인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함
 - 전북은 도로 우회율은 약 30%이고,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위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많으며,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시설물이 64.7%(박용석 외 2018, 268)에 이르므로 도로 이용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공사를 추진하여야 함

〈표 4-1〉 전라북도 도로시설물 노후 현황

구분		합계	10년 미만	10~14년	15~19년	20~20년	30년 이상	
1종 시설물	소계	47	8	7	24	6	2	
	도로교량	44	8	6	23	5	2	
	도로터널	3	0	1	1	1	0	
2종 시설물	소계	250	48	40	52	76	34	
	도로교량	217	35	32	47	70	33	
	도로터널	33	13	8	5	6	1	
특정 관리 대상	도로 시설	소계	753	6	47	139	343	218
		교량	705	5	45	121	326	208
		터널	11	1	1	6	1	2
		육교	37	-	1	12	16	8
		지하차도	-	-	-	-	-	-
합계		1,050	62	94	215	425	254	
%		100%	5.9%	9.0%	20.5%	40.5%	24.2%	

출처 : 박용석 외, 2018, 176쪽 재인용

2) 민간공사 확대 유도 및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실적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전북의 민간발주 공사의 비율은 58.2%로서 전국 평균의 71.7%에 비해 13.2%p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2019년 건설수주액 기준으로 전국의 민간발주공사(113.2조 원)는 공공발주공사(30.6조 원)의 3.7배에 이르지만 전북은 그 비율이 1.3배(민간발주 1.5조 원, 공공발주 1.1조 원)에 그치고 있음
- 대부분 민간공사로 발주되는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정비사업의 참여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민간발주 건축공종의 건설공사에서 65.6%가 주거용 공사에 해당함(통계청 국내건설수주액 2020년 기준, 주거용 829,898억 원, 비주거용 435,951억 원)
 -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의 공사물량이 많은 만큼 전북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관련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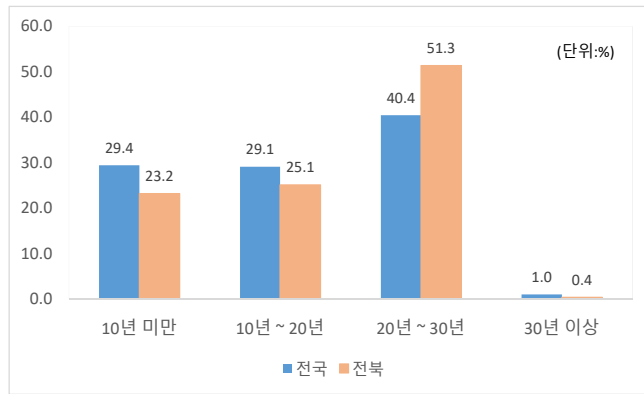
나) 추진 내용

- 전북도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민간공사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명 브랜드를 가진 전국단위 건설업체가 주도하는 지역의 주택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도가 높은 공사에는 행정지원과 함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함
- 주거환경 정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단위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북의 경우에도 노후주택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보다는 소규모로 주택정비사업이 요청되고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발주 공사물량을 확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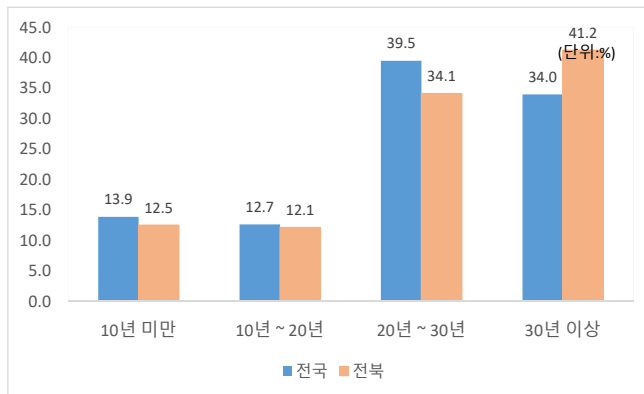
〈표 4-2〉 주택종류별 경과년수별 주택

			10년 미만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공동주택	전국	수	4,119,448	4,075,862	5,657,769	143,249
		비율(%)	29.4	29.1	40.4	1.0
	전북	수	100,348	108,636	221,975	1,601
		비율(%)	23.2	25.1	51.3	0.4
단독주택	전국	수	543,297	495,706	1,548,321	1,330,359
		비율(%)	13.9	12.7	39.5	34.0
	전북	수	35,192	34,173	95,916	115,990
		비율(%)	12.5	12.1	34.1	41.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



〈그림 4-3〉 전라북도 단독주택 경과년수별 주택



〈그림 4-4〉 전라북도 공동주택 경과년수별 주택

3) 지역맞춤형 건설산업 인력양성 교육

가)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청년층이 건설산업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건설노동에 대해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잦은 안전사고, 미흡한 근로자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건설산업에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아 건설인력의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새만금지역의 속도감 있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수면 매립 및 지반안정화 등 특화기술을 보유한 건설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함
 -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지역을 정부주도로 속도감 있는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개발을 기점으로 새만금지역의 수면매립과 지반안정화, 대규모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개발에 적합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새만금개발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더욱 커지게 될 것임
 - 전북의 건설업체가 새만금지역 개발에 필요한 건설기술과 공사노하우를 보유한 건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필요함
- 기존의 교육기관에서는 전반적인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건설산업 관련해서는 한옥건축 관련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임
 -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는 드론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맞춘 현장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환경이 우수한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전북테크노파크는 신기술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수요에 맞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전북대학교 한옥인력양성사업단에서 한옥건축과 친환경 목조건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추진 내용

- 전북도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 관련 학과에 지역특화형 전문 과목을 신설하여 지역맞춤형 우수한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갖추
 - 대학, 새만금개발청, (전문)건설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생들의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학생은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새만금지역개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맞춤형 과목을 설치하고 교육하도록 함
- 건설업체 실무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함
 - 전북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업에서 실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및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설기술호남교육원에서 제공되는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전문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의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비 일부를 지원함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건설기술 첨단화 분야 전문인력 교육을 지원함
 -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에 대응하여 건설기술의 첨단화 및 디지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비 지원을 실시함

4) 중소기업역량강화 지원사업

가)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체는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관련 지원정책은 “대부분 금융 지원, 창업 지원, 기술 개발사업, 일자리 안정 자금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등에 초점”(최은정 2020, 71)을 맞추고 있음
 - “금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최은정 2020, 71)
- 중소기업체의 약점은 우수한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임
 - 중소기업체는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클레인 전문인력, 품질관리 전문인력, 견적관리 전문인력 등 주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취약”(최은정 2020, 75)함

나) 추진 내용

- 지역의 중소기업체의 경영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함
 - 전북의 중소기업체들의 경영능력 및 건설기술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여 경영관련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체의 경쟁력 자원은 인력이므로 우수한 인력자원의 확보와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체의 우수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우수한 인력이 전북의 건설업체를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도내 대학과 함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된 인력이 우수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도록 함
 - 지역건설업체 인력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도입에 따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
- 전북 지역건설업체 우수기술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와 같은 전북 지역건설업체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활용,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업체 포상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여 사기독려의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시행사의 선정은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의 지역활성화 노력을 독려할 수 있음
-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업체로의 선정은 대상 건설업체는 대외적인 홍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음
 - 지역건설업체의 우수업체 선정은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지역건설업체의 건설산업 활성화 노력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음
 -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여 선정된 업체는 대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함

나) 추진 내용

-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인’ 포상을 정례화함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건설산업 관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포상을 실시함
 - 종합적으로 우수한 실적의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공종별 우수업체에 대한 선정과 포상을 시행하여 소규모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함
-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로 선정되는 업체는 건설업무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건설공사에서 행정절차의 통합 및 기간의 단축 등의 행정지원은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 선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전라북도 건설기술 명장제를 도입하여 기술발전을 유도함
 - 특정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통해 전북의 건설산업에 기여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건설기술 명장’으로 지정하여 명예를 부여함

나. 공공행정 지원 강화 전략

1) 지역건설업체 참여 건설공사 인센티브 제공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의 주택건설사업을 시공능력평가 상위의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음
 - 시공능력평가가 높다는 것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 건설업체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주민 또는 조합에서 선호가 높은 것이 사실임
 - 결국, 지방의 주택건설사업의 많은 비율을 이들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 참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보다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참여 기회가 높아질 것임

나) 추진 내용

- 전북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전북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함
 -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당해 용도지역 허용한도 용적률에 추가적인 용적률을 제공함
 - 부산의 경우, “주택정비사업 지역 건설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가 전체 공사금액 대비 20% 이상 참여할 경우 용적률 5%, 10% 이상 참여할 경우 3%, 4% 이상 참여할 때는 2%의 인센티브”를 주고,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이미 시공사로 선정된 구역에 지역업체가 참여해도 5%의 인센티브”¹⁹⁾를 부여함
- 지역활성화 우수업체로 포상된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지역건설공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당해 건설업체가 더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고, 다른 지역건설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19) 부산시보(www.busan.go.kr/news), “주택정비 지역업체 참가면 인센티브”

2) 사업승인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단축

가)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사업을 시작하고 준공까지 일련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절차별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사업내용에 대한 인허가,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대한 승인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의 심의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여러 단계의 심의와 인허가 절차로 진행되므로 통상적인 사업진행 과정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함
 -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승인과 심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 참여 우대 시책이 필요함

나) 추진 내용

-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유사한 특성을 갖거나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절차를 유형화하여 전체 행정절차를 단순화하도록 함
 - 행정절차의 단순화를 통하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의 행정절차 진행 시 실무담당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함
 - 실무담당자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에서는 당해 부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는 협력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도록 함

3) 지역특화사업 지역건설업체 우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새만금지역은 전북발전의 거점으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새만금지역은 ‘친환경·생태’, ‘첨단’, ‘그린에너지’, ‘농업·관광 등 특화산업’, ‘수변도시’ 등의 키워드를 가진 ‘새로운 문명의 도시’로 개발방향이 설정됨
 - 새만금지역 개발은 국가사업이지만 그 영향이 전북에 가장 크게 작용하므로 전북이 개발사업의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새만금지역의 개발방향과 부합하는 전북기업의 참여가 중요함
- 새만금지역 특화개발을 위한 전북건설업체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새만금지역의 개발에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제도적인 우대 기준 적용이 필요함

나) 추진 내용

- 지역발주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내 건설사업에 전북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할 것과 건축자재의 80% 이상을 지역자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전북업체가 40% 이상 공사에 참여하고 전북의 기자재를 50% 이상 사용할 것을 관계기관들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함(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언론보도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 2021.12.22.)
 - 대구시는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건축심의 인허가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용하는 것과 공공건설공사 및 재개발·재건축공사에서 외지건설업체가 착공계 제출 및 착공신고 시에 지역하도급을 70% 이상으로 하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제시함(전영준 2020, 215~217)
 - 전북도내에서 시행되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는 전북업체 참여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전북건설자재를 80% 이상 사용할 것을 유도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전북 역내 공사이지만 국가발주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전북지역업체 참여 50% 이상, 전북 전자재 사용 60% 이상으로 하는 지역건설업체 우대기준을 마련되어야 함

4) 지역 발주 공사 참여 제한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업체는 일반적으로 업체소재지를 당해 지역으로 신고된 업체를 말하므로, 당해지역에 소재지 신고만 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건설업체의 등록과는 달리 업체의 소재지는 신고만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있어서 공사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지역업체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음
- 지역의 공공공사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소재지 유지 기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외지업체도 소재지 변경만으로 지역업체로 인정받아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전북업체는 공사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자격에 제한을 두어 소재지 유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내용

- 지역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마련함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대상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역사업자”로 함
 -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발생 이후에 건설업체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하였으면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역건설산업 촉진 조례의 지역건설산업 용어정의 단서조항에서,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도내에 등록된 날로부터 90일(강원) 또는 120일(경기)을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새만금개발청 고시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도 지역기업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음
 - 전북 내의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조건으로서 공사입찰공고일까지 업체소재지가 전북에 90일 이상 경과할 것을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촉진조례에 규정하도록 함

5) 지역 우수 건설업체 홍보 및 민관 합동세일즈

가) 배경 및 필요성

- 전북 내 우수한 건설업체가 활발히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도민들은 전국적인 브랜드 네임이 있는 건설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로 유명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음
 - 전국적으로 1만 4천여 개의 종합건설업체 중 전북에도 시공능력평가 순위로 500위 내에 8개의 건설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시공능력평가 상위의 건설업체에 전북의 건설업체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건설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업체와의 협력업체 관계를 형성하여 하도급 건설공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내용

- 지역건설업체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역 우수 건설업체를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국내 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조업을 우선하고 있고 지원범위가 제한적임
 -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전북의 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 도민들이 지역의 건설업체의 우수성을 알려 인지도를 높이도록 함
- 전북 건설업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요청하는 민관합동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행정, 건설협회, 건설업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대형건설사들 대상으로 전북의 우수건설업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전북건설업체가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세일즈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세일즈를 추진함

6)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및 퇴출

가)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업 등록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실업체 양산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남
 -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및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 현재에 이룸
 - 2019년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이 30% 하향되어 건설업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일자리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음
 - 그러나, 쉽게 건설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 후에 업체의 경영과 관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부실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됨
- 부실업체의 관리와 불법업체의 퇴출로 지역건설산업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음
 - 부실 및 불법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함에 따라 건설될 시설물에서 안전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또한, 건설한 건설업체의 상대적 피해로 인해 지역건설산업 전반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추진 내용

- 불법 및 부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건설업체에 대한 Big Data를 구축하여 적정 인력의 보유여부와 공사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함
 - 지역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실업체에 대한 감시활동과 퇴출을 추진함
 - 등록기준 미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미달인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이후 개선이 없으면 퇴출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7) 지역업체 수주지원과 건설현장 관리 및 감독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건설인력과 건설자재가 투입되어 진행되므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설공사 현장은 중장비 및 공사설비를 사용하고 대규모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함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및 자재의 관리, 공정에 따른 공사진행 관리,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건 및 사고는 공사현장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인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행정적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
 -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나) 추진 내용

-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함
 - 건설사업 시행자와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건설공사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협조하는 공문 발송, 업무협약 체결, 간담회 등을 실시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가 독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하도급공사를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업체의 수주가 저조한 현장은 특별 점검을 실시함
 - 대전의 경우, 지역하도급 현장에 대해 관리대상 실태 조사와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연면적 2천 m^2 이상인 신규 공사현장은 월별로 참여실태를 점검하며, 지역하도급 수주율이 50% 미만으로 지역업체 수주 상황이 낮은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함
 - 또한, 지역하도급 실적이 우수한 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우수 업체로서 지역활성화 유공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 제도 정비 및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산업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전북건설업체가 전북 지역 건설공사에 많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내용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촉진 조례에서 정의하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함
 - 현재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으로 되어있음
 -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의 조례처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촉진이 가능하도록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용역업, 건설자재 제조 및 유통업을 포함시키도록 함
- 지역건설산업체 적용 대상에 전북도 내 소재지 등록기간에 제한을 둬م
 - 조례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정의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 공사의 경우는 전북도 내에 등록된 날로부터 120일(경기도 조례의 사례)을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분리발주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관련법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의무화됨
 -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 제2항), 전기공사(전기공사법 제11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법 제25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분리발주 하도록 명시함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여 중소기업 하도급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명확하도록 함
 - 강원도 경우 ‘강원대금지급’ 시스템 운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나 발주자가 시스템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됨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애초의 목적인 지역건설업체 또는 중소기업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 공동계약에서 공동도급은 그간 지역 및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보호·육성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 상호 간의 수급자격 또는 시공능력을 보완해주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 중이고, 공동도급 방식 활용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책임을 공유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전영준·최석인 2020, 1)”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긍정적 사유가 큰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표 4-3〉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찬반 의견 비교

주계약자 공동도급 찬성 주요 의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반대 주요 의견
“기존 하도급 생산방식이 아닌 발주자의 계약 상대방 위치에서 직접 시공하기에 하도급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예방 가능”	“중전의 종합·전문 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공사 수주를 위한 일회성 협력관계로 변질”
“도급단계 축소에 따라 각종 대가의 적기 지급, 공사대금 현금 수령 가능”	“공기 지연 및 시공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발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설물의 품질 확보 곤란”
“분담한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구조이고, 공사금액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공사의 품질향상에 일조”	“하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해져 시설물(시공 중, 준공 후)의하자 발생 시 수요자 및 주계약자 일방 피해 전가”
“부계약자의 공사 수주기회 확대”	“(지방계약 공사)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한 부계약자가 부족하여 주·부 계약자 간 입찰 불균형 발생, 대형 전문건설사업자 위주로 참여함에 따라 공생 발전에도 역행”
“기존 생산방식 대비 부계약자의 추가 채산성 확보 가능” : 추가적인 공사비 확보 경험 66.7%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	“부계약자의 책임과 권한 불일치, 역량 부족으로 공사 효율성 저하, 분쟁 발생 증가, 주계약자 일방의 추가비용 발생”

출처 : 전영준·최석인, 2020, 10쪽, 재인용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4.〉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 강원도는 도청과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국 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활동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

2) 건설관련 유관부서 협업 시스템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시까지 많은 행정기관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함
 -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부서와 낙찰 후 계약, 구조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각종 심의,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 공사 착공 신고, 공사의 감독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함
 - 건축심의(건축과), 교통영향평가(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통 및 도시 등 업무부서), 착공신고(민원실 통해 건축과나 주택과 및 토목과), 도로점용허가(토목 및 도로 또는 가로정비 부서), 건축물 사용검사(건축과 또는 토목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환경업무 부서) 등의 절차가 있음
 - 또한, 수도인입이나 가설전기인입, 하수와 통신시설 등은 행정관청 업무부서뿐만 아니라 한전 및 전화국과도 협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함
 - 또한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사발주 부서의 업무가 다르므로 공사 초기에는 공사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전북건설업체가 시행하고 참여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행정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북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리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간 원활한 연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추진 내용

- 공공발주기관 및 행정청 내 건설 관련 부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
 - 공공발주기관 및 행정청 내의 건설행정 관련 부서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진행하고 참여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고 협력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함
- 유관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유관기관과 행정청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
 - 전북 내 유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공사과정의 행정처리가 유관기관과 행정청 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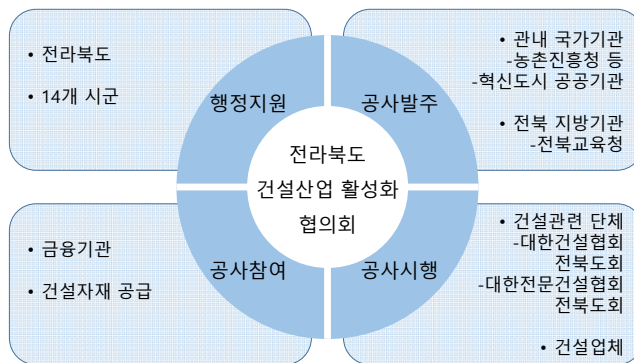
3) 도내 건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가) 배경 및 필요성

-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지역건설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금까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지자체 또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었고,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전반적인 지역건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행정기관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지역의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음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의 건설산업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이 마련한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지역건설 단체와 유관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임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공행정과 유관기관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성해야 함

나) 추진 내용

- ‘전라북도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함
 - 건설산업 관련 유관기관(행정지원, 공사발주, 공사시행, 공사참여)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함
 - 협의체에서 전북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함



〈그림 4-5〉 전라북도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예시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위원회의 개최 회수가 연 1회로서,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의 횡수인 연 2회보다 적음
 -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 횡수를 현재 연 1회에서 타 지자체와 같은 연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함

5

장

결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제5장 결 론

1. 연구 종합

가. 지역건설산업의 특징

- ① 지역건설산업은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함
 -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등이 전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므로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임
 - 전라북도의 지역건설산업 역시 지역내총생산에서 1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약 8%에 달하는 정도의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② 지역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적으로 수행되는 복합적 특성을 가진 산업임
 - 건설산업은 전라북도의 기간산업으로서 동일한 공산품을 다량으로 제작하는 제조업과 달리 발주자의 주문과 요청에 따라 거의 유일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 및 보수, 해체하는 수주산업임
 - 또한, 노동집약적인 종합산업이며, 사업의 규모가 크고 복합적이며 장기적으로 수행된다는 특징을 가짐

- ③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건설산업은 산업구조가 취약하므로, 지역건설산업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
 -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심사 항목에서 대형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사가격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지역의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마련되어 균형발전 등의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체 1곳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여 공동도급 하도록 함

-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관련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위탁 받은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 또는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관리·운영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제도,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

나.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① 전북건설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비율이 높고, 공공발주 공사 수주 경향이 큼

- 전라북도 건설공사액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건설업체는 전북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
- 최근의 전라북도 내의 건설계약 실적은 비교적 개선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라북도의 전국 대비 건설수주액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에 비교하면 토목공종 수주액과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수주액이 높은 경향을 보임

② 전북의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종합건설업체는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건설업체수와 업종수는 매년 증가하였는데, 토목공사업 공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전북의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전북 도내 전체 종합건설업체 중 500위 이하의 업체수 비율이 강원도와 함께 8%로서 제주도(6%) 다음으로 낮고, 2500위~3000위 구간의 업체수 비율이 가장 많은 23%임

③ 전북의 지역건설업체의 역내공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각 광역지자체 단위로 살펴본 각 지역발주 공사 중 당해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에서 전북은 타 지역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수행한 건설공사 대비 전북 도내 건설공사의 기성실적 비율에서도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① 전북 지역건설은 역내 공공발주 비율이 높은 경향이므로 타지역 건설업체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전북 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에서 낮은 순위에 분포하고 있고, 공공발주 공사 비율이 높음
- 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의 우수기술을 보호하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관리 및 감독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전문가 역시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지역건설업체는 민간공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행정에서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함
- 전북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공사물량의 확대, 전북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산업 우대,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 제도의 정비·개선,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함

②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공공행정의 지원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의 전략을 마련함

- 공사물량을 확대하여 공사실적 확대와 기술력 확보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 재정투자로 많은 공공발주 공사가 이루어리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사의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되어야 함

- 지역건설업체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업체를 포상하도록 함
- 지역건설업체 우대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에 인센티브 제공, 사업승인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단축, 지역특화사업 지역건설업체 우대, 지역 발주공사 참여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행정의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역 우수 건설업체 홍보 및 민관 합동세일즈,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및 퇴출,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강화를 추진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분리·분할발주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홍보, 공사대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함
- 건설관련 유관부서 협업, 도내 건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확대 운영 등 건설산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거버넌스를 구축함

2. 정책 제언

① 전북의 지역건설업체가 타 지역의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전북지역의 건설업체는 주로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전북건설업체의 건설실적을 살펴봤을 때,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비율이 전국이나 지방광역도와 비교하여 높음
 - 또한, 도내의 민간공사의 참여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실적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참여율과 전북지역 외 지역의 건설공사에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민간건설공사의 참여와 타 지역 건설공사 참여를 위해서는 전북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② 전국적인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확대하고, 이를 도내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대표건설업체 육성 정책 필요

- 최근 발표된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도내 1위 업체가 전국순위에서 94위를 차지하여 100위권에 진입함
 - 시공능력평가에서의 높은 순위는 건설업체의 공사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건설공사 입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됨
-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대표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전국적으로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 전체 건설실적을 제고하여야 함
 - 전북건설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는 전북의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실적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함
 - 다만, 대표건설업체의 육성이 특정 업체의 특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건설업체와의 형평성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태호, 2019, 제주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 제주연구원
- 공정거래위원회, 2017,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 국토교통부, 202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김광남, 2003, 건설산업 달라져야 한다. 기문당
- 김명수·이환성·김민철, 2001, 지역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민철 외, 2019, 건설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종합·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 간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김성식, 2002, “건설업의 진화 방향”, LG주간경제 2020.11.6., LG경제연구원
- 김승희, 2009, 강원도 건설산업 실태 분석 연구, 강원연구원
- 김영덕 외, 2018,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강원도
- 김영덕 외, 2020, 건설산업의 이해 A to Z, 건설경제
- 대한건설협회, 2021, 2020년 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
- 박도휘 외, 2017, “건설 전방산업의 트렌드 변화 :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라”, ISSUE MONITOR 제78호,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박용석 외, 2018,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 양준석 외, 2019,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윤영선·강민석, 2001,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은규, 2015, 울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이홍일, 2017, 향후 국내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징, 건설이슈포커스 2017-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홍일 외, 2010,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영준, 202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향”, 건설동향브리핑 제 79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영준 외, 2020,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최석인, 202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성훈, 2019,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최석인 외, 2020, 2030 건설산업의 미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2020,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은행, 2019, 2015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전북본부, 2003, 전북지역 건설업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 2021-2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1년 8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62-9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